2021
4
Monthly Magazine
통권 209호

회계세무 경영저널

월간 공인회계사 재경저널

eAnSe.com
30분내 Q&A답글 ⊕ 즉답829-7575 010-2672-2250
Biz life partner, 온라인재경교육, e러닝, 전직원경영관리아카데미, CEO, CFO, CMO 등 경영진 휴대북, 관리자 점검표 · 실무자학습지

이달의 특집

- 기업공시서식 실무 안내 (금융감독원)

-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주요정보]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 (행정안전부)

안세회계법인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타

등록번호 영등포 라-0129 · 등록일 2003년 11월 11일 발행인겸편집인 : 이윤선
발행처 (주)안건조세정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41(신길동) 안세빌딩 1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안건조세정보

회계법인연합
조세브랜드
세무박사
WTAX www.PARK.COM
세무박사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 4

+교육 · 훈련강의저널
+CEO · CFO · 기업법무저널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은
고객회사와 기업재경실무자의
"명료한 세무판단",
"투명한 회계처리",
"효율적 경영활동"
에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 회계법인이 연합하여
공동제작하는
회계·세무·재경 전문야의
정보·자료·전략·컨설팅지
입니다.

이 달의 특집

· 기업공시서식 실무 안내 (금융감독원) 2

이 달의 세무신고 Checkpoint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 (행정안전부) 116

4월의 세무일지

일자	구
12 (월)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증권등 거래세 신고납부
20 (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26 (월)	부가가치세 제1기분 예정 신고납부 개별소비세 1분기 신고납부
30 (금)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개별소비세(유류 등) 신고납부, 교통세(교육세·주행세 포함) 신고납부,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1분기)

노무정보

·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120

· 부가세영세율과표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액 평가의 기준 · 재정 환율 (3월) 144

이달의 특 집

기업공시서식 실무안내

– 금융감독원 –

제 1 장 유통공시

▣ 2020년도 중 유통공시 관련 서식 주요 개정사항

1.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포함된 배당, 정관 변경, 재무제표, 사외이사 후보자 안건 관련 사항 등을 사업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작성 근거 마련(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3-6-1조, 제3-7-1조, 제5-4-1조, 제9-1-1조, 별지서식 제35호)

2.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관련(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제5-2-1조)

□「전 · 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조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의견 불합치 사실, 주요 협의내용, 관련 계정과목 및 조정금액 등을 추가

□ 내부감사기구와 회계감사인간 논의사항 중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논의 일자, 참석자, 주요 논의 내용 등을 기재

□ 분·반기보고서에 실제 감사 수행내역과 감사계약내역을 병기하도록 함

3. 특례상장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 직접금융조달 자금 중 미사용 금액에 대한 운용내역을 명확하게 하도록 작성기준을 구체화하

고, 관리종목 지정요건의 적용 유예 사실 및 해당 유예기간의 종료시점 등을 기재토록 추가(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제11-3-4조, 제11-3-15조)

4. 역외지주사의 상환능력 관련 정보 제공 확대

□ 역외지주사의 현금 보유액, 유동자산 등 개별 재무정보 및 본국 외환거래 관련규제의 준수 여부 등을 추가(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제11-3-5조)

5.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관련

□ 기업투자목적회사 임원의 인수·합병과 관련된 경력 및 성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 기준을 제시(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제9-1-1조)

□ 등기임원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금액 대비 보수 지급내역을 비교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승인금액의 작성기준일 명시(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제9-2-1조)

□ 「고용정책 기본법」상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을 공시하는 기업에 한하여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분·반기보고서는 작성 제외(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제9-1-2조, 별지서식 제35호)

6. 그 외 정기보고서 개정사항

□ 정기보고서에 기재하는 배당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속배당 기간, 평균 배당수익률 등 배당 이력 정보를 추가(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제3-6-1조)

□ 요약재무정보(연결요약재무정보 포함)를 외화로 표시하는 국내기업에도 외국기업과 동일하게 원화정보를 병기하도록 의무화(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제5-1-5조, 제5-1-6조, 제5-4-3조)

□ 감사위원에 대해 회계·재무 전문가 여부, 전문가 유형 및 관련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함(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제7-2-1조)

□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의 분포 기재의무를 명시(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제8-1-3조)

□ 전자증권제도 시행 및 공고 게재 방법 변화 등 주식사무 관련 제도 내용을 현행화(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제8-1-4조)

□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의사록 요약을 모두 기재토록 명확화(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제11-1-2조)

7. 주요사항보고서 및 상장법인특례 개정사항

□ 소규모합병과 관련된 반대의사 통지현황, 주식양수 후 계열관계 구성 및 합병관련 위험 등 정보를 기재토록 추가(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제13-2-3조, 별지서식 제38-44호)

□ 차입금으로 타법인 주식을 양수한 경우 발생가능한 유동성 및 신용 위험 등을 확인할 수 있

도록 차입금에 관한 정보를 추가(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별지서식 제38-40호)

□ 다수의 사외이사 변경 사실을 하나의 서식에 통합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서식을 개선(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별지서식 제57호)

Ⅰ.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1. 제도의 의의

□ 정기공시는 증권을 발행하거나 상장한 법인 등의 사업내용, 재무상황 등 기업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 자료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2. 제출대상 및 제출면제법인

□ 제출대상법인(법 §159①, 영 §167①) ☞ Q&A 1-03 참조

◦ 주권상장법인

◦ 주권 외의 지분증권, 무보증사채권,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신주인수권이 표시 된 것,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 주권 및 주권외의 상기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적이 있는 발행인(상장이 폐지된 발행인 포함)

◦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증권(주권 및 상기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 제출 면제법인(영 §167②) ☞ Q&A 1-01 참조

◦ 파산한 경우

◦ 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 상장법인의 경우, 상장 폐지요건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금융위의 확인을 받은 경우

◦ 모집 또는 매출한 발행인의 경우, 각 증권마다 소유자의 수가 모두 25인 미만인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한 경우(다만, 그 소유자의 수가 25인 미만으로 감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는 제출)

◦ 증권별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경우, 각각의 증권마다 소유자의 수가 모두 300인 미만으로 된 경우(다만, 그 소유자의 수가 300인 미만으로 감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는 제출)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특례(법 §165②, 영 §176⑧⑨)

○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은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3. 기재사항(첨부서류) 및 제출기한

가. 사업보고서

□ 기재사항(법 §159②, 영 §168, 규정 §4-3)

○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주주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 전문가의 확인 등

○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기재사항 중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 명세,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되 별도(개별)재무제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재하여야 함 (영 §168④)

* K-IFRS 적용 법인의 경우,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우발채무, 제재현황, 결산기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 첨부서류(영 §168⑥, 외감규정 §7)

○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감사보고서 포함), 감사의 감사보고서, 법인의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감사의 평가의견서, 영업보고서, 정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등

* 외감법 개정으로 제출대상이 주권상장법인뿐만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단, 외부감사법 제8조 제1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으로까지 확대('18.11.1.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제출기한(법 §159①, 영 §168⑤)

○ 다음과 같은 제출기한 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

<table>
<tr><th colspan="3">구 분</th><th>제출기한</th></tr>
<tr><td colspan="3">K-IFRS 적용</td><td rowspan="3">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td></tr>
<tr><td rowspan="3">K-IFRS
미적용</td><td colspan="2">종속회사 미보유</td></tr>
<tr><td rowspan="2">종속회사
보유</td><td>자산총액 2조원 이상</td></tr>
<tr><td>자산총액 2조원 미만</td><td>- 별도(개별)기준 : 90일 이내
- 연결기준 : 120일 이내 추가제출</td></tr>
</table>

* 자산총액은 최근사업연도말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로

부터 5일(사업보고서 제출기간 중인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 이내에 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이내 제출하되,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면제됨 (법 §159③)

○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 회계감사인과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부득이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미리 합의하고 제출기한 만료 7일전까지 기한 연장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제출 가능. 기한 연장사유를 신고 할 때 회계감사인이 기재하여 서명날인한 기한 연장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법 §165③,④) <신설 2017.10.31>

나. 분기·반기보고서

□ 기재사항(영 §170①등)

○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되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검토의견)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므로, 종속회사가 있는 K-IFRS 적용 법인은 분기·반기보고서에도 연결재무제표를 기재하는 등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나, 종속회사가 있는 K-IFRS 미적용 법인은 분기·반기 보고서는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됨
- 또한,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부속명세서는 분기·반기 모두 생략 가능하며,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검토의견*도 생략 가능

  * 다만, 검사대상 금융회사 및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별도재무제표 기준)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도 검토의견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 첨부서류(영 §170②등)

○ 회계감사인의 검토(또는 감사)보고서, K-IFRS를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또는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분기 검토의견 기재의무가 없는 법인은 분기검토보고서(별도 및 연결 모두 해당)를 첨부하지 않음

□ 제출기한(법 §160)

○ 분기·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함

○ 연결기준의 분기·반기보고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결공시하는 최초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 가능

- 여기에서 '최초'의 기준은 [분기 · 반기보고서]를 기준으로 판단*

  * '18년 사업보고서를 연결기준 제출하는 법인의 경우, '19년 1분기보고서가 최초로 연결로 제출하는 분기 · 반기보고서이므로 '19년, '20년 분기 · 반기보고서의 제출기한이 60일로 연장됨

- 60일 이내에 별도(개별)재무제표(검토의견 및 검토보고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검토의견 및 검토보고서 포함)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며, 45일 이내에 별도(개별)재무제표를 별도로 먼저 제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함

Ⅱ. 주요사항보고서

1. 주요사항보고서의 의의

□ 자본시장법 시행과 함께 기존에 금융위 보고와 거래소 보고로 혼재되어 있던 수시공시(주요경영사항 신고)의 제출대상기관을 거래소로 일원화

○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범위와 운영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사업보고서 심사, 불공정거래 적발 등 시장감독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사항을 금융위의 직접규제영역으로 편입하고 나머지 사항은 거래소 자율공시사항으로 이관함

□ 또한, 종전 주요경영사항 신고 중 회사존립, 조직 재편성, 자본 증감 등의 사항과 특수공시사항을 주요사항보고 항목으로 지정하여 그 사유발생 익일까지 금융위에 제출하도록 함

2.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동일함

3.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한, 제출사유 및 첨부서류

□ 제출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

*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은 3일 이내

○ 주요사항보고서 항목 중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 등 대부분의 항목은 거래소의 수시공시와 동일한 서식을 사용

- [상장법인]은 하나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한번 제출함으로써 주요사항보고 및 수시공시의무를 동시 이행하게 됨

  ※ DART에 제출하면 실시간으로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으로 전송

- 이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과 수시공시 제출일 중 빠른 날에 제출하여야 양 공시의무를 충족함에 유의하여야 함

  ※ 통상 거래소 수시공시는 당일 공시이므로 동일서식으로 작성하여 당일 제출하여야 함

○ 주요사항보고서 중 일부 항목*은 거래소 수시공시 항목이 아님

* 무형자산에 대한 중요한 자산양수·양도, 중요한 자산양수·양도를 권리행사의 내용으로 하는 풋백옵션 등의 계약체결

– 이 경우 상장법인은 제출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금감원 DART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

○ 비상장법인은 동일/별도서식 여부와 무관하게 제출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일부는 3일이내) 금감원 DART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법 §161, 영 §171) >

제출사유	첨부서류	서식
■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은행 당좌거래의 정지 또는 금지	■ 부도 확인서, 당좌거래정지 확인서 등 증명서류	동일서식
■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정지	■ 이사회의사록, 영업정지 처분 명령서 등 증명서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법원에 제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등 증명서류	
■ 해산사유 발생	■ 이사회의사록, 파산결정문 등 증명서류	
■ 자본증가[1] 또는 감소,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따른 부채의 증가에 관한 이사회 결의(예외 :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본의 변동은 면제)	■ 이사회의사록 등 증명서류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가 개시되거나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된 때	■ 주채권은행의 결정서·계약서·합의서 등 증빙서류	
■ 증권에 관한 중대한 소송 제기	■ 소장 부본 등 법원송달서류 등	
■ 해외증권시장 상장 또는 상장폐지 결정, 매매 거래정지 조치 등	■ 외국 정부 등에 제출하였거나 통지받은 서류와 한글요약본	
■ CB, BW, EB의 발행 결정(예외 :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면제)	■ 이사회의사록 등 증빙서류	
■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조건부자본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의무가 감면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해당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자기주식 취득(신탁계약 체결) 또는 처분(신탁계약 해지)의 결의	■ 이사회의사록 등 증명서류	
■ 합병, 주식교환·이전, 분할, 분할합병 등의 결정 ■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도 결정	■ 이사회의사록 등 증명서류, 계약서(계획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외부평가의무 존재시)[2]	동일 또는 별도서식[3]
■ 중요한 자산양수·양도를 권리행사의 내용으로 하는 풋백옵션 등의 계약 체결	■ 해당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별도서식

1) 주권상장법인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주요사항보고서를 납입기일 1주일 전까지 공시된 경우에 한하여 상법상 납입기일 2주전 통지·공고 의무 면제, 2)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외부평가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3) 무형자산에 대한 중요한 자산양수도의 경우

□ 참고로,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도 제출사유 발생일 이후 2영업일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영 §176⑤)

* 외국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

○ 지분증권의 양도제한, 외국법인등의 국유화 등 외국법인등이나 그 출자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 법령 등이 변경된 때

○ 외국법인등의 주식 등에 대하여 외국에서 공개매수 또는 안정조작·시장조성이 행하여지는 때

○ 외국금융감독기관 또는 외국거래소로부터 관계법규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때

○ 외국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 정지·해제, 상장폐지 조치를 받은 때

구 분	제출사유	제출기한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완료하거나 취득기간이 만료한 때	5일*이내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자기주식의 처분을 완료하거나 처분기간이 만료한 때(교환사채 발행의 경우는 발행을 완료한 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 또는 신탁계약기간 종료의 경우는 제외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상황보고서	신탁계약 체결 후 3월이 경과한 때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신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신탁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때	
합병 등 종료보고서	합병 등을 사실상 종료한 때-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 등기를 한 때- 영업양수도 : 등기 상 사실상 종료한 때- 자산양수도 : 자산의 등기 등 사실상 종료한 때	지체없이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한 신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한 때	
사외이사의 선임·해임 또는 중도퇴임 신고	사외이사의 선임·해임 또는 중도퇴임이 있은 때	다음날

* 영업일 기준 아님. 기간 말일이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인 경우 익일로 연기

4. 주권상장법인 특례에 따른 공시

□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합병 등에 특례를 규정

○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을 완료하거나 합병등 사실이 종료한 때에는 금융위에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사외이사의 선임·해임·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도 금융위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

□ 기타공시 제출대상법인

○ 주권상장법인 특례규정에 따라 기타공시 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주권상장법인에 한정(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법인과 다름)

□ 기타공시 제출사유(법 §165의 17, 규정 §5-8, §5-9, §5-10, §5-15) 및 제출기한

Ⅲ.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장치

1. 금융위의 행정조치(법 §164)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등(사업보고서, 분기·반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 금융위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 법 위반의 경우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 경고 또는 주의

※ 참고로,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될 수 있음에 유의

2. 형사처벌(법 §444 및 §446)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아래의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사업보고서등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 사업보고서등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확인·서명을 한 대표이사 또는 공시담당이사

○ 사업보고서등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3. 과징금(법 §429)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보고서 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에,

○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4. 손해배상책임(법 §162)

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i) 사업보고서 등 및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외)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ii)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할 것

(iii) 그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② 배상책임자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과 제출 당시의 그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의 이사
- 상법 §401의2①의 사실상의 이사로서 그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그 사업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단체 포함)
- 그 사업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 분석, 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③ 손해배상액의 추정

□ 청구권자가 그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함에 있어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금액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액을 배상액으로 추정

(i)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론종결시의 해당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는 추정처분가격)

(ii) 변론종결 전에 해당 증권을 처분한 경우는 그 처분가격

④ 예측정보의 특례

□ 예측정보가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함

○ 다만, 청구권자가 해당증권의 취득·처분시 예측정보의 중요사항에 거짓의 기재나 누락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로서 배상책임자의 고의·중과실을 증명한 경우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음에 유의

(i) 그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을 것

(ii)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가 밝혀져 있을 것

(iii) 그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 졌을 것
(iv) 그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밝혀져 있을 것

⑤ 배상청구기간

□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제출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 제162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됨

Ⅳ. 합병등에 관한 공시

1. 개요

□ 합병등이란 합병, 분할·분할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 및 양도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됨(법 §165의4)

□ 합병등 관련 공시 ☞ Q&A 1-27 참조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합병, 분할·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중요한 영업·자산양수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회결의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영업·자산양수도는 익일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함(법 §161①)

○ 주권상장법인은 합병·분할·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때, 중요한 영업·자산양수도를 사실상 종료한 때 및 주식교환을 한 때 또는 주식이전에 따른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합병등 종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함(규정 §5-15)

○ 합병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 및 주식의 교부가 공모(모집·매출)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증권신고서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이 경우 합병 등 종료보고서 제출은 불필요)

< 합병등 관련 공시 >

신고서의 구분	제출대상법인	제출사유	제출기한
주요사항 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합병·분할·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회결의가 있는 때	3일 이내
		중요한 영업·자산양수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회결의가 있는 때	다음날
합병등 종료보고서	주권상장법인	합병·분할·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때	지체없이
		주식교환을 한 때	
		주식이전에 따른 등기를 한 때	
		등기 등 사실상 영업·자산양수도를 종료한 때	

※ 합병등에 따른 신주발행 및 주식의 교부가 공모(모집·매출)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증권신고서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2. 합병

가. 합병의 개요

□ 합병의 개념과 종류

○ 합병의 개념

- 합병은 상법상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법률행위

○ 합병의 종류

① 흡수합병 : 수개의 합병 당사회사 중 하나의 회사만이 존속하고 나머지 회사는 모두 소멸하며,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원을 수용하는 방법의 합병

② 신설합병 : 당사회사 전부가 소멸하고 신설된 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원을 수용하는 방법의 합병

○ 합병의 특수절차

① 소규모합병 :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② 간이합병 :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전체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소멸하는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나. 합병의 절차

합병이사회 결의	
⇩	
합병계약 체결	합병당사회사간 합병계약 체결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합병이사회 결의 또는 합병계약이 체결된 날의 3일 이내에 제출
⇩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또는 기준일 공고	주주명부폐쇄일(기준일)의 2주전까지 정관에서 정한 신문에 주주명부의 폐쇄일(기준일)을 공고
⇩	
주주총회소집 통지·공고	주주총회일의 2주전까지 합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공고(※ 공모(모집·매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전까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출해야 함에 유의)
⇩	
합병 반대의사 접수	합병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 반대의사 서면접수
⇩	
주주총회 개최(주총특별결의)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통지·공고시 합병의 목적·방법·요령, 합병비율 및 그 산출근거, 평가기관의 평가의견 요약,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그 행사방법,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한 사실·시기,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함께 통지·공고하여야 함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구주권제출 공고	주주총회 승인후 2주 이내 제출기간 : 최소 1개월 이상 부여
⇩	
주식매수청구 접수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
⇩	
합병기일	합병기일은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및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 이후여야 함(※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합병기일 경과 후 지체없이 증권발행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합병보고총회	합병기일 후 지체없이 합병내용과 결과를 보고
⇩	
합병등기	합병보고총회 또는 공고일로부터 2주내(지점은 3주내)
⇩	
합병등 종료보고서 제출	합병등기를 한 때 지체없이 제출(단,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면제)
⇩	
매수청구주식의 매수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내(비상장법인은 2개월내)

다. 합병가액 산정방법

□ 주권상장법인의 합병등의 경우에는 가치산정방법을 법령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야 함

○ 합병·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해서만 법정 산정방법이 적용되고, 영업·자산양수도는 자율적으로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권상장법인간 합병(영 §176의5①1)

○ 기준주가(시가)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되, 기준주가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본질가치법으로 산정함

-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의 100분의 30(계열회사간 합병시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 기준주가 = (1개월간 평균 종가+1주일간 평균 종가+최근일 종가)/3

- 평균종가는 기산일을 포함하여 달력기준으로 과거 1개월(1주일) 기간 중의 영업일의 종가

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

* 1개월간의 평균종가 : 예를 들어 5.24(토)이 합병 이사회결의일인 경우 기산일은 5.23.이 되므로 4.24~5.23 기간 중 영업일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

< 1주일의 평균종가 산출방법 예시 >

(1주일간 영업일 기준)

구 분	5.19(월)	5.20(화)	5.21(수)	5.22(목)	5.23(금)
거래량(주)	1,000①	1,200②	2,050③	2,400④	1,900⑤
종 가(원)	1,200⑥	1,150⑦	1,100⑧	1,200⑨	1,150⑩
평균종가	= {(①×⑥)+(②×⑦)+(③×⑧)+(④×⑨)+(⑤×⑩) }/(①+②+③+④+⑤)				

※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기준주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준용

□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제외)과 주권비상장법인간 합병(영 §176의 5①2)

○ 주권상장법인은 앞의 경우와 동일하게 산정. 다만, 앞에서 산정한 기준주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음

○ 주권비상장법인은 본질가치법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함

◈ 본질가치 = $\frac{\text{자산가치 x 1 + 수익가치 x 1.5}}{2.5}$

– 이 경우 주권비상장법인과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의 가치(상대가치)를 산출하여 비교·공시하여야 함*

* 공시방법은 '합병의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것을 말함(규정 §5-13⑤)

< 자산가치 산정 >

○ 자산가치는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회사의 주당 순자산가액(시행세칙 §5①)

◈ 자산가치 = 순자산 / 발행주식총수

*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의 5영업일 전일, 이후에 분석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일(시행세칙 §8)

– 순자산은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 및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차감하고 자기주식은 가산하는 등 가감사유를 반영하여 산정(시행세칙 §5②)

*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최근 감사보고서 작성대상시점

– 발행주식총수는 분석기준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로 함(시행세칙 §5①)

< 수익가치 산정 >

○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시행세칙 §6)

< 상대가치 산정 >

◈ 상대가치 = [①각 유사회사별 비교가치 평균액의 30% 이상 할인한 가액+
②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유상증자, CB, BW 발행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10% 이내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 2

- 다만, ②의 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②의 금액이 ①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①금액을 상대가치로 하고, ①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상대가치를 적용하지 아니함

○ 유사회사별 비교가치의 산정

◈ 유사회사별 비교가치 = 유사회사의 주가 × [(발행회사 주당이익 / 유사회사 주당이익) + (발행회사 주당순자산 / 유사회사 주당순자산)] / 2

- 유사회사의 선정기준
  - 절대적 기준으로, 주당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액의 10% 이상,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고,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 상대적 기준으로, 발행회사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 있는 법인
- 유사회사의 주가
  - 보통주를 기준으로 분석기준일(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의 5일전)의 전일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의 종가를 단순 산술평균하여 산정함
- 주당이익

  = {[최근사업연도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사업이익 / 발행주식의 총수] +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사업이익 / 발행주식의 총수] } / 2

  * 발행주식의 총수는 분석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시행세칙 §7③)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에 대한 특례(영 §176의5③)

○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투자자보호 등을 위한 요건*을 갖추어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 다음의 방식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 ①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 ②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 ③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시 협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영 제176조의5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합병가액 및 상대가치와 비교하여 공시할 것

-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기준주가 방식에 따름
- 다른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기준주가 방식(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본질가치 방식)에 따르고,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에 따름

라. 합병가액의 공정성 확보장치

□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무(법 §165의4②, 영 §176의5⑦)

○ 주권상장법인이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 (원칙) 외부평가의무 없음
- (예외) 기준시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할인 또는 할증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본질가치법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한 경우, 합병후 주권비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의무 있음

  * 기준주가에 의해 합병가액을 산정한 경우, 완전자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평가의무가 없음

○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 (원칙) 외부평가의무 있음
- (예외) 주권상장법인이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인 경우, 완전자회사를 합병후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외부평가의무 없음

□ 외부평가기관(영 §176의5⑧)

- 인수업무 및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를 인가받은 자
- 신용평가회사
-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 감정평가법인은 외부평가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

□ 부실평가 방지장치

○ 외부평가기관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법인과 다음의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평가가 금지됨(영 §176의5⑩ 및 규정 §5-14)

- 외부평가기관이 합병당사회사에 그 자본금의 3%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또는 합병당사회사가 외부평가기관에 3%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 외부평가기관에 그 자본금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와 합병당사 회사에 그 자본금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특수관계인인 경우(단, 기관투자자로서 실질지배관계에 있지 않는 경우는 예외)

- 외부평가기관의 임원이 합병당사회사에 1% 이상 출자하고 있는 경우 또는 합병당사회사의 임원이 외부평가기관에 1%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 외부평가기관 또는 합병당사회사의 임원이 합병당사회사 또는 외부평가기관의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 동일인이 외부평가기관 및 합병당사회사의 주요한 경영사항(임원의 임면 등)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 외부평가기관이 합병당사회사의 회계감사인(평가대상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 포함)인 경우

○ 외부평가기관은 주식의 인수업무 참여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그 제한기간, 신용평가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업무정지기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조치를 받은 경우 그 업무정지기간 동안 합병등에 대한 평가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며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동안 해당 특정회사에 대한 평가업무만 영위할 수 없음(영 §176의5⑨)

< 합병등의 경우 본질가치법 및 외부평가의 적용 여부 >

합병등	본질가치법	외부평가의견서 첨부
합병,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 (단, 시가에 따른 가액산정시 제외)	○
분할	×	×
영업·자산양수도	×	○

○ 금융위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외부평가참여 제한 위반한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임직원이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업무를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평가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음(법 §165의4③ 영 §176의5⑪,⑫)

마. 우회상장의 경우

□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 또는 특정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이 다른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과 합병하여 특정 증권시장 또는 다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하여야 함(영 §176의5④,⑤)

○ 주권비상장법인(합병에 따라 다른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법인 포함)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주권상장법인(합병에도 불구하고 같은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법인 포함)보다 더 클 경우 그 주권비상장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거래소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재무 등의 요건

- 감사의견, 소송계류, 그 밖에 공정한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래소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요건

바. 합병의 특수절차

(1) 소규모 합병(상법 §527의3)

□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소규모합병이 허용되지 않고 주총승인이 요구됨

-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교부금이 존속회사 최종 대차대조표상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5%를 초과하는 때
-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이상 소유주주가 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

□ 소규모 합병의 특례

○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함

○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함

○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2) 간이합병(상법 §527의2)

□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간이합병의 특례

○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함

-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 분할합병에 대해서도 간이·소규모합병제도가 준용됨(상법 §530의11②)

< 소규모합병과 간이합병의 비교 >

구 분		소 규 모 합 병	간 이 합 병
공통점		흡수합병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신설합병의 경우는 불인정	
차이점	① 적용대상	존속회사	소멸회사
	② 적용요건	소멸회사의 규모가 극히 소규모여서 존속회사 주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은 경우(예) 합병신주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인 경우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의 90% 이상을 소유하여 합병여부가 존속회사의 의사만으로 결정되거나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③ 주총여부	존속회사의 주총 불필요	소멸회사의 주총 불필요
	④ 견제장치	존속회사 주식의 20%이상이 소규모 합병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합병승인 주총 필요	
	⑤ 주식매수청구권	○ 존속회사 : 불인정○ 소멸회사 : 인정	○ 존속회사 : 인정○ 소멸회사 : 인정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간이합병인 경우는 인정될 여지가 없음)

< 참고 : 개정상법에 따른 합병제도 변경 내용 >

□ 합병대가의 유연화(교부금합병의 허용)

◦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의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상법 §523iv)

◦ 특히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인 경우(삼각합병)에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 주식 취득을 허용(상법 §523의2)

◦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모회사 주식의 교부를 허용(상법§530의6, §360의3)

□ 소규모합병 인정 요건의 완화

◦ 소규모합병의 인정요건 중 합병신주기준을 발행주식 총수의 5%에서 10%로 완화하고, 합병교부금 기준도 순자산액의 2%에서 5%로 완화(상법 §527의3)

3. 분할·분할합병

□ 개념

○ 분할은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영업재산을 자본으로 하여 새로운 회사를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시키는 행위를 말함

< 분할의 유형 >

분류방식	유형	개 념
분할된 회사의 형태에 따른 분류	단순분할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분할합병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하거나(흡수분할합병) 그 영업재산의 일부와 합병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의 분할(신설분할합병)

분할회사의 지분소유 방식에 따른 분류	물적분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분할
	인적분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주식에 비례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분할

□ 분할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

○ 분할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한 통지·공고시 분할의 목적, 방법, 요령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함

○ 분할의 경우에는 무의결권 이익배당 우선주 주주도 의결권이 있으므로 주총 소집 통지·공고시 유의하여야 함(상법 §530의3③)

□ 분할·분할합병비율의 산정방법 및 외부평가의무

○ 분할의 경우에는 회사의 실질이 변하지 않으므로, 분할비율 산정방법이 자율화되어 있으며, 외부평가의무도 없음

○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 비율 산정에 대해서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이 준용*되며, 분할합병 비율의 적절성에 대하여 외부평가를 받아야함

* 분할되는 법인의 합병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가치법 적용(영 §176의6②)

4. 영업·자산 양수도

□ 개념

○ 영업 양수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대법원 1997.6.24. 선고 96다2644 판결)을 말함

○ 자산 양수도란 토지·건물 등 유·무형 재산의 매매, 교환 등으로 소유권 이전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거래를 말함

○ 영업 양수도와 자산 양수도의 차이점은 절차상의 차이, 고용관계의 승계 여부 등이 있으나, 실제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가 가장 문제됨

< 영업양수도의 승인을 위한 주총특별결의 관련 판례 >

◦ 상법 §374는 다음과 같은 영업 양수도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음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한편, 자산양수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으나 판례는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영업용재산의 양도'는 주총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였음

- 주식의 양도·양수가 영업양도인지 여부가 문제되나, 회사의 영업이나 재산은 아무런 변동이 없고 주식만이 양도될 뿐이어서 영업양도로 볼 수 없고 주총 특별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음(대법원 1999.4.23 선고 98다45546 판결)

□ 중요한 영업·자산 양수도의 공시 여부 판단을 위한 '중요성' 판단기준(영 §171②)

○ 중요한 영업 양수도의 기준
- 양수·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
- 양수·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
-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부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

○ 중요한 자산 양수도의 기준
-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중 큰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

○ 중요한 자산 양수도신고의 예외(규정 §4 -4)
- 상품·원재료·저장품 또는 그 밖에 재고자산의 매입·매출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양수·양도
-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 장치 등의 주기적 교체를 위한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다만, 그 교체주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과의 거래로서 약관에 따른 정형화된 거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 공개매수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공개매수 청약에 의한 주식등의 처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서 정한 국채증권·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 또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의 양수·양도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양도로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 참고사항 >

① 유상증자시 청약을 통해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는 기존 자산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양수·양도의 개념에 포함되기 어려워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님

② 증여의 경우 거래금액이 없으나, 증여대상인 자산의 장부가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이상인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③ 원시취득의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없어 양수·양도의 개념에 포함되기 어려우므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님

④ 공장 등 자산을 건축하는 행위는 원시취득이므로 자산양수도가 아니며, 자산의 건축을 위한 원재료 취득행위도 그 실질은 자산의 건축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님

□ 양수도 가액의 결정 및 외부평가제도

○ 주권상장법인의 영업·자산양수도에 대해서는 합병과 달리 양수도가액의 결정방법이 법정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양수도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주요사항보고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영 §176의6③)

○ 다만, 중요한 자산의 양수·양도 중 증권시장을 통한 증권의 매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자산의 경매 등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필요성이 적은 자산의 양수·양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규정 §5 -14의2)와

○ 코넥스시장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음

5.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 개념

○ 다른 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기 위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되는 회사법상의 행위

□ 절차

①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

○ 모회사로 예정된 회사와 자회사로 예정된 회사 간에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종류와 종류별 주식

의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의 액과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각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 주식교환을 할 날
- 각 회사가 주식교환을 할 날까지 이익을 배당하거나 상법 §462의3(중간배당)에 의하여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 상법 §360의6에 의하여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할 주식의 총수·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② 주주총회의 승인

○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와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에서 각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함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일방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 있고 다른 회사의 정관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함

③ 공시

○ 주식교환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주식교환의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주식교환에 관련된 소정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해야 함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이사회결의가 있은 때에는 그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고, 주식교환을 한 날 지체없이 종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주식교환에 있어서는 어느 쪽 회사에도 채권자보호절차를 요하지 않음

□ 주식의 이전과 신주발행

① 주식의 이전

○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으면 계약에서 정한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 이전되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보유하는 주권은 효력을 상실함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을 승인한 때에는 주권을 실효시키기 위해 소정 사항*을 주식교환의 날 1개월 전에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함

* 상법 §360의8①

i.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승인을 한 사실

ii. 주식교환 전날까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iii. 주식교환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

② 신주의 발행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교환계약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여야 함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주주에게 지급할 교부금 및 교부할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음(상법 §360의7)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증가하는 자본이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을 초과한다면 이는 액면미달발행을 하는 것이 되어 자본충실에 어긋나기 때문
- 또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 이전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 발행주식총수 중에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되는 주식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순자산으로 봄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을 함에 있어서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주식으로서 상법 §342에 따라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여야 할 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할 수 있음(상법 §360의6)

나. 주식의 포괄적 이전

□ 개념

○ 완전모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을 배정받음으로써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되는 회사법상의 행위

□ 절차

① 주식이전계획서의 작성

○ 주식이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정관의 규정
- 설립하는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액 및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주식이전을 할 시기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이전의 날까지 이익을 배당하거나 중간배당으로 이익배당

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회사가 공동으로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뜻

② 주주총회의 승인

○ 주총특별결의에 의해 주식이전계획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할 사항은 주식교환의 경우와 같음

③ 공시

○ 주식이전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주식이전의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주식이전에 관련된 소정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해야 함

○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한 이사회결의가 있은 때에는 그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고, 주식이전에 따른 등기를 한 때 지체없이 종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설립되는 완전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주식이전에 의한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상법 §360의21)

□ 모회사 설립과 주식이전

○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이전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완전모회사를 설립하므로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주식교환과 달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거나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없음

○ 주식이전에 있어서도 주식교환에서와 같이 주권의 실효를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해야 함

6. 주식매수청구권

□ 주식매수청구권의 개념

○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총회에서 합병등이 결의되었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가 자신이 소유하는 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로서 투하자본의 회수기회를 부여하여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

①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도,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등이 가결되었을 것

② 주주총회 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을 것

③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것

④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합병등의 이사회결의 사실이 공시(한국거래소의 수시공시)되기 이전

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 혹은 이사회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한 주식일 것

* 합병에 관한 거래소 수시공시가 금요일에 있었던 경우 다음 주 월요일에 취득계약이 체결된 주식에 대해서도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

영업양수도(상법 §374①)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일부의 양수
합병(상법 §522의3), 분할합병(상법 §530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상법 §360의5, §360의22)	• 합병·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나(상법 §530의11), • 분할의 경우에는 종전의 회사재산과 영업이 물리적·기능적으로 나누어질 뿐 주주의 권리에 구조적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어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 참고사항 > ① 자산양수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영업의 폐지 또는 중단을 초래할 정도의 중요한 자산양수도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음 ② 소규모합병에서 존속회사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상법 §527의3⑤), 간이합병에서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음	

□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 해당 법인과 매수를 청구한 주주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시장가격 등*에 따르고,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음

*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①과거 2개월간 가중평균 종가, ②과거 1개월간 가중평균종가, ③과거 1주간 가중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은 본질가치(영 §176의7③)

< 참고사항 >

① 기존(증권거래법)의 금융위의 주식매수가격 조정제도는 '09.2.4. 자본시장법의 시행과 함께 폐지됨

② 주식매수가격의 협의는 해당 법인과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집단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주주가 해당 법인과 개별적으로 행하는 것이며, 보유주식 수와 무관하게 법원에 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음

□ 해당 주권상장법인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하여야 함(단, 주권비상장법인은 2개월 이내 매수)

○ 주권상장법인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매수한 자기주식을 그 매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

Ⅴ.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1.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등의 신고

□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처분은 크게 상법에 따른 방법과 자본시장법 §165의3에 따른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① 상법상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의 취득(상법 §341①, 동법 시행령 §9)
   1)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2. 특정목적에 의한 취득(상법 §341의2)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② 또한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 §165의3에 따라 해당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금전신탁계약을 통해 신탁업자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할 수 있음

□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결의

○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제1항 또는 상법 제341조제1항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상법 제341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결의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 (법 §165의3③)

* 주주총회 결의가 원칙이나 정관의 정함이 있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가능함

□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의 공시 ☞ Q&A 1 -32 참조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할 것을 결의*한 때에는 그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함(법 §161①)

* 상법 제341조의2에 따른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 별도의 결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다른 행위에 자기주식취득이 수반되는 것에 불과 하므로, 자기주식취득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는 없음

다만, 동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이사회결의를 수반하므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가 있음에 유의 (처분결과보고서 제출의무는 없음)

** 최대주주 서약서 제출의무는 폐지되었음

○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 §165의3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을 완료하거나 취득(처분)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취득(처분)결과보고서를(규정 §5-8① 및 §5-9①, ③),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상황보고서를(규정 §5-10①), 그리고 신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신탁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를(규정 §5-10②) 제출하여야 함

* 영업일 기준 아님. 기간 말일이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인 경우 익일로 연기

<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관련 공시 >

신고서의 구분	제출대상법인	제출사유	제출기한
주요사항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신탁계약의 체결.해지)에 관한 결의가 있은 때	다음 날
자기주식취득 결과보고서	주권상장법인(외국법인 등은 제외)	자본시장법 §165의2 또는 §165의3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을 완료한 때 또는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한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기간이 만료된 때	5일 이내*
자기주식처분 결과보고서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상황보고서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때	
신탁계약해지 결과보고서		신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신탁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때	

* 영업일 기준 아님. 기간 말일이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인 경우 익일로 연기

2. 자본시장법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제한

□ 자기주식 취득.처분 제한의 취지

○ 자본시장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효익이 모든 주주에게 공정하게 분배되고 취득.처분으로 인한 시장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지나친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회사의 재무건전성 저해 및 불공정거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음

※ 이하의 제한은 법 §165의3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신탁계약의 체결.해지)에 대해서만 적용됨

□ 취득방법의 제한

○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직접취득(법 §165의3①)

(i) 증권시장에서 취득하는 방법

(ii)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하는 방법

※ 공개매수에 의한 방법으로 장외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주요사항보고서와 공개매

수신고서는 공시의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양자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iii)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iv)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

○ 신탁기관 등을 통한 간접취득(법 §165의3①,④)

– 신탁업자와 자기주식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기주식을 신탁회사의 명의로 취득할 수 있음

□ 취득금액 한도의 제한(법 §165의3②)

○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및 과다 보유는 주식회사의 자본충실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해당 법인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일정한 범위(배당가능이익)내로 제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 이익배당한도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해서는 안되며,

– 이를 위반한 경우 이사는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상법§341③,④)

○ 자기주식 취득(신탁계약의 체결) 한도의 산정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규정 §5-11①)

* 별도 재무제표 기준

구 분		항 목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상법상 이익배당 한도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합병.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등(상법§459)]
	(-)	이익준비금
	(-)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실현이익
배당불능자산	(-)	신탁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금액[1]
결산기말 이후 배당가능이익의 증가.감소	(-)	직전사업연도말 이후 주총결의 배당금 및 관련 이익준비금2)(중간배당금 및 관련 이익준비금 포함)
	(-)	직전사업연도말 이후 자기주식을 취득한 금액[3]
	(+)	직전사업연도말 이후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주식의 취득원가(이동평균법 적용)[3]
	(+)	직전사업연도말 이후 신탁계약의 일부해지가 있는 경우 해당 신탁계약의 원금 중 해지비율 만큼의 금액
	⇒	자기주식취득한도

1)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새로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전체를, 직전 사업연도말 이전에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신탁계약원금에서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

한 금액을 차감하여야 함

2)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배당금(현금배당, 주식배당 모두 해당) 및 이와 관련하여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을 차감하여야 하며, 직전사업연도말 이후 이사회에서 결의된 배당금 및 관련 이익 준비금도 차감하여야 함

3)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금액은 차감하고, 반대로 처분한 자기주식의 취득금액은 가산함

신탁계약의 체결에 따른 한도의 계산 사례

(예시1)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새롭게 체결한 신탁계약금액이 10억원인 경우

구분	항목
배당불능자산	(-)10억원

(예시2) 직전 사업연도 중 신탁계약금액 10억원을 체결하여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신탁계약금액 평가액이 12억원(이중 현금 7억, 자기주식 5억원)이고,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원가는 4억원인 경우

구분	항목
배당불능자산	(-)5.83억원*
결산기말 이후 배당가능이익의 증가·감소	(-)4억원**

* 신탁계약원금에서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 10-10x5/12=5.83

**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자기주식 취득금액

□ 자기주식 취득 · 처분 기간에 대한 제한

① 자기주식 취득 · 처분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은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법 §161①)

②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하여야 하고, (영 §176의2③)

③ 자기주식 처분의 경우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규정 §5-9①)

※ 공개매수를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는 공개매수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신고한 자기주식의 취득을 완료하고 취득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주식 취득에 관하여 새로운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으며,

- 신고한 취득기간 이내에 결의한 취득신고주식수를 모두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기간 만료 후 1개월이 경과하여야 새로운 이사회결의를 할 수 있음(규정 §5-4①)

▸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신탁계약의 체결·해지 및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으로 인하여 인위적인 시장가격의 왜곡이 발생하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매매거래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의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신탁계약의 체결·해지 및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을 제한하고 있음(영 §176의2②, §106⑤)

* 이 경우 신탁업자를 통한 자기주식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장법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개시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탁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에 유의(영 §176의2⑤)

(① 기준가격의 공정한 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일로부터 과거 1개월간
- 유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일반공모의 경우 청약일) 1개월 전부터 청약일까지의 기간

(② 기존에 공시한 사항의 /변경이 초래되는 경우)
-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이사회결의일부터 신주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③ 기타 공정한 거래의 형성을 저해하는 경우)
- 시장조성 예정기간
-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의 기간

(④ 빈번한 취득·처분으로 인한 시장가격의 왜곡을 예방하기 위한 경우)
- 취득(신탁계약등의 체결)후 6개월간 처분(해지)을 금지
- 처분(신탁계약등의 해지)후 3개월간 취득(체결)을 금지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④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영 §176의2②6)

(1)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 계열사의 임직원은 포함되지 않음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3) 한도를 초과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4)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공로금·장려금 등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하는 경우
(6) 법령 또는 채무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
(7) 공기업의 민영화를 위하여 자기주식 교환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8) 국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기업이 그 주식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9) 국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기업이 교환사채권을 해외에서 발행하는 경우로서 자기주식을 갈음하여 발행하는 DR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10) 취득결과보고서 제출 후 자기주식을 기초로 해외DR을 발행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11)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자기주식을 반환받는 경우

□ 장내취득·처분의 경우 주문방법 제한(규정 §5-5 및 §5-9)

○ 자기주식의 매매주문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가격왜곡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음

○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호가는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5/100 낮은 가격과 5/100 높은 가격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함(규정 §5-9⑥)

※ 상법 제341조의2에 따른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가령,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도호가를 당일 종가 기준 ±}5%의 범위 이내로 하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한국거래소가 시장상황 급변 등으로 투자자보호와 시장안정을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용이하게 자기주식을 취득(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도입(규정 §5-6)

- 특례내용 : 1일 매수주문 수량을 취득신고서상의 취득신고수량까지 인정
- 한국거래소가 동 특례조치를 취하거나 변경할 경우 금융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자기주식의 장내매매의 경우 주문방법 >

구 분	자기주식 취득(규정 §5-5)	자기주식 처분(규정 §5-9)
주문시간	장 개시 동시호가 참여 가능 매매거래시간 중 신규주문 가능(정정주문 포함) ※ 장종료 30분전까지만 인정	좌 동
주문가격	<동시호가> • 전일종가~전일종가 + 5% 장중호가(정정주문포함) <매매거래시간 중>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가격*의 범위 이내 * 당해종목의 직전체결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 중 높은 가격 ± 5호가가격단위	<동시호가> • 전일종가~전일종가 - 2호가 장중호가(정정주문 포함) <매매거래시간 중>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가격*의 범위 이내 * 당해종목의 직전체결가격과 최우선매도 호가 중 낮은 가격 ± 5호가가격단위
일일 주문수량	[①과 ②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 총수의 1%중 적은 수량 ① 취득신고주식수의 10% ② 신고서 제출 전 1월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좌 동
매매주문 공시	주문일 전일의 장 종료 후 1일 주문 수량 등을 즉시 주문위탁 증권회사를 통하여 거래소에 신고	좌 동
주문위탁	주문을 위탁할 증권회사를 총 5사 이내로 제한 (1일 주문위탁은 1 증권사로 제한)	좌 동

□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처분방법 ☞ Q&A 1-44, 1-45 참조

○ 신탁계약을 통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권시장을 통하거나 공개매수의 방법만 허용

○ 자기주식 신탁계약의 자기주식 매매주문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가격왜곡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접취득·처분시 적용되는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함
  - 다만, 일일주문수량은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로 제한됨
○ 규정 §5-6에 의해 시장상황 급변 등에 따른 직접취득의 특례적용기간 중에는 자기주식 신탁계약의 1일 매수주문가능수량을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에서 취득가능한 주식수"로 확대 적용함
○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을 통하여 자기주식을 직접 처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
○ 기타 자기주식 취득·처분방법의 제한
  - 빈번한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으로 인한 시장가격의 왜곡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주식 취득(최종 취득건 기준)후 1개월간 처분이 제한되고, 자기주식 처분(최종 처분건 기준)후 1개월간 취득이 제한됨(영 §106⑤1)
  -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를 초과한 경우 신탁계약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
    ※ 자기주식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를 초과한 경우 해당 법인은 지체없이 해당 사실을 계약체결 신탁업자에 통보하여야 함(규정§5-11③)
  - 자기주식 신탁계약 운용대상을 자기주식 취득, 예금 및 단기대여로만 제한함

□ 자기주식의 장외 처분 가능여부 및 처분방법
○ 자기주식의 취득과 달리 처분의 경우에는 장내처분뿐만 아니라 장외처분도 가능(규정 제5-9조⑤)
○ 장외처분의 경우에는 거래소시장을 통한 매도의 경우와 달리 수량과 매도가격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이 없음
  - 다만, 규정 §5-9에서 장내매도의 경우 가격제한을 둔 취지를 고려할 때 동조의 제한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가격이어야 할 것임
  - 또한 처분가격과 처분시기 등이 불합리할 경우 불공정 거래행위 또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개정상법('12.4.15)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 종전 상법은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자기주식의 취득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으나, 2012. 4월 상법개정을 통하여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목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
  ◦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의 취득(상법 §341)
    - 주주총회의 결의(이익배당 결정권이 이사회에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음)를 거쳐 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하여야 함
      1.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모든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법

3. 공개매수에 따라 취득하는 방법
◦ 배당가능이익을 불문하는 특정목적에 의한 취득(상법 §341의2)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회사는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받지 못함(상법 §341의3)

□ 자기주식의 처분(상법 §342)
◦ 정관에 규정이 없을 경우 이사회의 결정으로 처분 가능
◦ 특히 종전 상법의 처분기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처분 시기는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음

제 2 장 발 행 공 시

▣ 2020년도 중 발행공시 관련 서식 개정사항

1. 인수인의 사전 지분투자 관련 정보 제공 확대

□ 기업공개시 인수인이 해당 회사에 투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증권신고서에 투자 규모, 투자일자, 취득가능한 주식수 등 세부 내역을 작성하고

○ 인수인과 일반투자자간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 이해상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등을 기재(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제2-1-5조, 제2-4-4조)

2.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관련 정보 제공 확대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관련 주요사항보고서에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를 기재하고,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 행사가액 조정에 대한 최저조정한도 및 조정 근거 등 정보를 기재(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별지서식 제38-24호, 제38-25호)

3. 일반투자자의 청약 및 배정 관련 제도 변경 내용 반영

□ '20.12월부터 기업공개시 일반투자자 배정물량의 절반 이상을 '균등방식*'으로 배정해야 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그 구체적인 배정방식, 배정기준 등을 기재하고,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배정결과 등을 추가 기재(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별지서식 제2-1-4조, 제13-1-1조)

*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

Ⅰ. 증권의 모집·매출

1. 청약의 권유

가. 청약의 권유의 개념(영 §2) ☞ Q&A 2-01 참조

□ '청약의 권유'는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청약의 권유(모집) 또는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매출)를 통칭하며,

○ 권유받는 자에게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함

–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모든 활동이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므로, 서면·사진·프리젠테이션 등 시각적인 방법, 구두로 설명·대화·전화 등 청각적인 방법 등의 모든 의사전달 수단이 청약의 권유에 해당

나. 신고서 대상이 되는 증권거래시 청약의 권유방법(법 §124②)

□ 신고서 대상이 되는 증권거래를 위한 청약의 권유는 반드시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해야 함

※ 투자설명서 등 법정 청약 권유문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해당증권의 발행·모집·매출 그 밖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법 §132)되거나 관련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 등의 조치(영 §138)가 부과될 수 있음

다. 청약의 권유에서 제외되는 경우(규정 §1-3)

□ 발행인의 명칭, 발행 또는 매도의 예정금액, 일반적인 조건 등을 광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단순히 알리는 활동(단순광고)만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면 청약의 권유로 보지 않음

① 인수인의 명칭이 표시되지 않을 것

② 증권의 발행금액 및 발행가액을 확정하여 표시하지 않을 것

③ 청약의 권유 및 청약은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 설명서에 따른다는 뜻을 명시할 것

2. 모집 또는 매출

가. 모집 또는 매출의 개념(법 §9)

□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도는 투자자가 신규로 발행되거나 매도될 증권의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투자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 증권신고서 제도의 보호대상은 정보가 부족한 불특정 다수이며, 증권의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연고자(발행인의 최대주주, 임원 등) 및 전문가(금융회사, 회계법인 등)는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영 §11①)

□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보호대상인 불특정다수의 일반투자자에 대한 거래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로 모집 또는 매출의 개념이며,

○ 해당 증권의 거래가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되면 '공모', 모집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모'로 구분

- 공모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등에 발행인 및 공모하는 증권의 정보 등을 기재하여 투자자에게 공시

나. 모집 또는 매출 개념의 구성요소

◦ 모집 : 50명 이상의 자에게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 다수를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 매출 : 50명 이상의 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 청약이나 매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 이미 발행된 증권의 보유자가 다수에게 증권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는 행위

□ 자본시장법은 모집·매출 해당 여부를 50인 이상으로 판단하며 이때 50인은 청약을 권유받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

○ 따라서 실제로 청약하는 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권유받는 자가 50인 이상이면 모집·매출에 해당함에 유의해야 함

- 이 경우 영 §11① 각호(규정 §2-1)에 나열된 연고자 또는 전문가는 50인 산정대상에서 제외

○ 또한 50인 이상 여부를 판단시에는 금번 청약의 권유대상자에 과거 6월 이내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

※ 매출에 대하여는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그 수를 산출(영 §11④)

< 모집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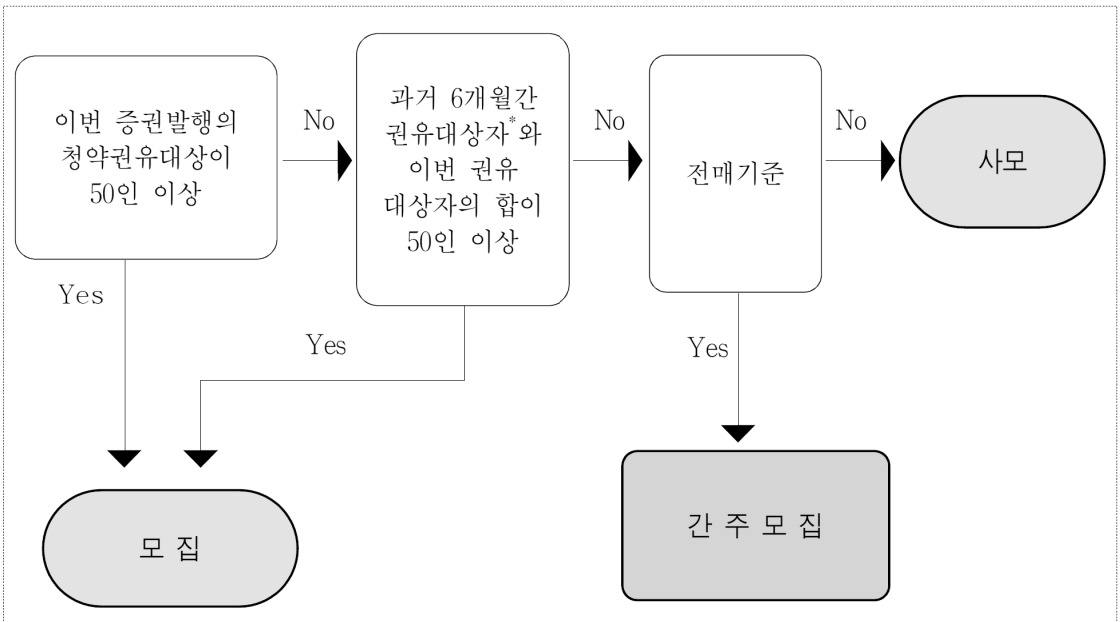

*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해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

※ 다만,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간주될 수 있음(법 §119⑧) 〈개정 2017.10.31〉

< 모집 또는 매출 판단시 제외되는 청약의 권유자(영 §11①) >

구 분	내 용
연고자	○ 발행인의 최대주주(본인 및 특수관계인 소유주식 합산) 및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소유주주 ○ 발행인의 임원(「상법」 §401의2①에 의한 업무집행지시자 포함)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 ○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 그 주주(단, 주식을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도 50인 산정시 포함함) ○ 외국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 설립중인 회사의 경우 그 발기인 ○ 금융위가 정하는 자 – 발행인(설립중인 회사 제외)의 제품을 원재료로 직접 사용하거나 발행인(설립중인회사 제외)에게 자사제품을 원재료로 직접 공급하는 회사 및 그 임원 – 발행인(설립중인 회사 제외)과 대리점계약 등에 의하여 발행인의 제품 판매를 전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임원

	– 발행인이 협회 등 단체의 구성원이 언론, 학술 및 연구 등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설립중인 회사 포함)인 경우 해당 단체의 구성원 – 발행인이 지역상공회의소, 지역상인단체, 지역농어민단체 등 특정지역 단체의 구성원이 그 지역의 산업폐기물 처리, 금융·보험서비스 제공, 농수축산물의 생산·가공·판매 등의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설립중인 회사포함)인 경우 해당 단체의 구성원 – 발행인이 동창회, 종친회 등의 단체 구성원이 총의에 의하여 공동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설립중인 회사 포함)인 경우 해당 단체의 구성원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주가 그 사업보고서 미제출법인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 및 분할합병의 대가로 다른 사업보고서 미제출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받는 경우 그 주주 – 기타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연고자라고 감독원장이 정하는 자
전문 투자자	○ 국가 ○ 한국은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금융투자업자[법§8⑨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 – 증권금융회사 – 종합금융회사 –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외국 금융기관 ○ 주권상장법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 한국예탁결제원 – 한국거래소 – 금융감독원 – 집합투자기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법인세법시행규칙」 §56의2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지방자치단체 –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 금융위원회에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한 법인 또는 단체(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는 제외) •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 이상일 것 •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 금융위원회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한 개인 •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일 것 •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것 • 자료제출일 기준으로 직전년도의 소득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재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 외국 정부 •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 외국 중앙은행 • 상기 요건에 준하는 외국인
기타 전문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 법 §335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전문가라고 감독원장이 정하는 자

※ 증권 발행회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발행회사의 직원, 계열회사의 직원은 50인 산정시 제외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함

※ 코넥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상장 예정인 법인 포함)이 발행한 주권 등의 경우에는 위 표에서 열거된 자 외에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 해당하는 자(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하는 투자일임재산의 명의자, ④ 거래소의 「코넥스시장업무규정」 제62조에 따른 기본예탁금을 충족한 자, 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4호의2에 따른 창업기획자도 50인 산정시 제외된다.(규정 §2-2조의 3①) 〈개정 2017.8.28〉

다. 모집 또는 매출 판단시 "같은 종류의 증권"의 개념(법 §4) ☞ Q&A 2-12 참조

□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의 종류를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의 6종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 각 증권별 개념에서 다시 개별 증권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열거된 개별증권의 구분에 따라 같은 종류의 증권 여부를 판단함

- '채무증권'의 포괄적인 정의에서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파생결합사채 포함), 기업어음증권 등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열거된 개별증권 별로 같은 증권으로 간주

○ 다만, 주식의 경우 상법상 다른 종류의 주식(보통주, 우선주, 혼배주 등)은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함

※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종류 및 정의

① 채무증권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파생결합사채 포함), 기업어음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

② 지분증권 :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

③ 수익증권 : 금전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④ 투자계약증권 :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⑤ 파생결합증권 :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⑥ 증권예탁증권 : 상기 5종의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3. 전매기준 및 전매제한조치

가. 간주모집의 개념

□ 증권의 발행 당시에는 청약의 권유 대상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발행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규정 §2-2① 및 §2-2의2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간주됨

○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모집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과

○ 한편, 간주모집에 대한 신고서 제출의무 부과는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모집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는 모집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매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증권을 발행할 때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매제한조치(규정 §2-2② 및 규정 §2-2의2②)를 취하여야 함

○ 전매제한조치가 취해진 경우 50인 이상에게 증권이 양도되지 않게 되므로 증권신고서 등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참고] 증권종류별 전매기준 및 전매제한조치
(규정 §2-2, §2-2의2)

구 분	전매기준	전매제한조치*	비 고
지분증권	같은 종류의 증권이 증권시장(코넥스 시장 제외)에 상장 또는 모집·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물적분할의 경우를 제외)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은 분할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본다.		ex) 주권, 출자증권 등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 (기업어음 제외)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 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전자등록(「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 또는 등록(「은행법」에 따른 등록)발행의 경우에는 매수가 아닌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 후 1년 이내 권면분할 금지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하는 경우(전자등록 또는 등록발행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되 발행 후 1년이내에는 최초 증권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	ex) 일반사채, 전환사채 등

기업어음	- 50매 이상으로 발행되는 경우 - 만기가 365일 이상인 경우 -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	- 특금위탁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을 인수계약서와 취득계약서에 기재하고 이행담보장치를 마련한 경우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지분증권인 경우 - 같은 종류의 증권이 상장 또는 모집·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 ■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 -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 지분증권으로서 전매제한조치와 지분증권 외의 증권으로서 전매제한조치 병행	ex) CB, BW 등에 부여된 권리
파생결합증권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	특금위탁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을 인수계약서와 취득계약서에 기재하고 이행담보장치를 마련한 경우	
적격기관투자자(QIB)증권		적격기관투자자가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고,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기관 투자자 사이에서만 양도·양수되는 채무증권 또는 유동화증권으로서 규정§2-2②제4호 또는 제5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외에서 발행되는 증권	해당 증권의 발행 당시 또는 증권의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자가 취득가능한 조건으로 발행하는 경우 -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시장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증권 등을 거주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뜻을 증권의 권면, 인수계약서, 취득계약서 및 청약권유문서에 기재하고, 발행인 또는 인수한 금융투자업자가 취득자로부터 그러한 발행조건을 확인·서명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해당 동의서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한 후 발행하는 경우 나. 발행 후 지체없이 발행지의 예탁결제기관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는 이를 인출하지 못하며 거주자에게 해당 증권 등을 양도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다.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이 아닌 사채권으로서 제2-2조제2항제4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가 취득(발행시점에서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양도·양수되는 경우로서 규정§2-2의2②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라. 기타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자가 해당 증권 등을 취득할 수 없는 구조로 발행되는 경우	

* 공통사항(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증권 등을 발행한 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매매의 예약 등을 통해 사실상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②「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12①에 의하여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 국내시장 유입 가능성이 높은 외국법인등: 국내 상장한 경우 또는 발행주식의 20%이상을 거주자가 보유한 경우(다만, 외국법인등의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을 해외에서 발행하면서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증권 등을 거주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뜻을 증권의 권면, 인수계약서, 취득계약서 및 청약권유문서에 기재하고,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중개·주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보지 않음)

□ 적격기관투자자시장은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하기 위한 시장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발행기업과 적격기관투자자(QIB)만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음(규정 §2-2②제4호, 제5호)

○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유통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

< QIB(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적격기관투자자) 제도의 개요 >

1. QIB 제도의 의의
   ◦ 회사채가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QIB 간에만 거래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를 완화하는 제도로서 기업의 채권발행을 원활하게 하여 자금조달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12.5월)
2. QIB의 범위
   ◦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 예보, 캠코,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주권상장법인,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외부감사대상법인은 50억원 이상)의 일반법인, 국내 QIB에 준하는 외국기관투자자
3. QIB 채권(QIB 대상증권) 발행기업의 요건
   ◦ 직전 사업연도말 총자산이 2조원 미만인 법인. 다만, 외국법인등이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하거나 국

내외법인 등이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4. QIB 채권의 범위
◦ 일반회사채(SB), 주식관련사채(CB, BW), 기초자산에 QIB 채권이 80% 이상 포함되어 있는 유동화증권(ABS)
5. QIB 채권 발행기업에 대한 특례
◦ QIB 시장 발행기업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
6. QIB 채권 거래방식
◦ QIB가 예탁원에 개설한 자기계좌를 통해서만 QIB채권을 매매하도록 제한

나. 전매제한조치의 예외적 인출사유(규정 §2-2③)

□ 해당 발행이 모집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 전매제한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증권의 일시 인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가 종료되는 대로 해당 증권이나 교환·전환된 증권을 지체없이 잔여 보호예수기간동안 재예탁하여야 함

- 통일규격증권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
-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행사를 위한 경우
-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라 다른 증권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
- 액면 또는 권면의 분할 또는 병합에 따라 새로운 증권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동 인출사유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를 위해 전매제한조치가 취해진 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률이나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 전매제한조치가 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나 계약에 따름에 유의해야 함

< CP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
1. 모집 및 간주모집
가. 청약권유대상자가 50인 이상인 경우(모집)➡ 증권신고서 제출
□ 청약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공모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인 경우(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정하는 전문가 및 연고자는 제외)

나. 청약권유대상자가 50인 미만인 경우(간주모집)➡ 증권신고서 제출
□ 과거 6개월간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50인 미만이라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 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정하는 경우(자본시장법 시행령 §11③)
◦ CP의 경우 다음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전매기준에 해당하여 신고서 제출의무 발생(발행공시규정 §2-2①ⅴ)
① 50매 이상으로 발행되는 경우 ② 만기가 365일 이상인 경우
③ 특정금전신탁(이하 '특금')에 편입되는 경우

다. 간주모집에 해당하는 경우의 전매제한 조치➡ 증권신고서 미제출

□ 다만, 특금의 위탁자를 합산하여 50인(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정하는 전문가 및 연고자는 제외)이상이 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한 경우 전매제한 조치로 인정(발행공시규정 §2-2②ⅴ)

□ CP발행시 전매제한 조치를 위해서는 케이스별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

◦ CP 권면매수가 50매 이상이거나 만기가 365일 이상인 경우 :

- 특금의 편입과 무관하게 전매기준에 해당하며, 전매제한 조치로는 "보호예수 1년"만 가능

◦ CP 권면매수가 50매 미만이고, 만기가 365일 이하인 경우 :

- 권면매수 및 만기 기준으로는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금에 편입이 가능*하므로 전매기준에 해당하며,

  * CP가 특금에 편입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전매기준 미해당

- 전매제한 조치로는 "보호예수 1년" 혹은 "위탁자 50인 제한 조치" 가능

< CP 발행시 전매기준 별 전매제한 조치 >

권면매수 및 만기	특금편입 여부	전매기준해당여부	전매제한조치
50매 이상 혹은 만기 365일 이상	특금 편입여부 무관	해당	보호예수 1년*
50매 미만 이고 만기 365일 미만	특금 편입 가능	해당	위탁자 50인 제한 혹은 보호예수 1년*
	특금 편입 금지**	미해당	조치없음

* 보호예수 기간 중에는 해당 증권의 매매가 불가능하며(발행공시규정 §2-2②ⅰ), 신탁업자가 보유한 CP가 보호예수되는 경우 타 금융회사에 매각은 물론, 신탁 내에서 위탁자 및 수익자를 변경(계약해지는 가능)하는 것도 불가능(특금업자는 수익권을 양도하지 않는 것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CP 발행시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으로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CP가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지 않도록 발행인이 관리하는 경우

2. 간주모집에 대한 추가 설명

가. 만기 365일의 판단기준

□ 기업어음증권 권면의 만기를 기준으로 365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2년 동안 만기 3개월 CP가 8회에 걸쳐 차환발행될 예정인 경우에도 만기는 3개월로 판단

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

□ 발행시점에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에도 전매기준에 해당함

➡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CP 발행시점에 특정금전신탁 편입여부와 무관하게 전매제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전매제한 조치에 대한 추가 설명

가. 보호예수 관련

□ 증권 발행 후 지체없이 예탁원과 1년간 보호예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모든 전매기준에 대해 전매제한 조치로 인정

➡ CP 전매기준(50매 이상 발행, 만기 365일 이상, 특금편입)에 대해서도 보호예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전매제한 조치로 인정

다만, 발행시 신탁업자가 CP를 취득하고 해당 CP가 보호예수 되는 경우, 신탁업자로부터 위탁자 및 수익자를 변경(계약해지는 가능)하지 않고 수익권을 양도하지 않는 것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함

나. '위탁자 50인 미만' 조건의 이행을 담보할 장치 관련

□ 위탁자의 수가 50인 이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을 인수계약서 및 취득계약서에 기재하고, 해당조건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고 규정

◦ 발행인과 인수인은 인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인수계약서에는 최소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발행인이 인수인을 거치지 않고 최종투자자에게 바로 CP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기 내용이 포함된 취득계약서를 발행인과 최종 투자자가 작성)

- 해당CP가 사모발행 되었다는 사실,
- 특정금전신탁 위탁자 숫자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
- 유통단계에서 CP 매도시 거래상대방(매수자)이 특금업자일 경우 위탁자 수를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
- 거래상대방(매수자)이 다시 CP를 매도할 경우에도 ①~③에 해당하는 절차를 취하겠다는 사실

◦ 인수인이 발행기업으로부터 CP를 인수한 이후 최종 투자자에게 매도할 때에는 인수인과 최종투자자가 상기내용이 포함된 취득계약서를 작성하거나, CP 매매시 주고받는 매매계산서에 상기내용을 기재하여 매수자에게 교부하고 매수자가 해당사실을 확인하도록 해야 함

◦ 인수인으로부터 혹은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CP를 매수한 자가 이를 다시 매도하는 경우에는 서면계약, 전화녹취 등을 활용하여 상기 내용을 전달하여야 하며, 해당증빙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함

□ (예시①) 甲기업이 발행한 CP를 최초 A신탁업자(위탁자 20명), B MMF(최초발행시 특금의 위탁자 29명만 편입 가능하도록 계약)가 매입한 경우, A신탁업자는 CP매도시 특금의 위탁자 20명을 한도로 매도하여야 하며(A가 특금업자 C, D에게 어음을 매도할 경우에는 C, D의 위탁자를 합하여 20명), 향후 C 및 D가 해당 CP를 매도할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에게 위탁자의 한도를 알려야 하며, 거래상대방은 이를 이행하겠다는 확인을 하여야 함

□ (예시②) 乙기업이 발행한 CP를 최초 A신탁업자(위탁자 49명), B MMF(최초발행시 특금위탁자 관련 사항을 별도로 정하지 않음)가 매입한 경우, B MMF는 CP 매도시 특금업자에게 매도할 수 없으며, 해당 사실을 B의 거래상대방에게도 알리고, 거래상대방은 이를 이행하겠다는 확인을 하여야 함

Ⅱ. 증권신고서

1. 증권신고서

가. 증권신고서의 의의

□ 발행인은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당해 "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및 "발행인(회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재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함

○ 자본시장법은 매각하려고 하는 증권이 신규로 발행하는 것인지 또는 기존에 발행된 것인지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로 구분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공모"라는 용어를 사용함

※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모'라는 용어를 사용(법 §9⑧)

나. 증권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제출대상 증권의 범위

○ 자본시장법에서 증권신고서 신고대상인 증권에 대해 열거식이 아닌 포괄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주식, 회사채 등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있는 모든 증권은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이 됨

○ 따라서, 합병, 분할·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영업·자산양수도의 경우에도 증권발행이 수반되고 동시에 모집·매출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됨

□ 신고서 제출 면제 증권(법 §118, 영 §119)

○ 자본시장 질서의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모집·매출시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증권의 종류에 따라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모집·매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함

<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증권 >

- 국채, 지방채 및 법률(한국은행법 등)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 국가·지자체가 원리금을 지급보증한 채무증권
- 국가·지자체가 소유하는 증권을 미리 금융위와 협의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증권
-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 국제금융기구가 금융위와의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발행하는 증권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의해 발행하고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기사채로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자(법 §119)

○ 증권신고서의 제출의무자는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대상이 되는 증권의 발행인(즉, 회사)을 말함. 따라서 매출의 경우에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자는 증권을 매도하려는 자가 아니라 당해 발행인(회사)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신고서 제출시기(법 §119)

○ 발행인은 증권을 모집·매출하기 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어야만 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의 청약을 권유할 수 있음

□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영 §120) ☞ Q&A 2-04, 05 참조

○ 증권의 모집·매출 금액이 1년 동안 10억원 이상인 경우 및 청약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청약 권유시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이 되며,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만을 제출하면 증권발행이 가능함(소액공모)

< 10억원 산정방법 >
· 공모 또는 간주모집에 해당하는 경우
⇨ 현재 공모예정금액 + 과거 1년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모금액 or 과거 6개월간 50인 이상에게 청약 권유시 합산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 각각의 합계액

□ 매출신고서 면제 대상 증권

○ 발행인의 증권에 대해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출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
  - 발행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서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을 것
  - 발행인이 최근 1년간 공시위반으로 법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이 영 제138조·제175조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2년 이내에 매출하려는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어 효력이 발생한 사실이 있을 것
  -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목적의 매출이 아닐 것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출이 이루어질 것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외국국채)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도 외국 정부의 매출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
  - 2개 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을 것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출이 이루어질 것
  - 외국국채의 시세, 발행인에 관한 정보 등을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것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외국국채에 대한 기본정보, 투자위험, 그 밖에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투자자에게 사전에 제공·설명하고 확인을 받을 것. 다만, 투자매매업자 등이 기관 이외의 법인 또는 개인과 행하는 대고

객조건부매매의 대상증권으로서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을 투자자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에 대한 사전 설명 및 투자자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 신고서의 기재사항(영 §125①, 규정 §2-6)

○ 증권신고서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과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으로 나누어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은 증권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으며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 등 회사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증권을 모집·매출하는 경우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내용은 다음의 사항들을 기재해야 함

< 증권신고서 기재내용 >

구 분	기재내용
제1부 :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①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②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③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④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파생결합증권의 경우) ⑤ 인수인의 의견(인수인이 있는 경우) ⑥ 증권분석기관의 평가의견(주권비상장법인이 인수인의 인수없이직접 지분증권을 공모하는 경우) ⑦ 자금의 사용목적 ⑧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부 : 발행인에 관한 사항	① 회사의 개요 ② 사업의 내용 ③ 재무에 관한 사항 ④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⑤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⑥ 주주에 관한 사항 ⑦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⑧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⑨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⑩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법인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 기재 (영 §125③, 규정 §2-6, §2-11)

○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중 '발행인에 관한 사항' 일부 항목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와 동일하게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

* 재무에 관한 사항, 회사의 개요, 사업의 개요, 부속명세서, 우발채무, 결산기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 외국기업도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경우 국내기업 증권신고서와 동일한 항목에 대해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의무화

○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이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인 경우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종속회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종속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음(법 §119의2)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기업이 최초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직전 분·반기 요약재무정보를 작성(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별지서식 제1호, 제3호)

□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특례

(1) 참조방식에 의한 증권신고서 제출(법 §119④, 규정 §2-12⑤)

○ 발행인은 증권신고서 작성시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한 신고서나 첨부서류,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의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와 동일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음

(2)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미확정으로 기재 가능(규정 §2-12)

○ 발행인은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중 발행가액 등 일부 사항에 대해 그 기준 또는 결정방식 등 예정내용만을 기재하여 제출 가능함

- 지분증권의 경우 발행가액, 청약증거금, 인수증권수, 인수조건, 인수인(단, 주관회사는 제외)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의 전환가액, 행사가액, 교환가액 등
- 채무증권의 경우 발행가액과 발행이자율

○ 이후 발행가액, 인수인, 전환가액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처럼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미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라.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

□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영 §125②, 규정 §2-4, §2-6, §2-11)

○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증빙하고 해당 공모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모집·매출하는 증권의 성격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다음과 같이 달리 정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법인이 반기나 분기보고서 제출기한 (반기나 분기 경과 후 45일 이내)이 경과한 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도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연결제무제표에 대한 반기·분기 감사보고서나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함

- 외국 기업도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작성한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반기·분기감사(검토) 보고서를 첨부

< 증권신고서 종류별 첨부서류 >

첨 부 서 류	지분 증권	채무증권			파생 결합 증권	투자 계약 증권	수익 증권	증권 예탁 증권
		보증	담보 부	무보 증				
1. 정관	◎	◎	◎	◎	◎	◎	◎	◎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	△	△	△	△
3.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주총 의사록 사본	◎	◎	◎	◎	◎	◎	◎	◎
4. 발행 관련 행정관청의 인·허가, 승인서 사본	△	△	△	△	△	△	△	△
5. 인수계약서 사본	△	△	△	△	△	△	△	△
6. 예비투자설명서	△	△	△	△	△	△	△	△
7. 간이투자설명서	△	△	△	△	△	△	△	△
8. 분석기관의 평가의견서 등(직접공모의 경우)	△	×	×	×	×	×	×	△
9. 상장예비심사결과서류	△	×	×	×	△	×	×	△
10. 감사보고서	◎	×	◎	◎	◎	×	×	◎
11.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
12. 반기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	△	×	×	△	△	×	×	△
13. 분기감사보고서 또는 분기검토보고서	△	×	×	△	△	×	×	△
14. 주주명부	△	×	×	×	×	×	×	×
15.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위탁계약서	△	×	×	×	×	×	×	×
16. 원리금지급대행계약서사본	×	△	△	△	×	×	×	×
17. 증권 신탁계약서 사본	×	△	△	△	×	×	×	×
18. 원리금 지급보증계약서 사본	×	◎	×	×	×	×	×	×
19. 담보신탁증서 사본	×	×	◎	×	×	×	×	×
20. 모집위탁계약서 사본	×	×	×	△	×	×	×	×
21. 신용평가서 사본	×	×	×	△	×	×	×	×
22. 투자계약관계서류	×	×	×	×	×	◎	×	×
23.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	×	×	×	×	△	×	×
24. 법률검토의견	×	×	×	×	×	◎	×	×
25. 모집주선계약서 사본	△	△	△	△	△	△	×	×
26. 주관회사의 적절한 주의의무이행 서류	△	×	×	△	×	×	×	×
27. 회계감사인의 확인서	△	×	×	×	×	×	×	×

◎ : 반드시 제출, △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 제출대상 아님

※ 설립중인 회사가 주식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상기 서류 중 1.~ 9.에 해당하는 서류와 다음의 사항을 첨부함(규정 §2-6⑧)

가. 증권의 모집·매출 주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사본

나. 사업계획서

다. 발기인 전원의 이력서

라.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개요, 연혁 등을 기재한 서류 및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마. 증권분석기관의 평가의견서(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마. 증권신고서의 수리

□ 발행인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형식상 불비가 없고 증권의 모집·매출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신고서는 수리됨

○ 신고서의 수리는 신고서의 기재내용이 적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서의 법정요건을 갖춘 서류가 관련절차에 따라 제출된 경우 이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위임

☞ 실무적으로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즉, 물리적으로 도달하면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심사담당자는 이를 접수한 후, 그 수리 사실을 발행인 등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

※ 원칙적으로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여 청약의 권유를 하여야하나 신고서 제출시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청약의 권유 행위는 가능함

바.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 효력발생의 의미(법 §120)

○ 신고서는 수리된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이 발생하면 발행조건이 확정된 투자설명서에 의하여 청약의 권유 및 청약에 대한 승낙이 가능함

○ 그러나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금융위가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효력발생기간(시행규칙 §12①)

○ 효력발생기간은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심사기간일 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는 해당 증권에 관하여 투자판단을 할 수 있는 주지기간의 의미가 있으므로 증권의 성격 및 발행인의 유형에 따라 그 기간을 차등하여 적용함

<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 >

증 권 / 발행기업	주식		채권		환매금지 집합 투자기구	기타증권
	일반공모, 주주우선공모	주주배정, 제3자배정	보증, 담보부, ABS	무보증		
주권상장법인	10일	7일	5일	7일	10일	15일
일 반 법 인	15일					

* 상기 효력발생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산정. 이하 효력발생기간의 단축 및 연장에도 동일

□ 효력발생기간 단축(시행규칙 §12②,③ 규정 §2-3)

○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경우로서 아

래의 경우에는 효력발생기간이 단축됨

- 모집·매출가액 및 발행이자율의 변경으로 인한 정정신고서 : 수리일부터 3일
- 사채발행시 사채거래수익율 등의 변동으로 인해 발행가액이나 이자율 변경을 위한 정정신고서 : 수리일의 다음날
- 일괄신고서의 정정신고서 : 수리일부터 3일
- 사업·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발행인에 관한 사항이 동 보고서 또는 신고서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경우 : 보증·담보부사채는 3일, 무보증사채는 5일

□ 효력발생기간 연장(시행규칙 §12④)

○ 다음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기존의 효력발생기간에서 3일을 연장할 수 있음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분기보고서상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일반적으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그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효력을 재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당초의 효력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규정 §2-3②·③, §2-12④)

○ 상장을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매출하는 경우로서 당초 신고서의 모집·매출 주식수의 ±20% 범위 내에서 주식수를 변경하는 경우

○ 초과배정옵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거나 초과배정 수량을 변경하는 경우

○ 공개매수의 대가로 교부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발행예정 주식수가 변경되는 경우

○ 채권 발행총액을 기존 증권신고서상 금액의 80%~120% 수준에서 변경하는 경우

○ 사소한 문구수정 등 투자판단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발행가액·인수인, 전환가액, 채무증권의 발행이자율 등의 산정방법을 기재한 경우로서 그 기준에 따라 확정된 가액으로 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 증권신고서의 거짓기재 등 관련 판례 >

◇ (중요사항에 대한 판단)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투자자가 유가증권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기재가 행하여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되, 이는 주로 회사의 영업 및 손익상황, 재무구조 등 일반인들이 투자를 하기 전에 파악해야 할 기업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관하여 모집 또는 매출 당시 사실과 달리 기재하거나 이를 과장하거나 고의로 숨긴 경우를 말하는 것임(대법원 99다48979 판결)

◇ 사채자금을 주금납입계좌에 일시적으로 입금한 다음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증자등기 경료 직후 이를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가장납입)하거나, 주금납입이 없이 위조된 주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 증자등기가 경료되게 한 경우(허위납입)에는,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한 경우에 해당함(대법원 2006도5147 판결)

◇ 9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유상증자 대금 중 35억원을 유상증자 청약자들인 사채업자 등에게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보장을 위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음에도, 자금사용 목적란에 해외시장개척 비용 50억원, 마케팅비용 20억원 등으로만 기재한 것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에 해당함(서울고법 2006노252 판결 확정)

◇ 회사소유 주식 200만주(12억원 상당)를 최대주주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25억원의 담보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총 6회에 걸친 최대주주에 대한 담보제공 사실이 있음에도 증권신고서상 담보제공내역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를 한 것은 증권신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에 해당함(서울고법 2006노1400 판결 확정)

◇ 감사보고서에 특기사항으로 기술된 내용은 합리적인 투자자가 당해 증권의 취득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사보고서상 특기사항으로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여부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증권신고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 것은 중요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에 해당함(대법원 2001다62 판결)

◇ 사실은 유상증자대금 중 70억원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분기보고서 공모자금내역 현황란에 '차입금 및 매입채무상환, 단기금융상품, 보통예금 등'으로 기재한 것은 분기보고서의 중요사항을 허위기재한 경우에 해당함(서울고법 2006노252 판결 확정)

◇ 20,996백만원 상당의 유상증자대금이 주금납입증명서가 위조되어 회사에 납입되지 아니하여 회사에서 유상증자 대금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반기보고서에 위 금원 상당을 양도성예금증서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단기금융상품에 허위 계상하는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반기보고서의 중요사항을 허위기재한 경우에 해당함(서울고법 2006노252 판결 확정)

2. 투자설명서

가. 투자설명서의 개요(법 §124①)

□ 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청약권유 문서로서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등이 있음

○ 증권신고서는 모집·매출을 실시하기 전 제출하는 서류이지만, 투자설명서는 발행인 또는 증권보유자가 증권을 모집·매출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교부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임

○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예비, 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사용해야 하며, 투자자에게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여 투자자가 증권 및 발행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파악한 이후 투자의사결정을 하도록 해야 함

나. 투자설명서의 종류(법 §124②)

□ 예비투자설명서

○ 신고서가 수리된 후 그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을 부기한 청약권유문서

□ 투자설명서

○ 신고서 효력발생 후 모집·매출의 조건이 확정된 경우 청약의 권유 및 승낙을 위하여 이용하는 청약권유문서

□ 간이투자설명서

○ 발행인이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한 광고, 안내문, 홍보전단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청약권유문서

다. 투자설명서의 제출 및 교부

□ 제출시기(법 §123①, 규칙 §13①)

○ 투자설명서는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제출하며, 발행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거래소, 청약사무취급처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청약의 권유를 위하여 예비투자설명서나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영 §125②)

□ 교부 및 사용방법(법 §124①)

○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설명서(예비·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해야 하며, 투자자에게 미리 교부하지 않고서는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할 수 없음

○ 다만, 전문투자자 등 투자자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됨

-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발행인의 연고자 등
-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으로 표시한 자
- 이미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 취득한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 투자설명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서면이 아닌 전자문서방법(법 §436)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음

- 전자문서에 의하여 전자문서 수신자의 사전 동의가 있을 것
- 전자문서 수신자가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 전자문서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예비투자설명서의 투자설명서로의 전용(영 §131④)

-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예비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후 예비투자설명서의 표제부를 투자설명서의 표제부로 교체하여 투자설명서로 사용가능

라. 투자설명서의 기재내용(법 §123②)

□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증권신고서와 동일한 기재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증권신고서와 다른 내용이 표시되거나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어서는 안됨

○ 한편, 예비투자설명서 및 효력발생 전에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며 효력발생일까지는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함(영 §133①, §134①)

3. 일괄신고서

가. 일괄신고서 제도의 개요(법 §119②)

□ 일괄신고서 제도는 같은 종류의 증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회사가 향후 일정기간 동안 발행예정인 증권을 일괄하여 신고하고,

○ 실제 발행시 추가서류의 제출만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도록 하여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를 원활하게 하는 제도

※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자산·영업양수도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일괄신고서를 이용할 수 없고 기재사항을 별도로 정한 합병 등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일괄신고서 제출가능 법인

(1) 일반법인(영 §121④)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일괄신고대상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을 최근 1년간 공모한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자
- 최근 1년간 분기별 업무보고서와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금융투자업자

②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③ 최근 1년 이내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의 발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잘 알려진 기업(WKSI : Well-Known Seasoned Issuers)(영 §121⑥)

□ 일괄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상장된 지 5년이 경과하였을 것

② 최근 사업연도의 최종 매매거래일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원 이상일 것

* 시가총액 계산시 기준가격은 정규매매시간(오후 3시 30분)의 최종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외대량매매시의 거래가격은 고려하지 않음

** 시가총액은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으로만 판단하며, 발행예정기간 중 시가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증권발행이 가능하며 다음 사업연도말 기준 시가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경우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최근 3년간 정기보고서(사업·반기·분기)를 기한내 제출하였을 것

④ 최근 3년간 금융위, 거래소로부터 공시위반 제재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⑤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⑥ 최근 3년간 분식회계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 일괄신고서 제출가능 증권(영 §121)

(1) 일반법인
- 사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및 이익참가부사채 제외)
- 파생결합증권

(2) 잘 알려진 기업(WKSI)
- 주권
- 사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및 이익참가부사채 포함)

※ 잘 알려진 기업(WKSI)도 대상증권 모두를 통합하여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는 없으며 증권의 종류별(주권, 주권관련사채권, 일반사채권)로 각각 일괄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라. 일괄신고서 및 추가서류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 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영 §126①)

-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 담당이사의 서명
- 발행예정기간 및 발행예정금액
- 발행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일괄신고서의 첨부서류(영 §126②)

- 정관, 이사회의사록 사본, 감사보고서 등

□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영 §122②)

-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 담당이사의 서명
-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일괄신고서상의 발행예정기간 및 발행예정금액
- 발행예정기간 중에 이미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
- 모집·매출되는 증권에 대한 인수인의 의견(인수인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일괄신고추가서류의 첨부서류(영 §122④, 규정 §2-4⑤)

- 정관, 이사회의사록 사본, 감사보고서 등

※ 다만 일괄신고서 제출 가능 기업이 사채권(주권 관련 사채권 및 이익참가부사채권 제외)을 발행하기 위해 추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대표이사 등의 서명은 생략가능하며, 이사회가 구체적 범위를 정해 대표이사에게 발행 세부내역을 위임한 경우에는 기제출한 이사회의사록의 재사용이 가능함(영 §122②·④, 규정 §2-4③·⑤) 〈개정 2017.2.23.〉

마. 일괄신고서 제출에 따른 모집·매출 가능 시기

□ 일괄신고서 제출로 모집·매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일괄신고서 자체의 효력발생기간이 경과하여야 하고, 실제 발행을 앞두고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추가서류는 일괄신고서상 신고된 발행예정기간* 중 제출하여야 하므로, 일괄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에만 제출할 수 있음

* 일괄신고서의 발행예정기간은 일반법인의 경우 효력발생일부터 2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잘 알려진 기업(WKSI)의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야 함(영 §121⑥)

○ 한편, 추가서류 자체에는 효력발생기간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추가서류의 제출일 당일부터 청약의 승낙을 개시할 수 있음

바. 일괄신고서의 정정

□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발행예정기간 종료전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예정기간은 정정할 수 없으나, 발행예정금액의 20% 한도이내로 감액되는 정정은 가능함

사. 일괄신고서 제출인의 의무발행 횟수(영 §121③·⑥)

□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발행예정기간 중 3회 이상 그 증권을 발행하여야 함. 다만 잘 알려진 기업(WKSI)의 경우 발행횟수에 제한이 없음

4. 소액공모공시서류

가. 소액공모의 개요(영 §120①)

□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증권의 종류 불문)로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 다만, 투자자가 발행인에 관한 기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발행인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및 공모의 개요 등 최소한의 공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법인구분	제출대상서류	제출기한
설립 후 1사업년도 경과	최근 사업년도의 감사보고서(반기 경과시에는 반기검토보고서 포함) ※ 최근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가 없는 경우 최근월말일의 감사보고서로 갈음 가능	소액공모 실시 3일전까지
설립 후 1사업년도 미경과	최근 월말의 감사보고서	

나. 소액공모공시의 절차

□ 소액공모 개시 3일전* : 감사보고서등의 제출(영 §137①)

* 영업일이 아닌 달력에 표시되는 모든 날 기준으로 3일을 의미(이하 소액공모에 동일하게 적용)

○ 소액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소액공모 개시전에 투자자가 발행인에 관한 기초정보를 알 수 있도록 소액공모 개시 3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함(규정 §2-17①)

※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및 외국정부 등은 동 의무가 면제됨(영 §137①)

○ 법인의 설립경과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감사보고서는 다음과 같음

□ 소액공모의 개시 3일전 : 소액공모 공시서류의 제출

○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개시 3일전까지 청약의 권유방법 및 청약을 권유한 문서 등에 기재한 내용을 표시한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함

□ 소액공모시 청약증거금의 관리

○ 발행인은 반드시 투자매매업자 및 중개업자, 은행, 한국증권금융 중 한 곳과 청약증거금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청약증거금 관리계좌로 청약증거금을 납입받아야 함

□ 소액공모 종료후 : 소액공모 실적보고서 및 결산서류

○ 소액공모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액공모 실적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함(규정 §2-17③)

○ 비상장 소액공모 법인의 경우 투자자들이 해당회사의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결산서류*를 제출해야 함. 다만 소액공모 증권이 상환 완료된 경우 등은 동 의무를 면제(영 §137①)

* 재무상태표와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5. 정정신고서

가. 정정신고서의 개요

□ 정정신고서는 증권신고서에 형식상의 불비가 있거나 기재할 중요한 사항의 재가 불충분한 경우 또는 해당 신고에 의한 청약일 개시 전에 기재사항에 경이 있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신고서임

○ 정정신고서에는 그 제출사유 및 정정사항을 기재하고, 정정사유를 증명할 있는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해야 함

나. 정정신고서 제출 사유(영 §130, 규정 §2-13)

□ 법규에 의한 정정신고서 제출 의무

○ 증권신고에 의한 청약일 개시 전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에 중요한 경이 있거나 투자자보호를 위해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신고서 기재사항 중 중요한 사항(발행관련)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 발행가액 또는 발행이율 등 발행조건
- ○ 배정기준일, 청약기간 또는 납입기일
- ○ 자금의 사용목적
- ○ 인수기관, 보증기관 또는 수탁회사
- ○ 증권발행과 관련된 담보·보증 또는 기초자산
- ○ 발행증권의 수
- ○ 모집·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2)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증권신고서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그 증권신고서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 발행인에게 불리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유리한 정보만을 강조하는 등과장되게 표현된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집합투자증권 제외)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가 확정된 때
- 발행인의 사업목적이 변경된 때
- 영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계약이 체결된 때
- 발행인의 경영이나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의 당사자가 된 때
- 발행한 어음·수표의 부도,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 영업활동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가 정지된 때
-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은 때
-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 회사의 자발적인 정정신고서 제출(법 §122③)

○ 증권신고서(일괄신고추가서류 포함)에 기재된 청약일 전일까지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 회사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금융위의 정정요구에 의한 정정신고서 제출(법 §122①)

○ 금융위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또는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에는 청약일 전일까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정정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다. 정정신고서 제출에 따른 효과

□ 금융위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증권신고서는 그 요구를 한 날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법 §122②)

○ 따라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기 전까지는 모집·매출을 할 수 없음

□ 한편, 정정신고서가 제출되면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해당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됨(법 §122⑤)

○ 따라서 효력발생기간도 원칙적으로 정정신고서(회사의 자발적인 정정신고서 포함)가 수리된 날부터 다시 기산됨에 유의

□ 반면, 금융위의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증권신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됨(법 §122⑥, 영 §130⑤)

라. 정정신고서 제출시 효력발생기간(규칙 §12, 규정 §2-3, §2-12)

□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의 경우 정정신고서 수리일부터 효력발생기간을 다시 기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예외적인 경우 효력발생기간이 다시 기산되지 않거나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다만 당초 효력발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정정신고서가 수리되어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 효력발생기간이 적용됨

※ 일괄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의 경우에도 정정신고서 수리후 3일 경과시 효력이 발생하되, 당초 일괄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정정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 일괄신고서의 효력발생일이 적용됨

※ 정정신고서 효력발생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산정

<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 >

정정신고서 제출사유	효력발생일
모집가액, 매출가액, 발행이자율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의 변경	정정신고서 수리일부터 3일
경과일	단, 당초 효력발생일이 그 이후인 경우에는 당초 효력발생일
사채거래수익률 등의 변동으로 인한 발행가액 변경 또는 발행이자율 변경을 위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정신고서 수리일의 다음날
파생결합증권의 지급금액 결정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정정신고서 수리일부터 3일(공휴일 불포함) 경과일
발행가액이나 발행이율 등의 산정방법을 기재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확정되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초 효력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상장을 위한 경우로서 공모주식수를 예정 공모주식수의 80~120%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초과배정옵션계약을 추가체결하거나 초과배정수량을 변경하는 경우	
공개매수의 대가로 교부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발행예정 주식수가 변경되는 경우	
채권 발행총액을 기존 증권신고서상 금액의 80%~120% 수준에서 변경하는 경우	
사소한 문구수정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당초 효력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판단기준

○ 증권신고서의 정정신고서가 제출되는 경우 당초의 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새로이 일정기간이 경과하여야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바, 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숙고기간을 주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당초 효력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기재내용을 정정 또는 변경하여도 투자판단에 영향이 없는 사항을 의미함

- 자구의 수정, 오자 또는 탈자, 단순한 비율계산의 오류 등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함

※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모집·매출일정의 변경, 중요한 수치의 기재오류, 영업의 위험에 관한 사항 등은 투자판단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 분류되므로 효력발생에 영향을 미침

Ⅲ. 증권의 발행가액 산정 등

1. 유상증자

가. 발행가액의 산정방법(법 §165의6, §165의8, 영 §176의8, §176의10, 규정§5-15조의2, §5-18) ☞ Q&A 2-26, 27, 28 참조

□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방법은 증자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음(액면가액 이상 발행시에만 해당)

① 주주배정증자 : 발행가액 자율 결정

② 제3자배정증자 : 기준주가에 10% 할인된 가격 이상

③ 일반공모증자(주주우선공모증자 포함) : 기준주가에 30% 할인된 가격 이상

- 예외적으로 실권주를 발행하는 경우 법 §165조의6①항 1호는 기준주가에 40%, 2호는 기준주가에 10%, 3호는 기준주가에 30% 할인된 가격 이상

※ 다만 액면가액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발행가액은 시행령의 기준주가 및 할인율(30%)을 적용하여 결정함*(영 §176의10)

*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①,②,③ 중 높은 가격의 70% 이상(①과거 1개월간 종가의 산술평균, ②과거 1주일간 종가의 산술평균, ③기산일 종가)

구 분	제3자배정증자		일반공모증자	주주배정증자
	일반	증자후 1년간 예탁시 다음의 방법도 가능		
기산일	청약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	이사회결의일 전일	청약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	발행가액 자율결정
기준주가	-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 / 총 거래량)	- ①② 중 낮은가액 ①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가중산술평균주가 (총 거래금액 / 총거래량)	
발행가액	기준주가×(1-할인율)	기준주가×(1-할인율)	기준주가×(1-할인율)	
할인율	10%이내	10%이내	30%이내	

※ 3자배정, 일반공모시 거래정지 등으로 발행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규정 5-18③)

나. 기산일부터 소급한 과거 일정기간의 계산방법

□ 1주일 또는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계산하는 경우 기산일을 포함하여 달력기준으로 1주일 또는 1개월을 소급하여 계산함

다. 가중산술평균주가의 계산(1주일 가중산술평균, 1개월 가중산술평균 등)

□ 가중산술평균주가는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정

$$\text{가중산술평균주가} = \frac{\Sigma\text{일별 거래대금}}{\Sigma\text{일별 거래량}}$$

2.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 Q&A 2-32, 33, 34 참조

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규정 §5-15의4, §5-22, §5-23, §5-23의2, §5-24, §5-25)

□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전환사채 등')를 발행할 경우 그 전환 또는 행사가액(이하 '전환가액 등')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된 아래 3가지 시가 중 높은 가액 이상이어야 함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의 산술평균, ②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청약일전 제3거래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3거래일에 해당하는 날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정

○ 다만 전환사채 등을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3가지 시가 중 '낮은 가액' 이상으로 발행할 수 있음

□ 이는 시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전환가액 등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여 회사 및 기존 주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전환가액 등에 대한 최소 한도만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 회사는 반드시 상기 3가지 시가 중 높은 가액(일반공모방식의 경우 낮은 가액)으로만 전환가액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장에서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그 이상으로 전환가액 등을 정할 수 있음

< 주권상장법인의 분리형BW 공모발행 허용 >

1. 분리형 BW의 의의

◦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상법 §516의2)

2. 주권상장법인의 분리형 BW 발행제한

◦ 대주주에 의한 편법적 지분승계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3.5월 주권상장법인의 분리형 BW의 발행을 전면 금지

3. 주권상장법인의 분리형 BW 공모발행 재허용

◦ '15.7월 자본시장법 개정시 중소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우량한 비상장 기업들의 상장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주주에 의한 편법적 이용가능성이 낮은 모집방법에 의한 분리형 BW 발행을 허용

◦ 한편, 분리형 BW가 특정인에게 사실상 사모로 발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리형 BW는 간주모집제도 적용 배제(영 §11③)

나.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등 조정 관련

□ 전환가액 등을 하향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전환사채 등 발행을 위한 이사회에서 증자·주식배당(Adjustment) 또는 시가변동(Refixing) 등 조정하고자 하는 각 사유별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의 기준이 되는 조정일, 구체적인 조정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함

○ 정해진 조정사유는 증권신고서 등에 기재하여 공시해야 함

□ 감자·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자·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발행하여야 함

다. 주식가치 하락사유 발생시 전환가액 등의 하향조정 ☞ Q&A 2-29 참조

□ 기업가치 희석화 등에 따른 전환가액 등의 조정(Adjustment)의 경우

○ 전환사채 등 발행 후 발행회사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 등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의 실질가치는 하락하게 되므로 이러한 전환권의 희석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환가액 등을 조정 할 수 있음

□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등의 하향조정(Refixing)

○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등의 하향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미리 전환사채 등 발행을 위한 이사회에서 조정관련 내용을 정하여야 하고,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다음 ①, ②의 가액 이상이어야 함

① 발행당시 전환가액 등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 등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전환가액 등을 기준으로 함
- 다만 최저조정가액*, 최저조정가액을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 등 발행사유·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거나 정관의 규정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70%미만의 최저조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 정관 규정으로 조정 후 전환가액 등의 최저한도를 정한 경우

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규정 §5-22*에 따라 산정한 시가

*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산술평균,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일반공모 방식의 경우 낮은 가액)

라. 주식가치 상승사유 발생시 전환가액 등의 상향조정

□ 감자·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 발생시 동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발행하여야 함

○ 다만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환사채 등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과 해당 사채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최저조정가액 이상으로 상향조정 가능

※ 적용사례

(사례) 주권상장법인이 기발행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시가하락을 사유로 조정하려고 하는바, 현 시점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변경을 통해 정관규정으로 최저조정가액을 정할 경우에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가?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①이사회 결의 요건과 ②정관 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므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등에서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발행된 전환사채에 대하여 사후에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에 유의

< 제3자배정 사모증자·CB발행 시 발행·전환가액 산정 관련 유의사항 >

▪ 사모증자 및 CB발행 결정 사실을 공시한 이후 '제3자 배정자를 변경'하거나, '발행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발행가액 및 전환가액 산정 기산일을 다음과 같이 산정함

구 분		제3자배정 사모증자	제3자배정 CB발행
제3자배정자 변경		최초 이사회일 전일 또는 정정 이사회 결의일 전일(발행가액 유지 또는 재산정 가능)	정정 이사회 결의일 전일(전환가액 재산정)
발행금액 증 액	기존부분		
	증액부분	정정 이사회 결의일 전일(발행가액 재산정)	

3. 무보증사채 발행금리 결정

가. 수요예측을 통한 발행금리 결정(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12①)

□ 무보증사채의 공모금리는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절차의 생략이 가능함

○ 공모예정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 전환사채, 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영 제121조에 따라 무보증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일괄신고서를 통한 발행)
○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 공모예정금액의 전부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나. 희망공모금리 및 최종 발행금리 결정과정의 공시(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2-1-3)

□ 희망공모금리 결정근거

○ 민간채권평가사(2개사 이상) 평가금리, 최근 동일 신용등급 회사채의 평가금리, 동일 업종 회사채의 발행금리·평가금리 동향 및 동 금리를 희망금리구간 설정에 반영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 발행회사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희망금리구간의 최고금리를 2개 이상의 민간채권평가사 평가금리의 평균보다 낮게 설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와 논거를 상세히 기술함
○ 희망공모금리구간을 20bp 미만으로 제시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와 논거를 상세히 기재함

□ 수요예측 실시내용 및 최종 발행금리 결정과정

○ 기관투자자 그룹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0.01% 단위로 기재), 유효수요의 범위·판단기준·판단근거, 공모가격 결정에 반영한 구체적 내용 등을 기재함 <개정 2016.12.23.>

Ⅳ. ABS 발행

1. 자산유동화의 개요

가. 개념

□ 자산유동화란 유동화전문회사(SPC) 또는 신탁업자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 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함

◦ 자산을 묶어(Pooling) 이를 기초로 유동성이 높은 증권을 발행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자산유동화(資産流動化: Asset Securitization)"라고 번역함

나. 자산유동화의 기본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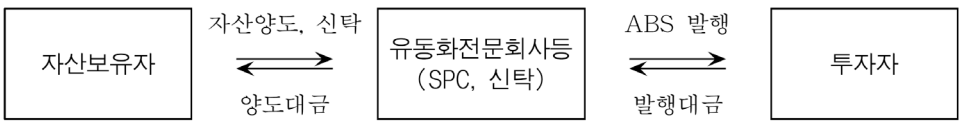

다. 일반적인 담보제도와의 차이점

□ 담보제도와 비교할 때 보유자산을 이용한 자금조달수단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담보제도는 자산보유자가 자산을 담보(질권, 저당권 등)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반면, 자산유동화는 자산 자체를 양도하고 이를 기초로 ABS를 발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구 분	일반 담보(질권, 저당권 등) 설정	자산유동화
회계처리	담보제공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불필요	유동화자산에 대한 매각회계처리 가능
채무자의 파산	채권의 조기상환 위험 존재	자산보유자의 파산과 무관
발행형태	다양한 형태의 채권발행 곤란	다양한 형태의 ABS 발행가능
양도	채권양도시 별도의 담보권이전 필요	ABS 양도시 담보권 이전절차 불필요

라. 진정한 양도(True Sale)

□ 유동화대상이 되는 자산을 자산보유자로부터 분리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매각하는 것이 자산유동화의 본질적 특징에 해당하므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양도할 자산은 진정한 양도(True Sale)에 해당되어야 함

□ 즉, 유동화자산의 양도가 진정한 양도가 아닌 담보권의 설정 등으로 해석되어 자산보유자의 파산시 파산재단에 편입되어서는 안 됨

※ 자산유동화법(ABS법)상 진정한 양도(true sale)의 요건(§13)

◦ 자산유동화는 자산보유자의 신용도와 분리하여 유동화되는 자산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므로 자산보유자와 유동화자산 간의 법률적 분리가 중요한 바,

- 현행 ABS법에서는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자산의 양도시 다음의 방식으로 하도록 의무화하여 자산보유자와 유동화자산 간의 분리를 명확히 규정

①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

② 자산의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소유(양도인의 우선매수권 인정)
③ 양도인의 자산반환청구권 부존재 및 양수인의 대가반환청구권 부존재
④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양수인이 인수할 것(양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자 자력담보 일부 인정)

마. 자산유동화제도의 도입배경

□ 자산유동화는 민법 등의 채권양도절차 등에 따라 누구나 자유로이 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절차에 따를 경우 실무상 번잡하고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자산유동화가 곤란하였음

□ 특히,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처리 및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정부는 자산유동화를 통한 유동성 확보 및 대규모 부실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상환 등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었음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98.9.16.시행)하여 자산유동화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 채권양도의 특례, 저당권 등의 취득 특례 등을 도입함으로써 자산유동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됨
○ 따라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태생적으로 규제법이 아닌 지원법적 성격을 띠게 됨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에 유동화전문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에 대한 세금감면규정 등을 신설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바. 자산유동화관련 법령현황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ABS법)
○ 제정일 : 1998. 9. 16.
○ 동법에 따라 자산보유자 적격요건을 갖춘 자는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정일 : 2003. 12. 31.
○ 한국주택금융공사(KHFC)의 설립 근거법
○ 동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MBS 및 MBB를 발행하고 학자금 대출채권을 기초로 SLBS를 발행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의 자산유동화 제도

가. ABS 구조도

□ 자산유동화의 기본구조는 다음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회사채에 비해 절차면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며 이해당사자 면에서도 여러 주체들이 관련되어 있음

□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은 ① 유동화계획의 등록 ② 자산의 양도 ③ 자산양도의 등록 ④ 유동화증권의 발행 ⑤ 대금지급의 순서로 진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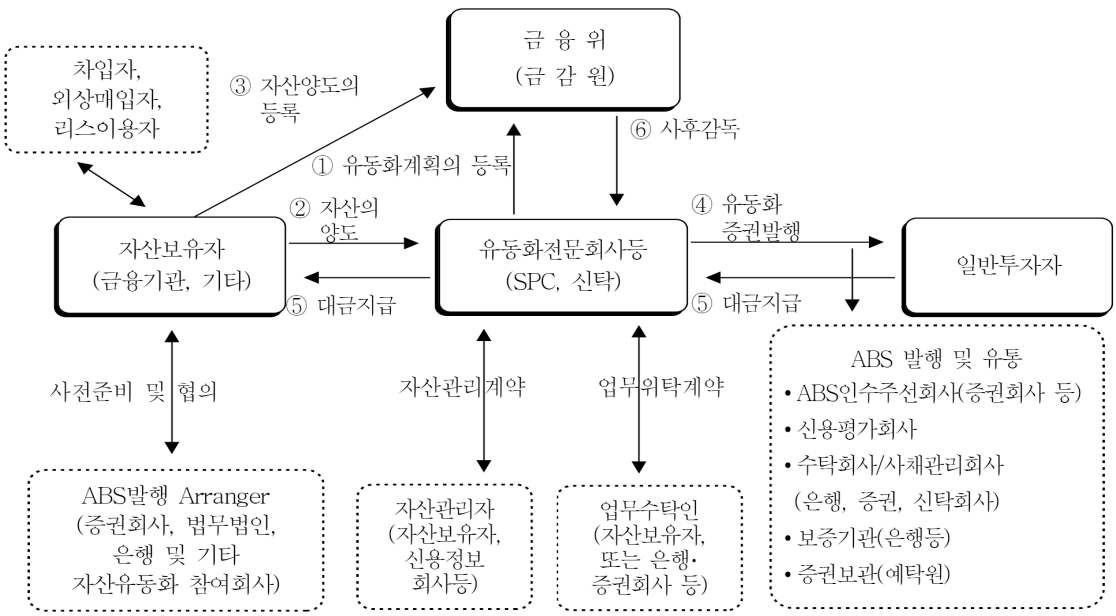

나. 자산유동화의 참여자

□ 자산보유자(originator)

○ 자산유동화의 기초가 되는 자산을 보유한 자를 말하며, 금융기관 등과 금융위가 인정하는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등으로 한정됨(ABS법 시행령 §2 및 ABS규정 §2)

- 은행, 종합금융회사, 보험사업자,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자 등 공공법인
- 주권상장법인
-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탁회사,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지방공기업 등

□ 유동화자산

○ 법규상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산은 채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재산권이 유동화대상이 됨

□ 유동화전문회사등

○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한 매개체로 이용되는 특별목적기구(SPV : Special Purpose Vehicle)로서 유동화전문회사(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paper company),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회사(은행신탁포함), 자산유동화전업 외국법인(통상 paper company) 등 세 가지가 있음

○ 유동화전문회사

- 회사의 형태 : 상법상 유한회사

  * SPC를 유한회사로 한 이유는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보다 설립절차, 기관구성 등이 간단하며 규제가 완화되어 있어 paper company인 SPC에 어울리기 때문임

- 사원의 수 : 1인 이상이면 되고 ABS법 및 상법상 사원의 수에 대한 제한은 없음(다만, 상법상 유한회사의 지분공모금지 규정은 준용됨)

- 사원총회 : 사원총회의 결의는 총사원의 동의 없이도 서면으로 할 수 있고(서면결의 원칙), 결의내용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반하거나 유동화증권을 소지한 자의 권리를 해하는 경우는 그 효력이 없음

- 업무범위 : paper company로서 ABS법상 유동화계획의 수행에 관련된 다음의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음

▪ 유동화자산의 양수·양도 또는 다른 신탁회사에 위탁
▪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
▪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 자산유동화 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 여유자금의 투자

- 업무의 위탁 : 그 성격상 위임이 불가능한 사원총회 의결사항, 회사대표권에 관한 사항 등 고유업무를 제외한 업무에 대해서는 자산보유자 또는 제3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여야 함

□ 자산관리자(servicer) 및 업무수탁인(administrator)

○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수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전문회사는 직원이 없는 명목상의 paper company이거나 단순한 수탁회사에 불과하므로 유동화전문회사 사무를 수행할 업무수탁인이 필요함(ABS법 §23)

○ 유동화전문회사(SPC)의 경우 자산보유자, 신용정보업자 또는 전문자산관리자(AMC ; Asset

Management Company)에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반드시 위탁하여야 함(ABS법 §10) ☞ Q&A 2-43 참조

□ 수탁회사/사채관리회사(trustee)

○ 투자자를 대신하여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등을 감시(monitoring)하고 유동화자산에서 회수된 금전 등의 관리 및 여유자금의 운용 등을 담당하여 유동화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투자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도록 하는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함

* 상법 개정('12.4.15.시행)에 따라 사채모집수탁회사의 권한 중 사채관리업무를 사채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음. 다만, 사채모집 및 발행에 참여한 인수인은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음(상법 §480조의2)

3.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절차

가. 자산유동화 계획의 등록 등

□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위에 사전등록(계획변경시에도 등록)

- 신탁회사를 제외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등록할 수 있는 자산 유동화계획은 1개로 제한하고 있음(ABS법 §3②)
- 금융위는 등록신청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유동화계획에 법령위반사항 등이 있을 경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ABS법 §5)

□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ABS규정 §4)

- 등록인에 관한 사항
- 자산보유자에 관한 사항
- 유동화자산에 관한 사항
- 자산유동화계획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첨부서류

※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ABS규정 §5)

1.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정관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2. 자산관리위탁계약서
3. 업무위탁계약서
4.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5. 자산보유자에 대한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 변경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등(ABS규정 §6)
-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등록신청서에 관한 사항
- 변경등록 신청사유
- 변경전후의 내용
- 외부평가기관의 당해 변경에 대한 의견
-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유동화계획의 등록 또는 등록거부의 통보 등(ABS규정 §7) ☞ Q&A 2-48 참조
○ 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변경등록신청 포함)에 대하여 금융위가 이를 거부하거나 내용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10영업일 : 초일불산입, 말일 산입으로 계산(토, 일, 공휴일 제외)
○ 거부, 내용변경, 보완 요구 등이 없으면 제출일에 등록된 것으로 봄

나. 자산양도의 등록

□ 자산양도의 등록
○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신탁 또는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이 된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위에 이를 등록하여야 함(ABS법 §6)

□ 자산양도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자산양도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ABS규정 §9)
- 양도 등의 개요
- 양도 등 대상자산의 종류별 세부명세
- 양도 등의 방법
- 양도 등의 계약상의 특수한 내용
-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구비여부
- 양도 등에 대하여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 그 법률상 특별효력의 내용
- 증빙서류 등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자산양도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본](ABS규정 §10)

1. 자산양도 계약서 등
2. ABS법 제8조의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다음의 증빙서류 등에 대한 전자기록함
   - 당해 유동화자산과 관련된 채권계약서
   -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서 및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
   - 부동산에 대한 등기필증 기타 관련 증빙서류
3. 자산실사보고서
   * 자산실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계약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서 및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 부동산에 대한 등기필증 기타 관련증빙서류의 원본을 제시받아 확인을 하고 이를 반환하여야 함

다.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발행

□ 발행한도 및 관련규정 등 ☞ Q&A 2-39 참조

○ 유동화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평가가액 총액 범위 내에서 발행 가능함(ABS 법 §33)

○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유동화증권을 공모로 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이 적용됨

4. ABS법에 따른 자산유동화에 대한 특례

가. ABS법상의 특례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ABS법 §7①)

- 일반적인 채권양도는 채권의 양도인이 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양도사실을 승낙하여야만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양도는 양도인뿐만 아니라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고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ABS법 §7②)

-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위에 채권의 양도를 등록한 때에는 당해 채권의 채무자(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양도인 경우 그 유동화자산을 점유하고 있는 제3자를 포함) 외의 제3자에 대하여 당해 등록이 있은 때에 민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함

□ 근저당권부채권의 확정절차 간소화(ABS법 §7의2)

○ 자산보유자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정하여 추가로 채권을 발생시키지 않고 그 채권의 전부를 양도 또는 신탁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채무자가 1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통지서를 발송한 다음날에 당해 근저당권부 채권이 확정되는 것으로 함

□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 저당권(질권) 취득에 관한 특례(ABS법 §8①)

-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한 채권이 저당권 또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 자산양도의 내용을 금융위에 등록하는 때에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그 저당권 또는 질권을 취득한 것으로 함

○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동산의 양도등록만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가짐(ABS법 §8②)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 면제

○ 유동화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됨(ABS법 §36의2)

나. 세법상의 특례

□ 법인세법 기타 세법상의 특례

○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유동화전문회사(외국법인 제외)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 전액이 당해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됨으로 사실상 법인세 비과세 특례혜택이 부여됨(법인세법§51의2①1호)

○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부가가치세법 §12①11호, 동법시행령 §33①)

제 3 장 지분공시

▣ 2020년도 중 지분공시 관련 서식 개정사항

1. 5%보고 약식서식에 “단순투자 목적이 아닌 경우 추가 보고내용” 추가

□ `20.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주식등의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라 하더라도 ‘단순투자 목적’ 이 아닌 경우 주요계약 내용 및 자금등 조성 내역을 기재하여야 함에 따라 “제4부 단순투자 목적이 아닌 경우 추가 보고내용” 단위서식 신설

2. 5%보고 보고자 ·특별관계자의 최대주주가 법인 ·단체인 경우 최대주주에 관한 정보를 추가 기재

□ 법인 ·단체에 해당하는 보고자 ·특별관계자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면서 보고자 ·특별관계자의 최대주주 또한 법인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자 ·특별관계자의 최대주주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단위서식 신설

3. 5%보고 보고자가 민법상 조합인 경우 개별 조합원이 연명보고

□ 보고자가 개별 법령상 설립 근거가 없는 민법상 조합인 경우 5%보고서상 개별 조합원이 특별관계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 강화

4. 5%보고서상 주요계약이 담보계약인 경우 담보유지비율 등 반대매매 예측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기재

□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이 담보계약인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반대매매 등 주식등 이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출금액, 채무자, 이자율, 담보유지비율 등 담보계약의 주요내용을 기재

5. 참고서류에 임원 후보자 및 임원 보수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 `20.1월 증발공 규정 개정에 따라 참고서류에 주주총회 목적사항이 임원 선임인 경우 후보자 세부 경력사항, 직무 수행계획, 이사회 추천 사유 등을 기재하고, 임원 보수한도 승인인 경우 전년도 지급된 임원 보수 총액 정보를 기재

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제도(5% 보고)

1. 제도의 의의 및 개요

□ 의의

○ 투자자 및 경영권 경쟁자에게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대량보유한 자에 대해 그 보유상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 개요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또는 보유목적이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영업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및 변동·변경내용을 금융위(금감원)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

2. 보고의 종류 및 기준

□ 보고의 종류

① 신규 보고(법 §147①)

○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권상장법인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등의 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 (예시) 주식등을 4.99% 보유하는 주주가 추가 취득으로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 보유 상황(보유형태를 포함), 보유 목적(발행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신탁, 담보, 대차계약 등) 등을 보고

② 변동 보고(법 §147①)

○ 기존 보고자의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발행 주식등의 총수의 1% 이상 변동한 경우

※ (예시) 5.5% 보유자가 추가로 지분을 취득하여 보유비율이 6.5%가 되는 경우 등

- 한편, 5.5% 보유자가 당해지분을 처분하여 보유비율이 4.5% 이하가 되는 경우에도 보고의무가 발생(단, 1% 미만의 변동을 보고한 경우, 예컨대 0.6%를 처분하여 4.9%가 된 시점에 보고한 경우에는 추가 보고 불필요)

○ 보고의무가 발생하여 보고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운 변동보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의 대량보유상황, 보유목적 또는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새로 보고해야 할 변동내용은 함께 보고하여야 함(법 §147③)

※ (예시) 2016.3.4(금) 보고의무가 발생하여 보고기한이 2016.3.11(금)인 경우, 2016.3.8.(화)에 1% 이상 추가 취득 등으로 새로 변동보고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당초의 보고기한(3.11)에 3.8.(화)의 추가 취득분까지 함께 보고하여야 함

③ 변경 보고(법 §147④, 영 §155)

○ 보유목적(단순투자목적, 일반투자목적, 경영참가목적),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보유형태(보유 ↔ 소유에 한함)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보유목적을 변경한 경우

- 단순투자목적, 일반투자목적,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상호간에 변경이 생긴 경우 보유목적 변경 보고의무가 발생함

○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을 체결·변경한 경우(단순투자목적 제외)

- 보유주식등에 대한 신탁·담보·대차계약 등 주요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 자본시장법은 새로이 보고의무를 부과(영 §155, 해당계약의 대상인 주식 등의 수가 그 주식등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인 경우만 해당)

  * [판단기준] 보유주식등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ex) 대차계약(○), 보호예수계약(×), 주식등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가 그 주식등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하는 교환사채(○)

  ※ 주요계약을 체결하여 신규 또는 변동보고일 현재 그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 보고시마다 이를 기재하여야 함(다만, 해당 주요계약에 관한 증빙자료인 계약서 사본 등은 체결 이후 최초 보고시에 첨부하고 이후 보고시에는 생략 가능)

○ 주식등의 보유형태가 변경된 경우(경영참가목적인 경우에 한함)

- 주식등의 보유형태가 보유에서 소유로 변경되거나 소유에서 보유로 변경된 경우 자본시장법은 새로이 보고의무를 부과(영 §155, 그 보유 형태가 변경되는 주식등의 수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인 경우만 해당)

  ※ (예시) 주식을 대여해 주어 보유형태가 소유에서 보유(인도청구권)로 변경되거나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보유형태가 보유에서 소유로 변경된 경우

□ 보고의 기준

① 변동보고의무 면제(법 §147①, 영 §153⑤)

○ 다음의 경우에는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되어도 변동보고 의무가 면제됨. 다만 변동보고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신규보고의무*는 면제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함

  * (예시) 전환사채의 행사가격 조정으로 4.9%에서 5.1%가 되는 경우 신규보고의무가 발생함

  i)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배정하는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그 배정된 주식만을 취득하는 경우

  ii)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배정받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취득하는 것만으로 보유 주식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iii) 삭제(시행일 2017.3.31)

  iv) 자본감소로 보유 주식등의 비율이 변동된 경우

  v)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신주인수권증서는 제외), 신주인수권부사채권·전환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에 주어진 권리행사로 발행 또는 교환되는 주식등의 발행가격 또는 교환가격 조정만으로 보유 주식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예시) 본인 및 특별관계자가 전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를 5% 이상 보유하였으나, 행사가등의 조정으로 인해 보유 주식등의 수가 증가하여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 위 각호 이외에도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 (예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으로 본인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는 변동이 없으나, 발행주식등 총수의 변동으로 인해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 면제사유에 의해 보유비율이 1%p 이상 변동되는 시점에서는 보고의무가 면제되나 그 이후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추가 취득·처분으로 인해 직전 보고 대비 보유비율이 1%p 이상 변동(면제사유 해당분 포함)되는 시점에서는 변동보고의무가 발생*함에 유의

* (예시) 직전 5.1% 보유비율을 보고한 자의 보유비율이 ①2.28 장내매수로 인해 0.5%p 증가 (5.1% → 5.6%), ②3.18 면제사유로 인해 0.7%p 증가(5.6% → 6.3%), ③4.3 장외매수로 인해 0.3%p 증가(6.3% → 6.6%) 한 경우
  - ① 2.28 : 직전 보고 대비 1%p 미만 변동(0.5%p; 5.1% → 5.6%)되었으므로 변동보고의무 없음
  - ② 3.18 : 직전 보고 대비 1%p 이상 변동(1.2%p; 5.1%→ 6.3%)되었으나 3.18의 변동은 면제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변동보고의무 없음
  - ③ 4. 3 : 직전 보고 대비 1%p 이상 변동(1.5%p; 5.1%→ 6.6%)되었고 4.3 장외매수 거래가 보고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동보고의무발생 (변동보고시 보고 면제사유로 인한 변동내역 등을 포함한 직전보고 이후 변동내역을 세부변동내역에 모두 기재)

② "주식등"의 범위(영 §139)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아래의 증권

ⅰ) 주권(보통주, 의결권 있는 우선주, 의결권이 부활된 무의결권우선주, 보통주로 전환가능한 전환우선주)

ⅱ)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

ⅲ) 전환사채권(전환대상이 위의 주권인 전환사채)

ⅳ)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대상이 위의 주권인 신주인수권부사채. 단,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이후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제외)

ⅴ) ⅰ)부터 ⅳ)까지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ⅵ) ⅰ)부터 ⅴ)까지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권리의 행사로 그 기초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만 해당)

○ 주권상장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증권으로서 아래의 증권

ⅰ) 상기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DR)

ⅱ) 상기 증권이나 ⅰ)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ⅲ) 상기 증권이나 ⅰ)·ⅱ)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권리의 행사로 그 기초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만 해당)

※ 권리행사에 따라 기초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액을 현금결제하는 주식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는 보고대상 "주식등"이 아님에 유의

③ 소유개념의 확장(소유에 준하는 보유, 영 §142)

○ 당해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에 준하는 보유'로서 소유와 동일하게 보고의무를 부여

ⅰ)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예시) 차명으로 소유하는 경우 등

ⅱ) 법률의 규정, 매매 등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갖는 경우*

* (예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행기가 미도래한 경우 등

ⅲ) 법률의 규정 또는 금전의 신탁계약·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 포함)을 갖는 경우

ⅳ) 법률의 규정 또는 금전의 신탁계약·담보계약·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예시)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Mutual Fund 등의 자산운용회사로서 자산운용권한을 가지는 경우 등

ⅴ)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당해 매매를 완결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갖는 경우*

* (예시) 매수에 관한 예약 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등(종국적인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보유'로 본다는 것이 아니고, 권리의 종국적 행사 이전에 그와 같은 권리의 취득 자체가 '보유'에 해당됨〈2002도1696 판결〉)

ⅵ)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법 §5①ii)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는 경우로서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예시) 매수포지션(Call-option)을 가지는 경우 등

ⅶ)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예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 또는 자기주식을 교부받거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에 해당되는 자기주식을 교부받기로 한 경우 등

-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식 중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식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유지분 산정에서 제외

④ 특별관계자의 범위

※ 본인이 직접 보유하는 지분 외에도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 등 특별관계자(영 §141)의 보유지분을 합산하여 보고

<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

○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등은 특수관계인에서 제외, 업무집행책임자는 임원에서 제외)

ⅰ)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ⅱ) 6촌 이내의 혈족(민법 §768, 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의미)

iii) 4촌 이내의 인척(민법 §769,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의미)
iv) 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v)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vi)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vii) 본인의 금전 기타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자
viii) 본인 단독으로 또는 i)부터 vii)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명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단체 및 그 임원
ix) 본인 단독으로 또는 i)부터 viii)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단체와 그 임원

○ 본인이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업무집행책임자는 임원에서 제외)
i) 당해 법인의 임원
※ 사실상 임원은 특수관계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공동보유자에 해당할 가능성
ii) 당해 법인의 계열회사 및 그 임원
iii)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당해 법인에게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 등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특수관계인 포함) 또는 법인(계열회사를 제외), 단체와 그 임원
iv)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i)부터 iii)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단체와 그 임원

○ 본인이 은행,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i) 은행 :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인
ii) 금융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영 §141③) >

○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등의 수가 1,000주 미만이거나 공동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보유지분 합산시 배제할 수 있음

동일인이 출자한 회사들의 보고의무 발생 예시

□ 甲이 30% 이상 출자한 A, B, C 3개 회사가 상장회사인 X사의 주식을 각각 3%씩 매수하여 보유한 경우(甲은 X사의 주식등을 보유하지 않음)
◦ 甲과 A사, B사, C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므로 甲과의 관계에 의하여 A사, B사, C사도 특별관계자에 해당
◦ 이들의 합산 주식 등의 수가 5% 이상이므로 A사, B사, C사 중 1인을 대표보고자로 선정하고 나머지는 연명으로 보고

< 공동보유자(영 §141②) >

○ 본인과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아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

* 합의나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 등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충분

ⅰ)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ⅱ)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

ⅲ)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 포함)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공동보유관계로 인한 보고의무 발생 예시

□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 A사와 B사가 상장회사인 X사의 주식을 각각 3%와 4%씩 보유한 상태에서 연합하여 X사의 경영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 A사와 B사가 공동으로 X사의 경영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 A와 B는 공동보유자에 해당

◦ A사와 B사의 주식 등 보유 비율의 합계가 5% 이상이므로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A사와 B사 중 주식수가 가장 많은 B사를 대표보고자로 선정하고, 나머지 A사는 연명으로 보고

◦ A사와 B사간의 공동보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대표보고자 B사는 A사와의 특별관계 해소를 사유로 변동보고를 하여야 하며, 변동보고 이후부터 A사와 B사 모두 보고의무가 없음

⑤ 보유비율의 계산(시행규칙 §17)

○ 보유비율 산정산식

$$\frac{\text{본인*보유 주식등의 수}}{\text{발행 주식등의 총수}} = \frac{\text{본인보유 주식+본인보유 주식관련사채등}}{\text{발행 주식총수+본인보유 주식관련사채등(교환사채등 제외)}}$$

* 여기서 '본인'이라 함은 보고자 본인 및 특별관계자를 포함하는 의미임

○ 발행 주식등의 총수(분모)는 발행 주식총수와 본인보유 주식관련사채등을 합산하며, 발행 주식총수에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모두 합산

- 발행 주식등의 총수 : 발행 주식총수 + 본인보유 주식관련사채등
  - 발행 주식총수 : 보통주, 의결권이 부활된 무의결권 우선주, 의결권 있는 우선주의 합계
    *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계산(규칙§17②) 〈2017.3.31 개정〉
  - 본인보유 주식관련사채등 : 본인 및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신주인수권증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매수선택권(주식교부방식에 한함) 등
- 교환사채,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권리행사시 발행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 등은 발행주식총수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모 계산시 별도로 가산하지 않음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분모에 발행예정 주식수를 가산함

○ 본인보유 주식등의 수(분자)는 본인 및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주식관련사채, 주식매수선택권등을 합산

- 본인보유 주식등의 수 : 본인 및 특별관계자 보유 주식 + 본인 및 특별관계자 보유 주식관련사채등

• 본인보유 주식관련사채등 : 본인 및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신주인수권증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증권예탁증권등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교부받게 될 주식의 총수를 포함

3. 보고 의무자

□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의 합산 보유비율이 발행 주식등의 총수의 5% 이상인 경우 그 본인(법 §147)

○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함께 보고하는 경우 보유 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로 보고할 수 있음(영 §153④) ☞ Q&A 3-09 참조

※ 주식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 의무자는 본인 또는 그 특별관계자가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소유상황 보고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보고대상인 경우 별도로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를 하여야 함

※ 실제 보고의무자의 결정

□ A, B, C가 상호 특별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A, B, C 모두가 본인의 입장에서 보고의무자에 해당

◦ 그 중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자가 나머지 보고의무자의 위임장을 받아 연명하여 대표로 보고할 수 있고, 연명 보고하는 경우 다른 보고의무자는 따로 보고할 필요가 없음

□ 종전 보고의무가 면제되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기금 등도 보고의무자로 편입됨(영 §154②)

4. 보고방법

□ 보고의무 발생일(영 §153③)

○ 신규보고 또는 변동보고의 경우
  -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상장일
  - 흡수합병인 경우에는 합병을 한 날(합병등기일), 신설합병인 경우에는 그 상장일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일
    ※ 종전 결제일에서 계약 체결일로 변경된 점에 유의. 다만, 임원·주요주주 보고는 결제일(체결일+2영업일)임
  - 증권시장 외에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일
  - 증권시장 외에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받는 날과 주식등을 인도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 유상증자로 배정되는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금 납입일의 다음날

- 주식등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계약을 체결하는 날,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을 인도하는 날
- 주식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효력발생일,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을 인도하는 날
- 상속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1인인 경우에는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에 따라 상속이 확정되는 날,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식등과 관계되는 재산분할이 종료되는 날
- 그외의 사유로 인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민법」·「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법률행위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 변경보고의 경우 : 보고사유 발생일(보유목적·보유형태가 변경된 날, 주요계약체결·변경일 등)

※ 장외매매시 보고 기준일

- 장외매수는 계약체결일, 장외매도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주식등의 인도일과 대금수령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보고의무가 발생
- 장외매수의 경우 계약체결일을 보고의무 발생일로 하여 보고하면 되나, 매도인 경우는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대금 수령이 구분되어 있고 주식등의 양도가 잔금 수령일에 이루어진다면, 매도인의 보고의무 발생일은 잔금수령일과 주식등의인도일이 같은 날이므로 잔금수령일(=주식등의 인도일)이 변동보고의무 발생일임

·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수령하고 대금 수령시마다 동일 가치의 주식 등을 인도하는 경우 각각의 수령시점이 변동보고의무 발생일임

· 다만, 매도인이 경영참가목적으로 5%보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외매도계약체결일에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체결에 따른 변경보고의무가 발생
  - 장외 매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일을 기준으로 5% 보고를 하였으나 계약내용이변경되어 매수수량 등이 달라지는 경우 계약내용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동보고

※ 주식교환의 보고의무 발생일

-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상법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인 교환을 한 날이 기준일임
- 상법상 포괄적 주식교환이 아닌 사적인 주식교환(예 : 주식스왑 등)의 경우 결제수단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대체한 장외계약의 한 형태이므로 장외 매매거래의보고방법에 따라 보고

□ 보고기한

○ 원칙적으로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함
- 의무발생일을 제외하고 그 다음날부터 5일의 기간을 계산(초일불산입 원칙)
- 보고기한 5일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휴일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은 산입하지 아니함(영 §153①)

< 적용사례 >

– 2016.5.4.(수)에 증권시장에서 주식매수주문이 체결되어 보고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고의무 발생일(5.4.)과 공휴일(5.5, 5.8)및 토요일(5.7)을 제외하고 5일째가 되는 날(5.12)이 보고기한이 됨

'16.5.4(수)	5.5(목)	5.6(금)	5.7(토)	5.8(일)	5.9(월)	5.10(화)	5.11(수)	5.12(목)
보고의무 발생일(D)	공휴일 제외	D+1	토요일 제외	공휴일 제외	D+2	D+3	D+4	D+5
	←――――――――――――――― 보고기한(5일) ―――――――――――――――→							

○ 보고기한에 대한 특례(영 §154③, ④, ⑤)

– 단순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의 변동보고는 보고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일반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의 변동보고는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할 수 있음(단, 신규보고는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5일)

– 연기금 등 규정 §13-4에 따른 특례적용 전문투자자의 신규 또는 변동보고는 유목적이 단순투자 목적인 경우 보고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0일까지, 일반투자 목적인 경우 보고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할 수 있음

– 국가, 지자체, 한국은행의 경우 보고의무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규보고 또는 변동보고를 할 수 있음

※ 다음달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보고

※ 특례적용 전문투자자의 범위(영 §154②, 규정 §3-14)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은행
- 증권금융회사('10.11.8. 추가)
-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투자공사
- 한국정책금융공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 한국예탁결제원
- 한국거래소
- 금융감독원
-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보고의무가 발생하여 보고하는 날의 전일까지 새로이 보고사유가 발생한 우, 새로이 보

고해야 하는 사항은 당초의 대량보유상황, 보유목적 또는 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법 §147③)

(예 : 단순투자 목적 보유자가 1월의 거래내역을 일괄하여 2월 10일에 보고하는 경우 1월 31일과 2월 10일 사이에 보유지분이 1%이상 변동되는 경우 변동내역을 2월 10일에 1월의 변동내역과 함께 보고)

※ 또한, 변경 또는 변동 보고서 제출시, 직전보고서 제출 이후 발생한 사항은 보고면제사항 이더라도 그 보고서의 세부변동내역〈제3부〉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야 함

□ 보고서의 기재내용(법 §147, 영 §153②, 규정 §3-10)

< 경영참여목적인 경우 : 일반서식으로 보고 >

○ 보유상황
○ 보유목적(영 제154조 제1항 각호의 사유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 기재)
○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
○ 주식등의 대량보유자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보유 주식등의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 변동 사유
○ 취득 또는 처분 일자·가격 및 방법
○ 보유 형태
○ 취득에 필요한 자금이나 교환대상물건의 조성내역(차입인 경우에는 차입처를 포함) 등
※ 취득자 개인별로 조성내역 기재

< 일반 ·단순투자목적인 경우 : 약식서식으로 보고 >

○ 보유상황
○ 보유목적
○ 주식등의 대량보유자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보유 주식등의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 취득 또는 처분 일자·가격 및 방법
○ 주식등의 보유기간 동안 의결권 등 보유주식등의 수와 관계없이 법률상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겠다는 확인(단순투자목적인 경우)

(일반투자목적인 경우 추가 기재내용)

○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
○ 취득에 필요한 자금이나 교환대상물건의 조성내역(차입인 경우에는 차입처를 포함) 등
※ 취득자 개인별로 조성내역 기재

□ 5% 보고자의 발행인에 대한 사본 송부의무(법 §148)

○ 5% 보고자는 5% 보고자료 사본을 발행인(교환사채의 경우에는 교환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증권예탁증권의 경우 기초가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등)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함

※ 사본을 미송부하거나 허위의 사본을 송부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법 §449) 〈2017.4.18 개정〉

5. 냉각기간(법 §150②, ③)

□ 보고사유 발생일부터 보고일 후 5일까지 의결권 행사 및 추가취득 금지

○ 경영참가 목적으로 주식등을 5% 이상 취득(신규보고)하거나 단순투자 목적으로 보고한 5% 이상 보유자가 보유목적을 경영참가로 바꾸는 경우에는 보고사유 발생일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당해 주식등의 추가취득이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함

※ 경영참가 목적으로 5% 보고 후 보유비율이 변동되어 변동보고하는 경우에는 냉각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 냉각기간은 보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보고한 날(초일불산입) 이후 5일까지 적용

○ 냉각기간 개시일은 보고사유 발생일의 익일이며 종료일은 보고일을 제외하고 계산하여 5일째 되는 날임

○ 냉각기간의 종료일인 보고일로부터 5일째 되는 날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휴일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은 산입하지 아니함

※ 자본시장법은 냉각기간 기산일을 종전 보고일에서 보고사유 발생일로 변경하였음에 유의

< 적용사례 >

– '16.4.29.에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5% 이상 지분을 장내매수하고 ’16.5.4.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냉각기간은 ‘16.4.30.부터 ’16.5.12.까지임

'16.4.29(금)	4.30 (토)	…	5.4(수)	5.5(목)	5.6(금)	5.7(토)	5.8(일)	5.9(월)	5.10 (화)	5.11 (수)	5.12 (목)
보고사유 발생일	…	보고일 *	공휴일 제외		토요일 제외	공휴일 제외					
	←——————————— 냉각기간 ———————————→										

* 보고기한은 5.9[어린이날(5.5), 토요일(5.7), 일요일(5.6) 제외]이나 임의로 5.4에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가정

– 단순투자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가 추후 경영참가목적으로 보유목적을 변경한 경우에도 앞의 사례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냉각기간을 계산

○ 냉각기간을 위반하여 추가로 취득한 주식등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처분명령 대상에 해당됨

6. 첨부서류

○ 보고의무 발생사유별로 아래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장내매매 : 증권사의 매매내역 전산파일. 단, 전산파일 제출이 곤란한 경우 매매거래원장(지점장 직인이 있어야 함)
  ※ 직인이 없는 매매거래원장 또는 HTS 매매화면을 첨부하는 경우 동 내용이 진실함을 보고자 본인이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함
- 장외매매 : 장외매매계약서, 대금납입 및 주권인도 관련 증빙서류
- 신규보고시 : 5% 직전의 잔고증명서 + 매매거래증빙내역(5%이상 취득 매매 거래분부터)
- 신규상장된 경우 : 약식주주명부 또는 상장일 기준 잔고증명서
- 유상신주취득시 : 이사회의사록 또는 신주배정통지서와 청약확인서, 납입증명서
- 무상신주취득시 : 이사회의사록
- 배당(중간배당)으로 주식 취득시 : 주주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기준일의 잔고증명서
- CB·EB의 권리행사로 신주취득시 : 전환청구서(예탁결제원)
- 주식매수선택권, BW의 권리행사로 신주취득시 : 납입증명서
- 주식병합·액면분할 : 주총의사록, 구주권의 잔고증명서
- 합병 : 합병이사회결의 또는 합병주총 의사록, 구주권 잔고증명서
- 증여 또는 상속 : 증여계약서, 상속재산분할합의서
- 담보계약 등 주요계약 체결시 : 계약서 또는 질권설정승낙서 등

7. 보고의무 위반의 효과

※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처분명령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벌칙이 병과될 수 있음

□ 의결권행사의 제한(법 §150, 영 §158)

○ 5% 보고의무 위반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부분 중 위반부분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의결권 행사 금지
- 고의나 중과실로 미보고하거나 중요사항을 허위보고·누락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날부터 그 보고(정정보고를 포함)를 한 후 6개월까지 의결권 행사를 제한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내용이 이미 금융위·한국거래소에 신고되었거나 정부의 승인·지도·권고 등에 따라 취득·처분한 경우 등 착오로 보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날부터 당해 보고를 한 날까지 의결권 행사를 제한

※ 보고사유별 증빙자료

1. 연명보고시

◦ 신규보고 및 연명보고자가 추가되는 경우 보고자를 수임인으로 하고 연명보고자를 위임인으로 하는 위임장을 첨부(변동보고시는 첨부 필요 없음)

2. 장내매매

◦ 금융투자업자(증권회사)가 발행한 매매내역 전산파일, 매매보고서, 잔고증명서 등(거래 금융투자업자 지점장의 확인 필요)

※ 매매내역 증빙은 변동보고시 직전보고서 기준일 이후, 신규보고시 지분 5% 초과보유 시점 이후의 거래내역을 포함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3. 장외매매

◦ 매매사실을 나타내는 계약서(사본). 기타 필요시 입금내역, 증권 입출고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

4.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인수

◦ 금융투자업자(증권회사)로부터 인수하는 경우 인수계약서, 기타의 경우 매매계약서 등

5. 주식배당, 감자, 무상증자 등

◦ 주주총회 의사록 등

6.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

◦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청구서, 신주인수권사채 등은 납입관련 증명서 등

7. 유상증자, 실권주 인수

◦ 주주총회 의사록, 유상신주 청약서 또는 실권주 인수 청약서 등

8.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목적으로 변경

◦ 단순투자 목적 확인서를 본문 해당란에 삽입

※ 5% 보고서는 변동사항이 있는 보고자 본인 및 특별관계자별로 증빙자료를 구분하여 첨부하여야 함을 유의(구분하지 않을 경우 접수 오류 발생)

※ 매매내역 전산파일 첨부방법

□ 매매보고서, 잔고증명서 등을 이미지(스캔)파일로 첨부하지 않고 금융투자업자로부터 매매 전산내역을 제공받아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보고의무자】

증권회사에 5% 보고용 전산파일 발급 요청

⬇

【증권회사】

① 매매내역을 전산파일(text file)로 추출한 후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인인증하여 tsd file로 변환

② 변환된 tsd file을 고객에게 교부

⬇
【보고의무자】
교부받은 매매내역 파일을 5% 보고서 등에 첨부하여 DART 시스템에 공시
※ 증권사의 매매내역 전산파일tsd) 미제공등으로 tsd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이미지 스캔파일로 제출하되 첨부가능 용량 초과의 문제가 있으면 지분공시팀에 문의

□ 금융위의 조치
○ 위반분에 대한 처분명령(법 §150)
- 금융위는 위반 주식등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음
○ 조사 및 정정요구(법 §151)
-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보고자 등 관계인에게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감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물건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금융위는 보고서의 형식상 불비,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기재 또는 누락 등에 관하여 정정을 명할 수 있음
○ 행정처분(영 §159)
- 금융위는 위반자에 대하여 거래의 정지·금지, 임원의 해임권고, 고발 및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형사처벌(법 §444 ~ §446)
○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기재 또는 누락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미보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금융위의 처분명령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징금(법 §429)
○ 미보고,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기재 또는 누락
- 주식의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곱한 금액 내에서 부과

□ 과태료(법 §449)
○ 감독당국의 조사를 기피·방해하거나 자료제출·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Ⅱ. 임원등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제도

1. 제도의 의의 및 개요

□ 의의

○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발행회사의 중요 경영사항 및 주식관련 정보에 접근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발행회사 특정증권등을 거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회사의 특정증권등에 대한 소유상황 및 변동내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 개요(법 §173①)

○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해당법인의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증선위(금감원)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 소유특정증권의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증선위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

2. 보고대상증권 및 보고의무자

□ 보고대상증권(법 §172①, 영 §196)

○ 임원·주요주주보고 대상증권인 "특정증권등"이란 i)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순수채무증권은 제외), ii)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교환사채권, iii)위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함

* 지분증권(의결권 없는 우선주 포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등

□ 보고의무자

○ 임원(법 §172①, 영 §200②)

- 임원·주요주주보고 대상자인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당해 법인의 이사(사외이사 포함).감사 및 사실상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업무집행지시자 등) 해당자*]을 말함

※ 상법 제408조의2에 따라 집행임원을 둔 경우에는 동 집행임원을 포함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전무.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등

- "계열회사의 임원"은 등기.미등기를 불문하고 임원.주요주주 보고대상이 아님

※ 5% 보고시 보고자 본인이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특수관계인 범위에 "당해 법인의 계열회사 및

그 임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임원.주요주주 보고자에도 계열회사의 임원이 해당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음

※ "사실상 임원"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 "사실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고자 본인이 아래의 기준과 소속회사의 직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기 책임하에 판단.결정해야 함
  - 명예회장.회장.사장.전무.이사 등의 직함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자
  - 다만, 고문.이사대우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자인 경우 ① 내부직제, ② 담당업무 및 전결권 범위, ③ 급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직책명 변경 등의 경우 소유상황보고방법 및 사업보고서 기재

- 회사의 조직구조 변경, 직책명 변경 등으로 기존의 사실상 임원에게 전무.상무.이사 등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열거하는 통상의 명칭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라도,
  - 업무범위.권한 등이 이전과 동일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도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있음
- 회사는 기존 소유상황 보고자의 업무범위, 권한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임원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사실상 임원으로 공시하여야 하고 임원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주요주주(법 §9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

– "주요주주"라 함은 ①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또는 ②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주주라 하더라도 임원의 임면 등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함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의 "주식" 소유 여부 계산시, CB, BW 등 주식이 아닌 특정증권등에 대한 소유는 고려하지 않음

* 주식을 7%, CB를 3% 보유한 자는 그 법인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주요주주가 아님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됨

○ "자기의 계산"이라 함은 주식의 명의자에 관계없이 실제 주식취득자금을 자신이 조달하고 주식운용에 따른 손익이 직접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말함(차명계좌 이용 등)

○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는 단독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3. 보고의 기준

□ 보고기한(법 §173, 영 §200⑥⑦)

○ 신규보고

– 최초로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되었을 때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특정증권등의 소유현황을 임원·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보고하여야 함

* 임원 선임시 소유 특정증권등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없음

< 적용사례 >

- 2016.6.3.에 임원이 되었거나,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취득(결제)하여 보고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고의무 발생일(6.3.)과 토요일(6.4.), 공휴일(6.5.) 및 현충일(6.6)을 제외하고 5일째가 되는 날(6.13)이 보고기한

'16.6.3 (금)	6.4(토)	6.5(일)	6.6(월)	6.7(화)	6.8(수)	6.9(목)	6.10 (금)	6.11 (토)	6.12 (일)	6.13 (월)
보고의무 발생일 (D)	토요일 제외	공휴일 제외	공휴일 제외	D+1	D+2	D+3 D+4	토요일 제외	공휴일 제외	D+5	
	←———————————— 보고기한(5일) ————————————→									

○ 변동보고

- 소유 특정증권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나, 변동수량이 1,000주 미만이고 그 취득 또는 처분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변동보고의무를 면제(영 §200⑤)

※ 단, 누적 변동수량이 1천주 이상이 되거나, 누적 취득(처분)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신규보고의 경우 면제사유 없음

- 임원퇴임의 경우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없으면 보고의무 없음(2017년부터 시행)
- 주식배당, 무상신주 취득, 주식분할 또는 병합, 자본감소의 경우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변동보고(신규보고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없는 국가 등 일정범위의 전문투자자는 단순투자목적인 경우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일반투자목적인 경우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변동보고(특례가 적용되는 보고자의 범위는 영§200⑦을 통해 판단, 신규보고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 보고기준일(보고의무 발생일)

○ 신규보고(영§200③)

- 임원이 아니었던 자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일
- 사실상 임원은 해당 지위를 갖게 된 날
- 주식을 취득해서 주요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취득 등을 한 날
-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발행한 주권이 상장된 경우에는 그 상장일
-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합병등(분할합병, 주식포괄교환·이전 포함)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합병등으로 발행된 신주의 상장일

○ 변동보고(영§200④)

- 장내매매거래 : 결제일(체결일 + 2영업일)

※ 5%보고(체결일기준)와는 달리 임원·주요주주보고는 결제일 기준임을 유의
- 장외매매거래 : 대금지급일과 주권인도일 중 먼저 도래한 날
- 유상신주의 취득 : 주금납입일의 다음날
- 증권대차거래 : 특정증권등 인도일
- 증여로 인한 취득 : 특정증권등 인도일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상속확정일 또는 유산분할 종료일
- 기타 : 민법·상법 등 법률의 일반원칙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날
  - 무상신주의 취득(상법§461③) : 신주 배정 기준일
  - 주식배당으로 인한 신주취득(상법§462의2) : 주식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일
  - 전환사채 등의 권리행사로 인한 신주취득(상법§350 및 §516) : 당해 권리행사일
  - 신주인수권부사채(상법§516의10), 주식매수선택권(상법§340의5)의 권리행사로 인한 신주취득 : 납입을 한 때
  - 합병으로 인한 합병신주 취득(상법§234 및 §530) : 합병등기일
  - 주식병합(상법§441), 주식분할(상법§329의2), 주식소각(상법§343) : 구주제출기간 만료일 또는 채권자 이의절차 종료시

4. 보고절차·첨부서류 위반시 제재

□ 보고절차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접수수리 홈페이지(https://filer.fss.or.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보고서 기재시 유의사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작성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됨

○ 세부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는 일반인에게 공시되지 않으며, 금감원에서 기재사항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됨

□ 첨부서류

○ 보고의무 발생사유별로 아래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장내매매 : 증권사의 매매내역 전산파일. 단, 전산파일 제출이 곤란한 경우 매매거래원장(지점장 직인이 있어야 함)
  ※ 직인이 없는 매매거래원장 또는 HTS 매매화면을 첨부하는 경우 동 내용이 진실함을 보고자 본인이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함
- 주식병합·액면분할 : 주총의사록, 구주권의 잔고증명서
- 장외매매 : 장외매매계약서, 대금납입 및 주권인도 관련 증빙서류
- 임원선임시 : 주총의사록 또는 등기부등본, 잔고증명서
  ※ 미등기임원의 경우 임원선임관련 임명장, 내부결재문서 등을 첨부
- 신규로 주요주주가 된 경우 : 10% 직전의 잔고증명서 + 매매거래증빙내역(10%이상 취

득 매매거래분부터)

- 신규상장된 경우 : 약식주주명부, 등기부등본
- 유상신주취득시 : 이사회의사록 또는 신주배정통지서와 청약확인서, 납입증명서
- 무상신주취득시 : 이사회의사록
- 배당(중간배당)으로 주식 취득시 : 주주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기준일의 잔고증명서
- CB·EB의 권리행사로 신주취득시 : 전환청구서(예탁결제원)
- 주식매수선택권, BW의 권리행사로 신주취득시 : 납입증명서
- 합병 : 합병이사회결의 또는 합병주총 의사록, 구주권 잔고증명서(단, 스팩 등 상장회사와의 합병의 경우 합병전 6월간 합병대상 상장회사의 주식을 매매한 내역)

□ 위반시 제재

○ 증선위의 조사요구 불응(법 §445)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허위보고·미보고(법 §446)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조치(법 §426, 영 §376)
- 금융위는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고발 및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주식대차거래의 지분공시의무

1. 주식대차거래

□ 주식대차거래는 대여자가 주식의 소유권을 차입자에게 이전하고 차입자는 대차거래 기간이 종료한 후에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주식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소비대차계약에 해당
- ◦ 일반적으로 차입자는 대차거래기간 중에 당해 주식으로부터 취득한 수익(배당이나 신주인수권에 기하여 취득한 신주 등)을 대여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차입자는 처분권이나 의결권을 가짐

2. 5%보고 의무

□ 대여자는 대차거래로 인하여 보유형태가 실질소유 등에서 인도청구권으로 변경되므로 보유형태 변경보고 대상에 해당되며, 이와 별도로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부분에 주요 대차계약내용을 기재

□ 차입자는 차입한 주식의 소유권을 가지므로 5%보고(신규 또는 변동보고) 의무를 부담하며,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부분에 대차계약내용을 기재
- ※ 차입한 주식에 대해 1% 이상 장내·외에서 매매하거나 주요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추가로 별도의 변동보고를 하여야 하며, 차입주식 상환시에도 변동보고를 해야 함

3.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 대여자나 차입자가 임원(미등기임원 포함)·주요주주인 경우 대여자는 소유 특정증권의 감소를 원인으로, 차입자는 소유 특정증권 증가를 원인으로 각각 (1% 미만 변동의 경우에도)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를 하여야 함

Ⅲ.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1. 제도의 의의 및 개요

□ 의의
○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해당법인의 미공개정보를 해당법인이 발행한 특정증권등의 매매거래에 이용하여 부당한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 개요
○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특정증권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내부정보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이 동 차익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2. 반환대상자 및 반환대상 단기매매차익

□ 반환대상자
○ 임원 : 등기임원은 물론 사실상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을 포함
○ 직원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사항(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및 재무·회계·공시·기획·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직원(단차반환규정 제5조)
○ 주요주주 :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또는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 임원과 주요주주의 범위는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와 동일

□ 반환대상 단기매매차익(법 §172)
○ 단기매매차익이란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얻은 이익을 말함
※ 특정증권등이란 그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으로서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의 보고대상이 되는 특정증권등과 동일
○ 미공개 내부정보의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대상이 됨

- 임·직원의 경우 매도 또는 매수 어느 한 시점에 임·직원인 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므로 퇴사 후에도 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주요주주의 경우에는 매수 및 매도 모든 시점에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어야 함
-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이종증권간 단기매매(예 : 보통주 매수후 6개월 내 전환사채 매도)로 취득한 차익도 반환대상임을 유의해야 함

○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영 §199)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에 대한 규정은 투자매매업자가 인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 또는 매도하여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경우에 준용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로서 단기매매차익 산정시 해당매매는 없는 것으로 간주(영 §198, 단차반환규정 §8) ☞ Q&A 3-42 참조

○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에 따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수·매도 또는 매도·매수하는 경우
○ 모집·사모·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 등을 처분하는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증권예탁증권의 예탁계약 해지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모집·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39조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그 취득한 주식을 동법제43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예탁하는 경우만 해당)
○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공개매수에 응모함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 그 밖에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선위가 인정하는 경우
- 유상신주 발행시 실권주 또는 단수주의 취득
-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행하는 매매
- 공로금·장려금·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 주식의 취득
- 이미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로 인한 주식의 취득
- 증권시장에서 허용되는 최소단위 미만의 매매

※ 또한 매매로 볼 수 없는 경우(상속, 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도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3.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 산정방법

○ 과거 6개월 이내에 1회 매수·매도한 경우

단기매매차익 = (매도단가- 매수단가) × 매매일치수량* -(매매거래수수료 + 증권거래세액 + 농어촌특별세액) * 매수수량과 매도수량 중 적은 수량

- 차액산정결과 그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반환대상 단기매매차익을 매수 후 6개월 이내 매도하여 얻은 이익만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으나, 매도후 6개월 이내 매수하여 얻은 이익도 반환대상임을 유의

○ 과거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매수·매도한 경우

- 가장 먼저 매수(매도)한 수량과 가장 먼저 매도(매수)한 수량을 대응하여 위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하고, 그 다음의 매수·매도 수량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량이 없어질 때까지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차익산정(선입선출법)

※ 대응된 매수분이나 매도분 중 매매일치 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잔량)은 해당 매수 또는 매도와 별개의 매수 또는 매도로 보아 대응시킴

< 단기매매차익 산정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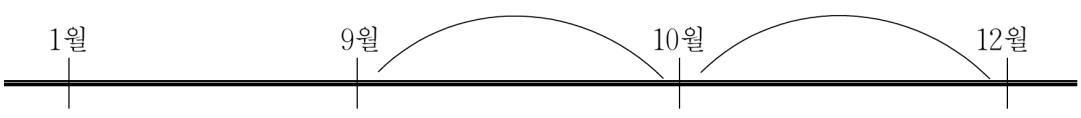

장내매수	장외매도	장내매수	장내매도
200주	100주	200주	50주
(@500원)	(@700원)	(@600원)	(@800원)

- 1월 매수는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매매가 아니므로 제외하고, 9월, 10월, 12월의 매매를 순차적으로 대응시켜 단기매매차익을 산정

⇒ ① 9월 매도 및 10월 매수 : (700원-600원) × 100주 = 10,000원
(10월 매수 중 9월 매도와 대응하고 남은 100주는 별개의 매수로 봄)
② 10월 매수 및 12월 매도 : (800원-600원) × 50주 = 10,000원
단기매매차익 = ① + ② = 20,000원

□ 가격 및 수량의 환산(영 §195②, 단차반환규정 §6)

○ 매수 및 매도 특정증권등이 종류는 같으나 종목이 다른 경우(이종종목) ☞ Q&A 3-43 참조

- 매수 후 매도 : 매도한 날의 매수 특정증권의 최종가격을 매도 특정증권등의 매도가격으

로 간주

- 매도 후 매수 : 매수한 날의 매도 특정증권등의 최종가격을 매수 특정증권의 매수가격으로 간주

※ 예시 : 보통주를 매수하고 6개월 이내에 우선주를 매도하는 경우 우선주 매도가격은 매도일의 보통주 종가로 간주

[차익 = (매도일 보통주 종가 - 보통주 매수가) × 매매일치수량 - 수수료등]

○ 매수 및 매도 특정증권등의 종류가 다른 경우(이종증권) ☞ Q&A 3-44 참조

- 매매일의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의 종가로 환산
- 매매일에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되는 지분증권의 수량으로 환산

※ 예시 : 보통주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CB 매도시 CB의 매도단가는 매도일 보통주 종가로, 수량은 보통주 취득가능수량(액면가액/전환가)으로 각각 환산

○ 권리락·배당락 등이 있는 경우(단차반환규정 §7)

- 매수 또는 매도후 주권의 권리락·배당락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환산한 가격 및 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함

* 자본의 증감, 합병, 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 기타 유의사항

○ 다수 계좌에 의한 매매거래가 있는 경우

- 동일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경우에는 전체를 1개의 계좌로 간주

○ 단기매매차익 산정시 무상증자 또는 배당에 대한 세금, 매매와 관련한 미수연체이자, 신용이자 등은 고려하지 아니함

4.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절차

□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에게 있음

○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권자는 해당 법인임

○ 다만, 해당 법인이 적절한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는 해당 법인을 대위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증선위가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이를 통보해야 하고, 그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정기(사업·분기·반기)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

○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란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주에

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 공시의무 위반시 시정명령, 주의, 경고, 등의 조치 부과

Ⅳ.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1. 제도의 의의 및 개요

□ 의의
○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고자 하는 경우 피권유자인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에 필요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권유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권유문서 등의 내용을 공시하도록 한 제도

□ 개요
○ 주권상장법인의 10인 이상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권유행위를 하기 2영업일 전에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금융위와 거래소에 미리 제출하는 등 법상 정해진 절차(정당한 위임장 용지 사용, 권유기간 등)를 준수하여야 함

2. 권유행위

□ 위임장용지 등 교부대상 권유행위(법 §152)
○ 아래의 행위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권유의 상대방(이하 "피권유자")에게 위임장용지 등을 교부하여야 함
-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시키도록 권유하는 행위
- 의결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요구하거나 의결권 위임의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
- 의결권의 확보 또는 그 취소 등을 목적으로 주주에게 위임장 용지를 송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 다만, 위의 권유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행위로 보지 아니함(영 §161)
- 해당 상장주권의 발행인(그 특별관계자를 포함)과 그 임원(그 특별관계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가 10인 미만의 피권유자에게 그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경우
- 신탁, 그 밖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는 자가 그 타인에게 해당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
- 신문·방송·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를 통하여 권유행위를 하는 경우 그 광고내용

에 해당 상장주권의 발행인의 명칭, 광고의 이유, 주주총회의 목적사항과 위임장 용지·참고서류를 제공하는 장소만을 표시하는 경우

□ 권유자

○ 권유자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해당회사(경영진), 주주는 물론 해당 주주총회의 목적사항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누구든지 권유자가 될 수 있음

□ 피권유자 및 권유대상 주식(법 §152)

○ 피권유자는 해당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는 주주임. 따라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소유한 주주는 피권유자가 될 수 없음

○ 권유대상 주식은 상장주식을 의미함. 따라서 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경우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님

3. 의결권 대리행사의 방법 및 대리행사 위임의 철회

□ 대리행사의 방법

○ 상법상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므로 주주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위임장에 서명하여야 함

- 권유자가 주주에게 의결권의 위임을 권유하는 것은 청약에 해당하고, 주주가 대리권을 수여하는 취지로 위임장을 권유자에게 보내는 것은 승낙에 해당되어 권유자와 주주간에 의결권 대리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이 성립함

○ 권유자는 위임장에 나타난 피권유자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함

□ 위임의 철회

○ 민법상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므로 주주는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의결권 대리행사의 위임을 철회할 수 있음

- 상대방에 대한 명시적인 위임 철회의사 표시 또는 주주가 직접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방법 등으로 철회가 가능

4. 위임장용지·참고서류의 사전 제출 의무

□ 참고서류 등의 제출(법 §153)

○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자 하는 자는 위임장용지와 참고서류를 피권유자에게 제공하기 2영업일 전까지 그 사본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함

*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전자문서를 제출하면 금융위 및 거래소에 제출 간주

-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영 §164)

< 적용사례 >

- 주주총회가 5.14.로 예정된 가운데 5.7.부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려면 늦어도 4.30. 까지 참고서류·위임장용지를 DART에 제출해야 함

4.30(화)	5.1(목)	5.2(금)	5.3(토)	5.4(일)	5.5(월)	5.6(화)	5.7(수)
제출시한	근로자의 날 제외	D-2	토요일 제외	공휴일 제외	공휴일 제외	D-1	권유시작일 (D)

□ 위임장용지 기재 내용(영 §163①)

○ 위임장 용지는 아래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위임한다는 내용
- 의결권 권유자 등 의결권을 위임받을 자
- 의결권 피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 수
- 위임할 주식 수
- 주주총회의 각 목적사항과 목적사항별 찬반 여부
- 주주총회 회의시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 또는 수정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위임 여부와 위임 내용
- 위임 일자와 위임 시간
- 위임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

□ 참고서류 기재 내용(영 §163②)

○ 참고서류는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권유자, 주총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아래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의 개요
  - ■ 권유자의 성명·명칭, 권유자 및 그 특별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권유자의 대리인의 성명, 그 대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권유자의 대리인으로 기재되는 자는 권유행위 대리자가 아니라 주주총회장에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자를 의미
  - ■ 권유자 및 그 대리인과 해당 주권상장법인과의 관계
- 주주총회의 각 목적사항
  - ■ 주주총회 목적사항이 '재무제표의 승인 '에 관한 것인 경우 필수기재사항*

    가. 해당사업연도의 영업사항의 개요

    나.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다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시에 배당에 관한 처리안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개정)

* 주석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개정)

■ 주주총회 목적사항이 '정관의 변경 '에 관한 것인 경우

가. 각각의 정관 조항 별, 선임·해임되는 자 별로 찬성과 반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위임장 용지를 작성하여야 함

나. 단, 특정 제도의 도입 등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수개의 조항을 변경하게 될 때에는 찬반을 한번만 표시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구성할 수 있음(개정)

■ 주주총회 목적사항이 '임원(이사·감사위원·감사)의 선임 '에 관한 것인 경우

가. 후보자의 세부경력

나. 후보자의 직무수행 계획(사외이사의 경우에 한함)

다. 후보자의 세부경력 등 증발공 규정에 따른 참고서류 기재내용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내용의 본인 확인서

라. 이사회가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추천 사유

■ 주주총회 목적사항이 '임원(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에 관한 것인 경우 전기 보수총액을 실제로 지급된 보수총액 및 보수한도를 구분하여 기재

-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취지*

* 권유 취지는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간결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사실을 과장·왜곡하거나 중요사실을 누락하여 오해를 유발하여서는 아니됨

□ 권유자의 참고서류 등 자진 정정의무(법 §156)

○ 권유자는 아래의 항목이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자진하여 정정하여야 함

- 위임장용지 중 의결권 권유자 등 의결권을 위임받을 자
- 참고서류 중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개요(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은 제외) 및 주주총회의 각 목적사항

○ 또한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 기재내용중 기재나 표시사항이 불분명하여 피권유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거나 권유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유리한 정보만을 강조하는 등 과장되게 표현한 경우에도 자진하여 정정하여야 함

※ 권유자가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권유와 관련된 주주총회일 7영업일 전까지(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날 등 제외) 정정할 수 있음

□ 권유자의 신의·성실 의무(법 §154)

○ 권유자는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 중 피권유자의 의결권 위임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그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해서는 안 됨

5. 위임장용지 등의 비치 및 교부

□ 위임장용지 등의 비치(법 §153)

○ 권유자는 피권유자에게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를 제공하는 날 2영업일 전까지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를 아래의 장소에 비치하여 해당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법 §153)

-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본·지점, 영업소
- 명의개서대행회사
- 금융위원회*
- 거래소*

*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전자문서를 제출하면 금융위 및 거래소에는 동 사본을 비치한 것으로 간주됨

□ 위임장용지 등의 교부방법(영 §160)

○ 권유자는 피권유자에게 아래의 방법으로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를 교부할 수 있음

- 권유자가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를 이용하는 방법
-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방법(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통해 참고서류 등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허용)
-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함께 보내는 방법(권유자가 해당 상장주권의 발행인인경우에만 허용)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전자위임장 이용 등)

* 전자위임장을 사용하는 경우, 참고서류의 교부방법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한 후 (☑ 표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홈페이지의 관리기관,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시 안내여부 등을 반드시 작성

6. 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는 발행인이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 발행인에 대해 다음의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법 §152조의2)

○ 주주명부의 열람·등사의 허용, 의결권권유자의 비용으로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주주에게 송부하는 행위

○ 발행인은 위 행위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2영업일(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등 제외) 이내에 응해야 함

7.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해당 상장법인의 의견 표명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대상이 되는 상장주권의 발행인은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법 §155)

○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지체없이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함(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전자문서 제출)

8. 정정명령 및 조사, 위반시 제재

□ 정정명령 및 조사(법 §156·§158)

○ 금융위는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을 정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금융위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권유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음

□ 위반시 제재(법 §158 등)

< 행정 조치 >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금융위는 권유자에게 그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필요시 권유행위를 정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음

-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를 피권유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를 비치하지 않거나 참고서류 등에 허위의 사실 등을 기재하거나 중요사실을 누락한 경우
- 자진정정해야 할 사항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 또한 위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의 제한,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영 §166)

○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의 발행인에 대한 요구(주주명부 열람·등사의 허용 및 의결권권유자의 비용으로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주주에게 송부)를 발행인이 불응한 경우(법 §152조의2)

- 발행인에 대한 3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449)

○ 감독당국의 조사 기피·방해 : 1억원 이하 과태료(법 §449)

○ 자료제출·출석요구 불응 : 3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449)

< 형사 벌칙 >

○ 위임장용지, 참고서류의 중요사항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법 §444)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위임장용지, 참고서류 미교부(법 §445)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참고서류 등 미제출, 중요사항 자진정정의무 위반(법 §446)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Ⅴ. 공개매수제도

1. 공개매수제도의 의의 및 개요

□ 의의

○ 지배권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경영권 변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며, 모든 주주에 동등한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등 주주간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공개매수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 개요

○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매수 공고와 동시에 금융위에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상 정해진 절차(공개매수기간, 결제, 조건변경 등)를 준수하여야 함

2. 공개매수의 개념 및 적용대상

□ 공개매수의 개념(법 §133①)

○ 공개매수는 기업지배권의 획득이나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주권상장법인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전환사채 등 잠재주권 포함)을 증권시장(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포함) 및 다자간 매매체결회사 밖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여 그 주식등을 매수하는 행위를 말함

* 매도와 매수 쌍방 당사자간의 계약, 그 밖의 합의에 따라 종목, 가격과 수량 등을 결정하고, 그 매매의 체결과 결제를 증권시장을 통하는 방법으로 하는 주식등의 매수(예 : 신고대량매매, 시간외매매)는 증권시장 밖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봄(법 §133④)

□ 공개매수의 적용대상(법 §133③)

○ 과거 6월간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을 합산한 보유비율이 발행 주식 등 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5% 이상 보유자가 추가취득하는 경우 포함)에는 공개매수절차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

득하여야 함

* 적용 대상증권(주식등) 및 보유의 개념은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와 동일

○ 10인의 산정기준은 매수의 상대방이 아니라 매수청약 또는 매도청약의 권유의 상대방임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매수 또는 매도청약의 권유의 상대방이 10인 이상이면 반드시 공개매수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도록 하여 모든 주주에게 경영권 Premium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개매수 적용 예외

○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득이하게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를 하지 않아도 됨(영 §143)

-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등의 매수등
- 주식매수청구에 응한 주식의 매수
-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른 주식등의 매수등
- 파생결합증권의 권리행사에 따른 주식등의 매수등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등의 매수등
-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가 없는 것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매수등(규정 §3-1)

  i)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법률의 규정, 정부의 인·허가, 지도·권고 등에 따른 매수

  ii)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계획 등에 의하여 정부가 처분하는 주식등의 매수

  iii) 법원의 인·허가에 따른 화의, 정리절차중인 회사의 주식등의 매수

  iv) 채권금융기관 등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처분하는 주식등의 매수

  v)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이 이행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매수

  가.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주식등의 취득

  나. 해당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식등의 매수등

  다. 제3자의 해당 금융기관 주식등의 매수등

  vi)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는 부실 금융기관 주식등의 매수등 및 예금보험공사가 동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

  vii)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국유재산을 정부출자 기업체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해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등의 취득

  viii)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합작당사자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합작계약에 따라 우선매입권을 가진 다른 합작 당사자의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

ix) 금융기관이 관련법규에 따른 자본금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취득 또는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감독원장 등에게 경영개선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발행하는 주식의 취득

x)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자본금 증액시 일반주주의 대량실권 발생이 예상되어 해당 금융기관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증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행하는 해당 금융기관 주식등의 매수등

xi) 주식의 종목별 외국인 전체 취득한도에 달하거나 초과한 종목을 증권회사의 중개에 의하여 외국인 간에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매수

xii)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을 인수한 투자 매매업자가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바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매수

xiii) 공개매수사무취급자가 공개매수 개시이전에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매도한 경우 이의 상환을 위한 장내매수

xiv) 주채무계열이 주채권은행과 체결한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주채무계열 및 그 공동보유자가 보유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

□ 공개매수 적용 예시

사 례 ①

○ 장외에서 4월간 9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결과 그 소유주식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5%가 되었고 그 취득 직후 1%의 주식을 장외에서 1인으로부터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장외에서 추가로 1%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6월간 10인에게서 5% 이상을 취득하게 되므로 공개매수 적용 대상에 해당됨

사 례 ②

○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산한 비율이 4%인 자가 10일간 12인으로부터 2%를 추가로 장외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6월간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취득하여 본인 및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비율이 5% 이상이 되므로 공개매수 적용대상에 해당됨

사 례 ③

○ 주식등을 이미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2인으로부터 30%의 주식을 추가로 장외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5% 이상 보유자가 장외에서 10인 이상으로부터 추가 취득하는 경우이므로 공개매수 적용대상에 해당됨

3. 공개매수 절차

공개매수사무취급자 선임	공개매수사무취급자 선임
⇩	
공개매수내용 공고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공고
⇩	
공개매수신고서 제출	공개매수공고일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공개매수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서 사본은 공개매수대상회사에 송부
⇩	
공개매수설명서 작성·비치	공개매수공고일에 설명서를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 금융위, 거래소,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의 본·지점에 비치
⇩	
공개매수 실시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일 이후 20일 이상 60일 이내
⇩	
공개매수 통지서 송부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한 때 매수상황, 매수예정주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응모자에게 송부
⇩	
매수대금지급	공개매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이후 지체없이 공개매수 수량을 전부 매수
⇩	
공개매수결과보고서 제출	공개매수결과를 금융위, 거래소에 보고

<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시기 >

◦ 공개매수공고를 한 날에 공개매수신고서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접수수리 홈페이지(https://filer.fss.or.kr)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공시하면 됨
- 공고일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날에 제출할 수 있음(법 §134②)

4. 공개매수의 철회(법 §139①)

□ 철회금지 사유

◦ 공개매수신고서 철회는 해당 증권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써 이를 자유롭게 허용하게 되면 공개매수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어 원칙적으로 공개매수 공고일 이후에는 철회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한적으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주는 공개매수기간 중 언제든지 응모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공개매수자는 응모주주에 대하여 그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법 §139④)

□ 철회가능사유(법 §139①, 영 §150)

○ 대항공개매수(공개매수기간 중 그 공개매수에 대항하는 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 공개매수자의 사망, 해산, 파산, 부도발생, 당좌거래정지 등 공개매수신고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의 발생으로 공개매수가 불가능한 경우

○ 공개매수대상회사에 합병,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이전 또는 교환, 영업이나 자산양수·도, 해산, 파산, 부도발생, 당좌거래정지, 상장폐지, 중대한 재해(천재·지변·전시·사변·화재 및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공개매수 공고시 게재하고 이를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경우로서 그 기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철회절차

○ 공개매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함(법 §139②)

○ 철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공개매수를 철회할 주식 등의 발행인에게 송부하여야 함(법 §139③)

○ 주식등의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 또는 매도의 청약을 한 자는 공개매수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공개매수에 대한 응모를 취소할 수 있음(법 §139④)

5. 공개매수 관련 금지행위

□ 공개매수기간중 별도매수의 금지(법 §140)

○ 공개매수자(그 특별관계자 및 공개매수사무취급자 포함)는 공개매수 공고일부터 매수기간 종료시까지 공개매수 이외의 방법으로 동일 주식등을 매수하지 못함

○ 예외적 허용

- 다른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주식취득이 가능함(영 §151)
  -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의 계약을 공개매수공고 전에 체결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계약체결 당시 공개매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매수공고와 공개매수신고서에 그 계약사실 및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 공개매수사무취급자가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

□ 공개매수조건의 변경 금지(법 §136③, 영 §147)

○ 공개매수자는 매수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매수기간 종료일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 매수가격의 인하
- 매수예정주식 등의 수의 감소
- 매수대금 지급기간의 연장
- 공개매수기간의 단축
- 응모주주에게 줄 대가의 종류의 변경. 다만, 응모주주가 선택할 수 있는 대가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는 제외
- 공개매수대금 지급기간의 연장을 초래하는 공개매수조건의 변경

6. 공개매수신고서 첨부서류

□ 공개매수자가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에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영 §146④, 규정 §3-3)

○ 공개매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다만 신고서 심사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내국인인 공개매수자가 동의한 경우는 제출면제

○ 공개매수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다만 신고서 심사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내국법인인 공개매수자가 동의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은 제출면제

○ 공개매수 관련사무에 관한 계약서 사본

○ 공개매수에 필요한 금액 이상의 금융기관 예금잔액, 그밖에 자금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공개매수대금을 결제일까지 인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
-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후 공개매수대금을 인출하여 결제일까지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출일부터 결제일까지의 자금의 운용계획서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

○ 다른 증권과의 교환에 의한 공개매수인 경우에는 공개매수자가 교환의 대가로 인도할 증권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현물출자를 받기 위하여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 교환대상증권을 결제일까지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

-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후 교환대상증권을 처분하여 결제일까지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결제일까지의 증권의 운용계획서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

○ 다른 증권과의 교환에 의한 공개매수에 관하여 법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 주식등의 매수등에 행정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 또는 승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개매수공고 내용

○ 공개매수공고 전에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사본

○ 공개매수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인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가진 자에게 해당 공개매수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 공개매수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가 한글로 기재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한글번역문

※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또는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음

□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빙 제출시 유의사항

○ 공개매수자는 내·외국인의 구분없이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류로 국내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단기금융상품등 기타 자금보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공개매수 당시 매수자금의 현존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는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주의

□ 모집·매출에 의한 증권을 대상으로 교환공개매수시 유의사항

○ 다른 증권과의 교환에 의한 공개매수와 관련하여 법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관련 증권신고서의 접수번호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첨부서류 제출에 갈음할 수 있음

7. 공개매수제도의 실효성 확보장치

□ 의결권행사의 제한(법 §145)

○ 법 제133제3항, 법 제134조(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그 주식(그 주식 등과 관련한 권리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 포함)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됨

□ 금융위원회의 조치

○ 위반분에 대한 처분명령(법 §145)

- 금융위는 법 제133제3항, 법 제134조(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제1항·제2항을 위반한 주식등(그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 포함)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음

○ 조사(법 §146①)

-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개매수자 등 관계인에게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감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물건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행정처분(법 §146②, 영 §152)

-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자 등에 대하여 정정을 명할 수 있고, 공개매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공개매수의 제한 및 공개매수사무 취급업무의 제한, 임원의 해임권고, 고발 및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공개매수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또는 공개매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공개매수공고,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정정공고 또는 공개매수결과 보고서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또는 철회신고서의 사본을 발행인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또는 철회신고서의 사본에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내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경우
  - 공개매수설명서에 관하여 법 제137조(공개매수설명서 작성·공시)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39조(공개매수의 철회 등)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를 철회한 경우
  - 법 제140조(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수등을 한 경우
  - 법 제141조(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를 위반하여 공개매수를 한 경우
  - 법 제145조(의결권 제한 등)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 과징금(법 §429)

○ 다음의 경우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된 공개매수예정총액의 100분의3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또는 공개매수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또는 공고중 중요사

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또는 공개매수설명서,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 형사처벌(법 §444~§446)

○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및 정정공고, 공개매수설명서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공개매수공고 및 정정공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의무(법 §134②)를 위반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법 §133③, 법 §140(공개매수기간중 별도매수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공개매수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을 매수한 자, 법 제145조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법 §449)

○ 다음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 §449①) <2017.4.18 개정>
-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또는 철회신고서의 사본을 발행인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자
-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또는 철회신고서의 사본에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내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자

○ 다음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 §449②) <2017.4.18 개정>
- 공개매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금융위의 공개매수자 등 관계인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명령 등에 불응한 자

이달의
세무신고업무
Checkpoint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행정안전부

▣ 법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가 4월 중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전체 법인 중 96%에 달하는 92만여 개 법인이 12월 결산법인으로, 2020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 신고법인: ('19년) 79.6만 개 → ('20년) 84.9만 개 → ('21년) 92만 개(잠정)

▣ 법인은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 \text{ 안분율} = \left(\frac{\text{사업장 관할 지자체 내 종업원 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 수}} + \frac{\text{사업장 관할 지자체 내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right) \div 2$$

▣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가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올해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이며, 연장 기간은 3개월이다.

○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2020년「지방세법」 개정으로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크게 달라지는 점은 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게 된 것이다.

○ 그간 외국법인세액은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공제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의 이중과세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할 법인은 납세지 관할 시·군·구청에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기업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 지방소득세 (개인·법인) 개요

▣ 개관

○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해 특·광역시, 시·군에서 과세하는 지방세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

– (개인) 종합·양도·퇴직소득에 과세, 세수규모는 8.7조 원('19년)

– (법인) 사업·청산소득 등에 과세, 세수규모는 8.7조 원('19년)

▣ 납세의무자 및 과세범위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구 분	거주자(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외국법인
과세범위	국내·외 원천소득	국내 원천소득

▣ 과세기간

○ (개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소득세법」 제5조)

○ (법인) 법령·정관 상 1년 이내의 1 회계기간 (「법인세법」 제6조)

※ 전체 법인의 약 95%가 12월 결산법인(사업연도: 1.1.~12.31.)에 해당

▣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	
세율세율	개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1,200만원 이하	0.6%
		1,200만원 ~ 4,600만원	1.5%
		4,6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 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법인지방소득세	2억원 이하	1.0%
		2억원 ~ 200억원	2.0%
		200억원 ~ 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
	특별징수	소득세·법인세액의 10%	
	탄력세율	지자체별로 세율의 50% 가감 적용 가능	

▣ 세액공제 및 감면

○ (개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 · 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 · 감면

○ (법인) 세액공제 · 감면 규정 없음

▣ 납세지(해당 특 · 광역시, 시 · 군)

○ (개인)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특별징수 납세지는 종류별로 따로 규정

〈 소득종류별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 〉

구 분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납세지	근무지	소득 지급지	주소지	근무지

○ (법인)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1:1 기준 안분)

–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 · 납부해야 함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식 〉

$$\left\{\left(\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수}}\right) + \left(\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right)\right\} \div 2$$

▣ 신고납부 방법

○ 관할 지자체에 신고 · 납부

※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지자체 공무원 파견)에서도 신고 · 납부 가능

개인	근로소득	매월 특별징수(원천징수) 후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 ※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별도 종합소득 신고 불필요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
	양도소득	양도소득 신고기간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예정신고·납부 후 다음 해 7월 말까지 확정신고·납부
법인	각사업연도소득 등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 이내 신고·납부
	청산소득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 –

1. 총괄

● 탄력적 근로시간제

▣ (단위기간)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별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신설

▣ (도입·운영 요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도입

○ (근로시간 사전 확정)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단위기간의 근로시간은 서면 합의로 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되,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각 주의 개시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통보

○ (근로시간 중도 변경) 서면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근로자대표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며,
– 이 경우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변경된 근로일 개시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

▣ (건강보호)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제 의무화

○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름

▣ (임금보전)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사용자는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의무 면제

▣ (단위기간 중단시 임금산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보다 실제 근로한 기간이 짧은 경우 단위기간 중 실제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해 가산임금 지급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정산기간)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현행 1개월 이내인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로 확대

▣ (건강보호)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제를 의무화하되,

○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름

▣ (임금보전)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 지급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 (건강보호)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행시기 등

▣ (시행시기)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시기에 맞춰 단계적 적용

* ▲ ('21.4.6.) 50인 이상 및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 ▲ ('21.7.1.) 5~50인 미만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건강보호 조치 의무는 ' 21.4.6.부터 시행

▣ (준비행위) 법 시행 이전 서면 합의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행위 가능

* 단위기간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개월 초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2. 탄력적 근로시간제

1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 (신설)

가. 현행 규정

○ 현재는 단위기간이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인 경우만 규정

나. 개정 규정 (제51조의2제1항, 신설)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개정 이유

○ '18.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고 특례업종이 대폭 축소

- 법 시행 이후 업무의 특성상 2~3개월의 집중근로가 필요한 대형 장치산업(대보수기간 등), 해외건설업, ICT 산업 및 계절적 수요 변동이 큰 사업 등을 중심으로,
- 현행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는 주 최대 52시간 준수가 어렵다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

○ 아울러, 해외 주요국 또한 주 40시간제 도입 시점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 보완

* ▲ (일본) 1주, 1개월, 1년(노사협정), ▲ (독일) 6개월, 1년(단협)
  ▲ (프랑스) 4주, 1년(단협, 산별협약에서 허용 시 최대 3년)

○ 다만, 단위기간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우려 등으로 경사 노위 노사정 논의시 6개월로 확대된 제도를 별도 신설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 이를 통해 근로시간의 합리적 배분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과 함께 근로시간제도 일부를 정비하였음

라. 세부내용 설명

(1) 단위 기간(제51조의2제1항)

○ 개정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현행 제도(2주 · 3개월 이내)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

야 함

*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도입할 경우에는 법 제51조제2항이 적용됨

(2) 도입 요건(제51조의2제1항)

○ (도입)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도입

-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는 아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함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②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

③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근로시간은 ①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40시간, ②특정 주 52시간, ③특정 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서면 합의로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각 근로일 및 각 주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주간 12시간의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서면 합의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제51조의2제1항제1호)

○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대상 업무, 대상 직종 등을 정한 후 이에 속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적용 대상이 되는 개별근로자를 특정하여 정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제,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신고의무 등이 적용되므로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근로자에게도 알려줄 필요

○ 한편, 적법한 서면 합의를 통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개별근로자 또는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동조합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

- 아울러, 서면 합의의 내용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갱신 또는 취업규칙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나,

-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취업규칙 등에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② 단위기간(제51조의2제1항제2호)

○ 법 제51조의2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며,

* (예시) 4개월, 5개월, 6개월, 14주, 20주, 26주 등

- 근로시간 사전 확정 및 중도 변경,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등의 이행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단위기간의 시작일을 명확히 할 필요

③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제51조의2제1항제3호)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해당 단위기간 전체에 대해 각 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해야 함

- 이 경우 단위기간 내의 각 주별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
- 서면 합의 등으로 정한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은 게시나 열람, 개별 근로자 통보 등의 방법을 통해 근로자가 자신의 주별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④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시행령 제28조의2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 법 제51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2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가. 개정 규정 (제51조의2제2항, 신설)

○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나. 개정 이유

○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할 경우, 장기간 집중적인 근로가 가능해져 만성과로 및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건강권 보호조치를 마련

- 특히, 연장근로가 더해지는 경우 1주 최대 64시간의 장시간근로가 일정 기간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건강이 훼손될 우려

○ 이에 노동자의 과로 방지를 위해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최소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 부여를 의무화하되,

-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예외를 인정

다. 세부내용 설명

(1) 적용 대상 근로자

▣ 3개월을 초과하는 단위기간을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 받는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서 정한 대상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며, 단위기간 전체에 대해 근로

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 한편,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기존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제도(제51조)가 적용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할 의무는 없음

(2) 근로일 간 부여(제51조의2제2항)

▣ 11시간 연속휴식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의 소정근로 개시 전' (이하 '근로일 간') 까지의 사이에 부여

○ '근로일 간' 이란 특정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때부터 다음 근로일의 소정근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근로를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를 말함

* 근로일은 해당 노동자의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날로서 24시간 기준이며, 역월 상의 1일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근로일 종료」란 '해당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때' 를 의미하며, 이 경우 해당 근로일의 근로가 다음날로 이어지더라도 연속하여 이루어진 근로는 해당 근로가 종료될 때까지는 전일의 근로에 해당

* (예시) 서면 합의로 특정일 09:00~21:00(10시간, 휴게 2시간 제외)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연장근로 없이 근로가 종료되면 21:00부터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나, 4시간의 연장근로(21:00~익일 01:30, 휴게 30분 포함)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전일의 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가 종료된 익일 01:30부터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

- 「다음 근로일 개시」란 해당 근로일의 근로 종료 후 '익일의 소정근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근무를 시작한 때' 를 의미

* 해당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시각은 서면 합의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의 종료 시각이 아닌 실제 근로가 종료된 시각을 의미하며, 특정일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가 종료된 시각부터 기산하여 연속휴식을 보장해야 함

↳ (예시) 서면 합의로 특정일 09:00~21:00(10시간, 휴게 2시간 제외) 근로하기로 정하고 2시간의 연장근로(21:00~23:00)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근로자의 다음 근로일 근로 개시 시각은 11시간 연속휴식 이후인 10:00 이후여야 함

▣ '연속 11시간 이상' 의 휴식시간을 부여

○ '연속' 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말하며,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도중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근로를 시켰다면 휴식이 단절된 것이므로,

- 일시 근로가 종료된 이후 다시 기산하여 11시간 이상을 연속하여 휴식을 부여해야 함

○ 아울러, 근로자가 연속휴식 시간인 11시간 내에 출근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명시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해야 함

(3)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 부여의 예외(제51조의2제2항 단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 '불가피한 경우' 란 사업 운영에 있어 예측이 불가한 예외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 ①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 및 예방, ②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③ 그 밖에 ① 및 ②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 법 제51조의2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 제5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름

○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인해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 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름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시에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일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함

○ 한편,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용자는 인력대체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근로일 간 연속휴식 시간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4) 위반 시 처벌(제110조제1호)

○ 개정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됨

3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가. 개정 규정 (제51조의2제3항, 신설)

○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개정 이유

○ 3개월이 넘는 전체 단위기간에 대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 확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

* '18.11월 노동연구원이 수행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 (도입사업장) 근로시간 사전특정 요건 완화(24.6%)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 (미도입 사업장) 300인 이상은 서면 합의 요건 완화(56.7%)를, 300인 미만은 근로시간 사전특정 요건 완화(46.4%)를 요청

○ 이에 따라, 단위기간 내 근로시간은 주 단위로 사전 확정토록 하되, 근로시간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최소 2주 전에 통보토록 함

다. 세부내용 설명

(1) 각 주의 근로일 시작 2주 전까지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확정

○ '2주 전까지' 는 각 주별 근로시간이 개시되는 시작 일을 기준으로 최소 2주가 확보되어야 함을 의미함

* (예시) '21.4.19(월)~4.23(금) 기간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늦어도 '21.4.4(일)까지 통보

○ 아울러, '근로일별 근로시간' 을 확정해야 하는 범위는 해당 주 전체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며,

- 이 경우, 특정일에 실제로 근로해야 할 시간의 총량(1일의 근로시간) 외에도 각 근로일의 '시업과 종업 시각' 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

(2) 근로자에게 통보

○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 는 개별 노동자가 자신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직접 통보하거나,

- 상세한 근무표 배부 또는 자유롭게 열람·접속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사내 전산망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이어야 함(해당 장소 또는 사내 전산망에 게시했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줄 필요)

4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주별 근로시간 변경

가. 개정 규정 (제51조의2제4항, 신설)

○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개정 이유

○ 기업 운영에 있어 돌발적인 상황 등으로 근로시간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확정된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필요

- 다만, 그 변동을 지나치게 용이하게 할 경우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어 일·생활 균형 및 건강권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 요건 하에서만 변경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둠

다. 세부내용 설명

(1) 탄력근로제 도입 당시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 '불가피한 사유' 란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적인 사유로 인해 사전 합의한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게 되는 경우로서,

-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함

○ 구체적으로,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서면 합의 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사업운영의 중단 또는 지장이 발생하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로서,

- 통상적으로 발생하거나 예측 가능한 업무량 증가, 정기적인 유지·보수 등 일상적인 사업활동으로 인한 근로시간 중도 변경은 '불가피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한편, '불가피한 사유' 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 받는 전체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변경뿐만 아니라, 일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

(2)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 '협의' 는 중도변경의 불가피한 사유 등을 설명하고, 개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생활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은 물론,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실질적인 협의여야 하며,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통보하거나 형식적인 협의 절차만 거친 경우 등은 근로자대표와의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

○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이후의 주별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단위기간 전체의 평균 근로시간은 제도 도입 시 서면 합의한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해야 함

○ 이 경우, 주별 근로시간의 변경은 잔여 단위기간 전체의 주별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특정 주의 근로시간 변경도 가능하나,

-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위기간 전체를 평균하여 서면 합의 시정한 1주 평균 근로시간이 유지되도록 잔여 단위기간의 각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확정해야 함

(4) 변경된 근로일 개시 전에 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에게 통보

○ '개시 전' 은 해당 근로일 시작 전을 의미하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노동자가 자신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

○ 한편, 제51조의2제3항에서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최소 2주 전까지 통보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시간을 사전 예측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 임박한 주의 특정일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일의 근로시간만 변경하여 통보하는 것이 아닌, 해당일이 속한 전체 주의 일별 근로시간을 확정하여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

* (예시) '21.5.7(금)에 5.10(월)~5.16(일) 기간 중 특정일 근로시간을 변경하기로 협의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1주(5.10~5.16) 전체의 각 일별 근로시간을 통보

- 아울러, 근로시간 변경에 따라 잔여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 이내의 임박한 주를 제외*하고는 각 주의 근로일 시작 2주 전까지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확정·통보하여야 함

* 근로일별 근로시간 변경 시점부터 2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변경 시점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확정하여 통보

5 임금보전 방안 마련 및 신고 의무

가. 개정 규정 (제51조의2제5항, 신설)

○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존 2주 이내 및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에서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제51조제4항)"라고 하여, 신고 의무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나. 개정 이유

○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1주 최대 52시간(2주 단위는 1주 최대 4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며, 이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자의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음

- 이에 근로기준법 제51조제4항에서는 사용자에게 임금보전방안 강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

○ 한편, 단위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 확대될 경우 근로자에게는 추가적인 임금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인건비 절감 등의 수단으로 오·남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 근로자의 불이익 및 제도의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사용자의 임금보전방안 강구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임

다. 세부내용 설명

(1)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신고(제51조의2제5항)

▣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

○ '임금 보전' 이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의 노동자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도 도입으로 인해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충*하는 것을 의미

* 임금수준의 저하 여부는 단위기간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

○ 구체적으로,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노·사 간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예시) 전체 단위기간에 대해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할증임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

○ 한편, 실질적인 임금보전방안이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현저히 미달하는 수준으로 보전하기로 정한 경우 등은 적법한 임금보전 방안 마련으로 보기 어려우며,

-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3조 위반이 될 수 있음에 유의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임금보전방안을 신고

○ 개정법에서는 '임금보전방안' 을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임금보전을 위한 세부 방안이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현저히 저하된 수준의 보전 방안일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

-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에게 적절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재신고하도록 지도할 수 있음

* 임금보전방안 신고의 수리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시행규칙 제8조의2)

(2) 신고의무의 예외(제51조의2제5항 단서)

○ 제도 도입 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 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면제

- 다만, 노·사간 다툼이 발생하는 등 미신고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2조 등)에 따른 조사 등을 할 수 있을 것임

(3) 위반 시 처벌(제116조제1항제3호)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필요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조사 등 가능

6 적용의 제한

가. 개정 규정 (제51조의2제6항, 신설)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존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

나. 개정 이유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불규칙적 배분 및 탄력적 배치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장시간 근로 및 불규칙한 근로에 따른 건강권 훼손의 우려가 있으며,

- 이에 따라, 통상의 성인근로자에 비해 정신적·신체적으로 더욱 주의를 요하는 연소근로자 및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

○ 이에, 기존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제도에서도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및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제도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으며,(법 제51조 제3항)

- 단위기간이 확대된 신설된 제도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것임

다. 세부내용 설명

(1)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 성인근로자에 비해 정신적·신체적으로 약한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해 불규칙한 근로시간 운용이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제한

- 동일한 취지로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15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은 제한

(2)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통상의 성인근로자에 비해 더욱 주의를 요하고, 특히 모성보호를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므로, 근로자의 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제한

7 단위기간보다 짧은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정산

가. 개정 규정 (제51조의3, 신설)

○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이 규정은 기존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에도 적용되는 신설 규정임

나. 개정 이유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을 평균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로,

- 단위기간 전체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이내여야 함

○ 다만, 단위기간 도중 입·퇴사 등이 발생하거나 기간제근로자의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 등에 있어서는 단위기간 전체의 근로시간을 평균할 수 없으므로,

- 이러한 경우에 대한 임금산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다. 세부내용 설명

(1) 제51조 및 제51조의2에서 규정한 제도에 적용

○ 단위기간보다 짧은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정산 기준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근로제뿐만 아니라, 제51조에 따른 2주 또는 3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근로제에도 적용

(2) 실제 근로한 기간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

○ '실제 근로한 기간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 란 단위기간 도중 채용 및 퇴직, 배치전환*, 휴직 등으로 탄력근로제를 새로이 적용받거나 적용이 중지되는 경우를 의미

* (예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의 탄력적 근로시간제(A제도, B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경우, (A)제도를 적용받던 근로자가 단위기간 도중 배치전환으로 (B)제도를 적용받게 되었다면 배치전환 전의 제도(A)에서는 중도 퇴직자와 동일한 정산이, 배치전환 후의 제도(B)에서는 중도 채용자와 동일한 정산이 필요

- 이 경우, 기간제·임시직 등 근로계약 형태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

(3)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

○ 단위기간 도중 입·퇴사 등이 발생한 경우 단위기간 내에서 실제 근로한 기간 전체를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을 산정

(4) 평균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 실제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그 시간만큼의 임금 및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

- 실근로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당해 기간의 총 실근로시간"에서 "40시간(법정근로시간) × (실제 근로한 기간의 역일수/7)"의 식으로 계산된 시간을 제외한 시간임

$$\text{실근로기간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text{실근로기간의 총 실근로시간} - \left(40\text{시간} \times \frac{\text{실근로기간의 역일수}}{7\text{일}}\right)$$

- 이 경우, 1일 및 1주의 연장근로로서 이미 가산수당이 지급된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산정시 제외

○ 제5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임금 및 가산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는 시점은 중도 퇴직자 등에 대해서는 퇴직 등의 시점, 중도 채용자 등에 대해서는 당해 단위기간 종료시점이 될 것임

○ 한편, 탄력근로제 도입 후 실근로시간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법정 연장근로수당 이상을 이미 지급해 왔다면 재차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임금보전방안의 일환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등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왔다면, 추가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님

(5) 위반 시 처벌(제109조제1항)

○ 개정 근로기준법 제51조의3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됨

3. 선택적 근로시간제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

가. 현행 규정 (제52조)

○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제52조)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 6. (생략)

나. 개정 규정 (제52조제1항, 개정)

○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정산기간
3. ~ 6. (현행과 같음)

다. 개정 이유

○ '18.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고 특례업종이 대폭 축소

- 법 시행 이후 업무의 특성상 정산기간이 1개월 이내로 제한된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
- 또한, 21대 국회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법 개정안도 발의(3건)

○ 이에,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 및 근로자의 시간선택권의 중요성이 높은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 외에는 현행 1개월 이내인 정산기간 유지

라. 세부내용 설명

(1) 정산 기간(제52조제1항)

○ 개정 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최대 3개월 이내 정산기간은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 이 외의 업무는 1개월을 초과한 정산기간을 정할 수 없음

(2)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제52조제1항)

○ 개정 근로기준법 제52조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라 함은 재료, 제품, 생산·제조공정 등의 개발 또는 기술적 개선 등을 의미하며,

- 제조업에서의 실품제품 뿐만 아니라 SW, 게임, 금융상품 등 무형의 제품의 연구개발 등을 포함

* 이 경우,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가 아닌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업

무는 포함되지 않음 (대학 또는 공공·민간 연구소 등에서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를 주된 업무로서 수행하는 경우)

○ 아울러, 연구개발 업무에는 당해 업무에 직접적으로 부수하는 시험·분석 등의 지원업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소재·부품·장비 등을 단순 조달하거나 사무·회계 등 연구개발 업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업무는 포함되지 않음

○ 또한, 주된 업무가 연구개발 업무(또는 이에 직접적으로 부수하는 업무) 외의 업무일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 연구개발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주된 업무에 따라 판단

(2) 도입 요건(제52조제1항)

○ (도입) 취업규칙 규정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도입

- 3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을 정산기간으로 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제도의 취지** 및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특정하여야 함

  *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으나, 최소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을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수 있어야 함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다"는 취지여야 하며, 시업 시각이나 종업시각 중 어느 하나만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이 경우,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9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그 ' 취업규칙',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으로 규정

-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는 아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함(현행 1개월 이내 제도와 동일)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② 정산기간
  ③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④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⑤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근로시간은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서면 합의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제52조제1항제1호)

○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대상 업무, 직군, 부서 등을 정한 후 이에 속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적용 대상이 되는 개별근로자를 특정하여 정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매 1개월 마다의 가산수당 정산 등이 적용되므로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근로자에게도 알려줄 필요

○ 한편, 적법한 서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개별근로자 또는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동조합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

- 아울러, 서면 합의의 내용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갱신 또는 취업규칙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나,
-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취업규칙 등에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② 정산기간(제52조제1항제2호)

○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 “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함

* (예시) 4주, 10주, 13주, 1개월, 2개월, 3개월 등

○ 특히,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매 1개월 마다의 가산수당 정산 등이 적용되므로, 그 기준이 되는 정산기간의 시작일을 명확히 할 필요

③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제52조제1항제3호)

○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각 근로일 또는 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할 수 없으며, 정산기간 전체의 총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총 근로시간을 정하여야 함

- 이 경우, 정산기간 전체의 총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 × (정산기간의 총 일수 ÷7일)로 계산

* (예시) 1월을 정산기간으로 정한 경우, 그 월이 30일이라면 총 법정근로시간은 171.4시간〈40시간 ×(30일÷7일)〉이 되고, 이 시간을 넘는 시간이 법상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연장근로가 됨

④ 의무적 근로시간대 및 ⑤ 선택적 근로시간대(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 반드시 서면 합의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님

○ 근로자가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의무적 근로시간대) 및 근로자 스스로 근로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대(선택적 근로시간대)를 두는 경우에는, 서면 합의로 그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정하여야 함

- 이 경우, 의무적 근로시간대가 지나치게 길어 근로자의 재량에 맡겨진 시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에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적절한 제도 운영으로 볼 수 없을 것임

⑥ 표준근로시간(시행령 제29조제1항)

○ '표준근로시간' 이란 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2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가. 개정 규정 (제52조제2항제1호, 신설)

○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나. 개정 이유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로 할 경우, 장기간 집중적인 근로가 가능해져 만성과로 및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별도의 건강권 보호조치를 마련할 필요

- 특히, 1주 최대 64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근로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건강권 등 기본적인 노동권을 훼손할 우려

○ 이에, 노동자의 과로방지 및 건강보호 등을 위한 방안으로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 부여를 의무화하되,

-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예외를 인정

다. 세부내용 설명

(1) 적용 대상 근로자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 받는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

○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 합의에서 정한 대상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며,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부여해야 함

○ 한편,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1개월 이내 선택근로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할 의무는 없음

(2) 근로일 간 부여(제52조제2항제1호)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p.24)와 동일

▣ 11시간 연속휴식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의 소정근로 개시 전'(이하 '근로일 간') 까지의 사이에 부여

○ '근로일 간' 이란 특정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때부터 다음 근로일의 소정근로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근로를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를 말함

* 근로일은 해당 노동자의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날로서 24시간 기준이며, 역월 상의 1일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근로일 종료」란 '해당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때' 를 의미하며, 이 경우 해당근로일의 근로가 다음날로 이어지더라도 연속하여 이루어진 근로는 해당 근로가 종료될 때까지는 전일의 근로에 해당

  * (예시) 서면 합의로 특정일 09:00~21:00(10시간, 휴게 2시간 제외)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연장근로없이 근로가 종료되면 21:00부터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나, 4시간의 연장근로(21:00~익일 01:30, 휴게 30분 포함)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전일의 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가 종료된 익일 01:30부터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

- 「다음 근로일 개시」란 해당 근로일의 근로 종료 후 '익일의 소정근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근무를 시작한 때' 를 의미

  * 해당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시각은 서면 합의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의 종료 시각이 아닌 실제 근로가 종료된 시각을 의미하며, 특정일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가 종료된 시각부터 기산하여 연속휴식을 보장해야 함

  ↳ (예시) 서면 합의로 특정일 09:00~21:00(10시간, 휴게 2시간 제외) 근로하기로 정하고 2시간의 연장근로(21:00~23:00)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근로자의 다음 근로일 근로 개시 시각은 11시간 연속휴식 이후인 10:00 이후여야 함

▣ '연속 11시간 이상' 의 휴식시간을 부여

○ '연속' 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말하며,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도중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근로를 시켰다면 휴식이 단절된 것이므로,

- 일시 근로가 종료된 이후 다시 기산하여 11시간 이상을 연속하여 휴식을 부여해야 함

○ 아울러, 근로자가 연속휴식 시간 내에 출근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명시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해야 함

(3)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 부여의 예외(제52조제2항제1호 단서)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p.25)와 동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 '불가피한 경우' 란 사업 운영에 있어 예측이 불가한 예외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 ①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 및 예방, ②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③ 그 밖에 ① 및 ②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법 제52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 제52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름

○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인해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 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름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시에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일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함

○ 한편,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용자는 인력대체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연속휴식 시간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4) 위반 시 처벌(제110조제1호)

○ 개정 근로기준법 제5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됨

3 정산기간 매 1개월 마다 가산수당 정산

가. 개정 규정 (제52조제2항제2호, 신설)

○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개정 이유

○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1일 · 1주의 근로시간 상한이 없고, 정산기간의 총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자의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근로자의 임금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정산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확대되어 근로자에게는 추가적인 임금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인건비 절감 등의 수단으로 오·남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 근로자의 불이익 및 제도의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가산임금 지급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임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임

다. 세부내용 설명

(1)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구분(제52조제2항제2호 전단)

○ 정산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라 함은 정산기간의 최초 시작일을 기준으로 역월상 1개월이 되는 매 시점까지 1개월마다 구분한 기간을 의미하며,

- 정산기간이 월 단위가 아니어서 마지막에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정산

  ※ (예시) '21.5.1.을 기산일로 하는 12주간의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 매 1개월마다 구분한 기간은 ▲'21.5.1~5.31, ▲6.1~6.30, ▲7.1~7.23의 각 기간이 됨

(2) 주 평균 40시간이 되는 매 1개월의 근로시간(제52조제2항제2호 전단)

○ 1주 평균 40시간이 되는 매 1개월의 근로시간은 다음에 따라 산출

※ 매 1개월마다 구분한 기간의 마지막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은 그 기간을 기준

$$\text{1주 평균 40시간이 되는 매 1개월의 근로시간수} = 40\text{시간} \times \frac{\text{매 1개월의 역일수}}{7\text{일}}$$

※ 매 1개월의 역일수가 ▲31일인 경우 177.1시간, ▲30일인 경우 171.4시간
▲29일인 경우 165.7시간, ▲28일인 경우 160시간

(3) 법 제50조제1항을 초과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제52조제2항제2호 전단)

○ 정산기간을 매 1개월마다 구분한 기간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이 법 제50조제1항(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예시) 1개월(역일 30일)의 실근로시간이 190시간인 경우에는 1주 평균 40시간이 되는 1개월의 근로시간 171.4시간〈40시간×(30일/7일)〉을 초과한 18.6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한편, 개정 법률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과 관계없이, 매 1개월마다 구분한 기간의 근로 가능한 시간은 전체 정산기간의 총 법정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근로시간 상한의 제한이 없음**

※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체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 연장 가능

** 정산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경우 매 1개월마다의 근로시간 상한은 전체 정산기간의 총 법정근로시간을 3으로 나눈 시간이 아닌, 전체 정산기간의 총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4) 법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함(제52조제2항제2호 후단)

○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개정 법률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연장근로(법 제53조제2항)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규정(법 제56조제1항)의 적용을 제외

- 법 제56조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을 경우 중복하여 가산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적용 제외를 명확히 규정한 것임

○ 한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므로,

-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함

(5) 위반 시 처벌(제109조제1항)

○ 개정 근로기준법 제52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됨

④적용의 제한

○ 대상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제52조제1항제1호)

○ 현행 정산기간이 1개월 이내인 제도와 동일하게 1개월을 초과한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연소근로자의 적용을 제외

*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15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은 제한

○ 한편,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및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나,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 제70조, 71조 및 제74조제5항에 따라 야간·휴일근로 및 시간외 근로의 제한 규정은 적용

4.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①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의무화

가. 현행 규정 (시행규칙 제9조제4항)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근

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 사용자의 건강보호 조치 의무를 지침으로 정하여 인가요건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는 상황

나. 개정 규정 (법 제53조제7항, 신설)

○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개정 이유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따른 근로자 건강권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 등에 근거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지도*해 왔음

*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사업장에 적용 예정인 건강보호 조치를 기재해야 함

-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건강보호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한 것임

라. 세부내용 설명

(1)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절한 조치(제53조제7항)

○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위반 시 처벌(제110조제1호)

○ 개정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됨

5. 시행시기 등

(1) 시행 시기(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7항의 개정규정 및 제110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53조제7항"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3조의2제1항, 제51조의2, 제51조의3, 제52조, 제53조제2항, 제57조, 제109조 및 제116조의 개

정규정 및 제110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51조의2제2항 또는 제52조 제2항제1호”에 관한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21.1.5.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 → ’21.4.6. 시행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2) 준비 행위 등(부칙 제2조 내지 제4조)

○ 사용자는 이 법 시행 전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부칙 제2조)

○ 사용자는 이 법 시행 전에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부칙 제3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실태를 조사·파악할 수 있다.(부칙 제4조)

부가세영세율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통화명	3월 2일(화)	3월 3일(수)	3월 4일(목)	3월 5일(금)	3월 8일(월)
미달러 (USD)	1121.80	1121.30	1122.90	1126.20	1129.40
위안화 (CNH)	173.16	173.27	173.63	174.03	174.11
일본엔 (JPY)	1050.62	1050.64	1049.00	1042.83	1042.12
유로화 (EUR)	1351.66	1355.32	1354.50	1347.50	1346.98
영국파운드 (GBP)	1562.33	1564.77	1566.61	1563.90	1564.50
캐나다달러 (CAD)	887.18	887.32	887.46	888.45	893.90
홍콩달러 (HKD)	144.62	144.55	144.77	145.15	145.47

통화명	3월 9일(화)	3월 10일(수)	3월 11일(목)	3월 12일(금)	3월 15일(월)
미달러 (USD)	1131.30	1141.10	1140.70	1137.30	1130.70
위안화 (CNH)	173.59	174.34	174.99	174.84	174.50
일본엔 (JPY)	1038.37	1051.08	1051.97	1047.58	1036.15
유로화 (EUR)	1340.65	1358.02	1360.57	1362.94	1351.41
영국파운드 (GBP)	1563.51	1584.59	1589.34	1591.03	1575.23
캐나다달러 (CAD)	893.43	902.88	903.92	907.63	906.41
홍콩달러 (HKD)	145.63	147.02	146.97	146.57	145.65

통화명	3월 16일(화)	3월 17일(수)	3월 18일(목)	3월 19일(금)	3월 22일(월)	3월 23일(화)
미달러 (USD)	1135.90	1132.50	1131.80	1123.70	1131.80	1131.30
위안화 (CNH)	174.61	174.29	174.04	173.13	173.72	173.66
일본엔 (JPY)	1040.82	1039.04	1039.92	1031.34	1039.40	1039.85
유로화 (EUR)	1354.67	1348.13	1356.12	1339.06	1345.65	1350.21
영국파운드 (GBP)	1578.73	1574.34	1580.90	1564.81	1566.98	1568.38
캐나다달러 (CAD)	910.32	910.48	912.78	899.43	904.21	903.31
홍콩달러 (HKD)	146.29	145.84	145.74	144.72	145.75	145.67

통화명	3월 24일(수)	3월 25일(목)	3월 26일(금)	3월 29일(월)	3월 30일(화)	3월 31일(수)
미달러 (USD)	1128.00	1133.50	1134.20	1131.80	1131.70	1133.50
위안화 (CNH)	173.35	173.68	173.58	173.02	172.90	172.35
일본엔 (JPY)	1038.48	1042.44	1038.98	1030.92	1030.04	1027.33
유로화 (EUR)	1336.29	1339.12	1335.35	1334.28	1331.56	1328.29
영국파운드 (GBP)	1550.66	1551.02	1558.33	1561.04	1557.95	1557.66
캐나다달러 (CAD)	896.20	900.93	899.91	899.57	899.07	897.72
홍콩달러 (HKD)	145.23	145.92	145.99	145.68	145.59	145.79

※ 상기의 기준·재정환율은 금융결제원의 자회사인 ㈜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한 내용으로 외화외상매출의 회계반영, 결산평가와 부가세영세율 과세표준계산시 적용됩니다.

※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http : //www.smbs.biz, 전화 : 3705-5500)에서 당일의 기준환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